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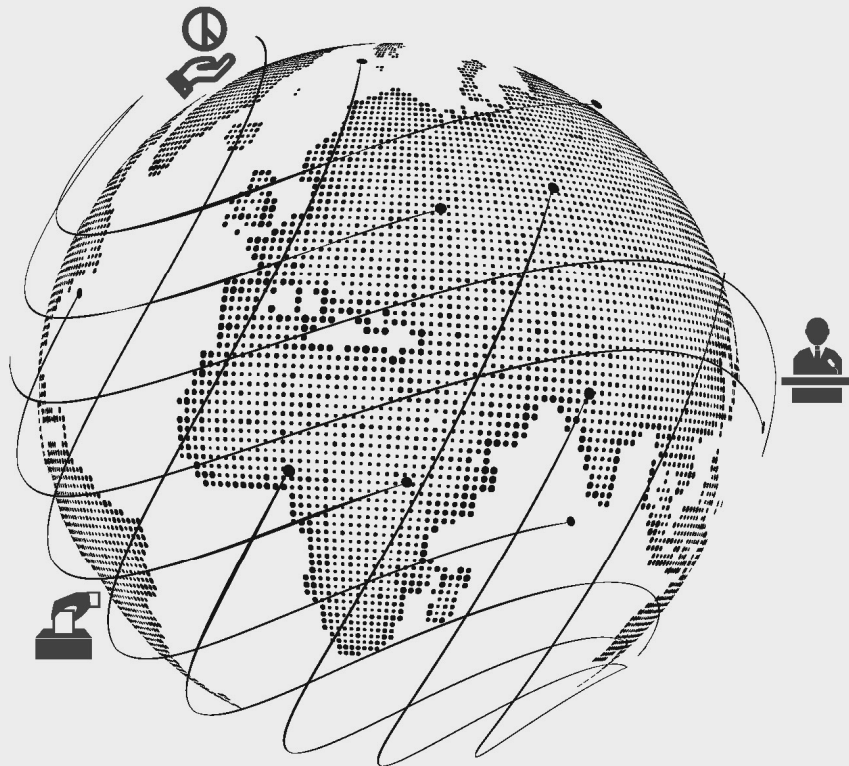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45-220046-12



[별책]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

ELECTORAL SYSTEM
A WORLDWIDE COMPARATIVE STUDY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차례

제1장

선거일반

〈표 1-1〉 각국의 통치체제	1
〈표 1-2〉 각국의 정부형태	2
〈표 1-3〉 각국의 의회제도	3
〈표 1-4〉 각국의 의원임기	5
〈표 1-5〉 각국의 대표제도	8
〈표 1-6〉 OECD국가의 선거제도	11
〈표 1-7〉 각국의 선거원칙에 관한 헌법규정	20
〈표 1-8〉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유형	22
〈표 1-9〉 OECD국가의 선거관리기관 현황	23
〈표 1-10〉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28
〈표 1-11〉 OECD국가의 연도별 선거 투표율(%)	30
〈표 1-12〉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 내용	32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표 2-1〉 각국의 선거권 연령	36
〈표 2-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37
〈표 2-3〉 OECD국가의 민법상 성년연령 및 선거권 연령 비교	37
〈표 2-4〉 각국의 선거권 요건(연령 제외)	38
〈표 2-5〉 OECD국가의 선거권 현황	39
〈표 2-6〉 각국의 피선거권 연령(하원의원 기준)	42
〈표 2-7〉 각국의 피선거권 요건	43
〈표 2-8〉 OECD국가의 피선거권 현황	45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표 3-1〉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48
〈표 3-2〉 OECD국가의 지역구·비례대표의원 비율	50
〈표 3-3〉 각국의 선거구획정기구	52
〈표 3-4〉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 절차	53
〈표 3-5〉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 기준	57

제4장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표 4-1〉 OECD국가의 의회 선거소집	62
〈표 4-2〉 각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65
〈표 4-3〉 OECD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	66

제5장

후보자

〈표 5-1〉 각국의 무소속 후보자 출마가능 선거	68
〈표 5-2〉 OECD국가의 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69
〈표 5-3〉 OECD국가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75
〈표 5-4〉 OECD국가의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78
〈표 5-5〉 OECD국가의 후보자 사퇴 시한	82
〈표 5-6〉 각국의 여성 의회의원 비율	83
〈표 5-7〉 각국의 여성할당제	85
〈표 5-8〉 지정의석할당제 국가 현황	86
〈표 5-9〉 OECD국가의 후보자 추천 관련 여성할당제와 제재 현황	90
〈표 5-10〉 각국의 청년 의회의원 비율	93
〈표 5-11〉 각국의 청년할당제	96
〈표 5-12〉 OECD국가의 청년 의회의원 현황 및 청년 연령범위	97
〈표 5-13〉 OECD국가의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99

제6장

선거운동

〈표 6-1〉 OECD국가의 선거운동기간	101
〈표 6-2〉 OECD국가의 무료 방송시간 배정방법	104
〈표 6-3〉 OECD국가의 선거운동방법	107

제7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표 7-1〉 OECD국가의 확성기 사용제한	110
〈표 7-2〉 OECD국가의 선거일 선거운동	112
〈표 7-3〉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기간	114
〈표 7-4〉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변동 현황	115
〈표 7-5〉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출구조사 규제 현황	117
〈표 7-6〉 OECD국가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현황	119
〈표 7-7〉 OECD국가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관련 규정	123
〈표 7-8〉 OECD국가의 선거운동 규제방법	124

제8장

선거비용

〈표 8-1〉 각국의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제한	128
〈표 8-2〉 각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129
〈표 8-3〉 OECD국가의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131
〈표 8-4〉 OECD국가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136
〈표 8-5〉 각국의 선거비용 직접 지원 현황	140
〈표 8-6〉 각국의 정당 활동 관련 간접비용 지원 현황	141
〈표 8-7〉 OECD국가의 선거비용 직접 지원 현황	142
〈표 8-8〉 OECD국가의 선거비용 간접 지원 현황	150

제9장

투표

〈표 9-1〉 각국의 투표요일	152
〈표 9-2〉 OECD국가의 투표요일, 선거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153
〈표 9-3〉 OECD국가의 투표용지 내용 현황	156
〈표 9-4〉 OECD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159
〈표 9-5〉 OECD국가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163

제10장

재외선거

〈표 10-1〉 각국의 재외선거 실시 범위	166
〈표 10-2〉 OECD국가의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	167
〈표 10-3〉 OECD국가의 재외선거	168
〈표 10-4〉 해외선거구 도입 국가	173

제11장

전자투표

〈표 11-1〉 전자투표 실시 국가 현황	174
〈표 11-2〉 전자투표 비실시 국가 현황	177

제12장

개표

〈표 12-1〉 OECD국가의 개표장소 및 개표참관인	180
-------------------------------------	-----

제13장

당선인

〈표 13-1〉 OECD국가의 의회의원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182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표 14-1〉 OECD국가의 의회의원 결원 시 보충방법 187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표 15-1〉 OECD국가의 선거에 관한 쟁송 제기방법 191

제16장

벌칙

〈표 16-1〉 OECD국가의 주요 선거범죄 비교 194

〈표 1-1〉 각국의 통치체제

통치형태	대륙	국가
군주국(5)	아시아(1)	브루나이
	중동(3)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아프리카(1)	에스와티니
입헌군주국 (36)	아시아(5)	부탄, 캄보디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중동(4)	바레인, 모로코, 요르단, 쿠웨이트
	아프리카(1)	레소토
	유럽 (11)	안도라, 벨기에,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중·남·북미 (9)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오세아니아(6)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공화국 (156)	아시아 (24)	한국,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 (13)	알제리, 차드,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레바논
	아프리카 (46)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유럽 (37)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코소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중·남·북미 (28)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수리남, 미국,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8)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Нау루,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사모아, 바누아투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1> (검색일 2022.3.3.)

CIA. World Fact book. 'GOVERNMENT TYPE.'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government-type> (검색일 2022.3.3.)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검색일 2022.3.3.)

〈표 1-2〉 각국의 정부형태

	대륙	국가
대통령제 (91)	아시아(11)	한국,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미얀마,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6)	알제리, 이집트, 이란,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아프리카 (42)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나이지리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유럽(6)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프로스, 러시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중·남·북미 (23)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 (3)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의원내각제 (74)	아시아(11)
중동(5)		바레인, 이라크, 이스라엘, 레바논, 카타르
아프리카(4)		에티오피아, 레소토, 모리셔스, 소말리아
유럽 (32)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중·남·북미 (11)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오세아니아 (11)		사모아, 호주, 피지, 마셜제도,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이원정부제 (14)	카보베르데, 핀란드, 프랑스, 몰도바, 팔레스타인,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상투메프린시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동티모르, 튀니지, 우크라이나	
집단지도체(1)	스위스	
기타(8)	브루나이,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북한, 중국, 라오스, 리비아	

※ 이원정부제: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을 얻어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얻어 정부내각을 구성
 ※ 집단지도제: 임기가 4년인 정부각료 7명이 돌아가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맡고,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사실상 수석 각료로서 대외적인 외교 및 의전위주의 활동을 함.

※ 국가별 정부형태는 판단 기준 또는 현실 정치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음.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Does the country have a president?'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3> (검색일 2022.3.3.)

CIA. World Fact book. 'GOVERNMENT TYPE.'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government-type> (검색일 2022.3.4.)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검색일 2022.3.4.)

〈표 1-3〉 각국의 의회제도

■ 단원제 국가 108개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한국	이란	앙골라	알바니아	코스타리카	피지
방글라데시	이라크	베냉	안도라	쿠바	키리바시
브루나이	이스라엘	보츠와나	아르메니아	도미니카연방	마셜제도
중국	쿠웨이트	부르키나파소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미크로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리비아	카보베르데	불가리아	엘살바도르	나우루
라오스	카타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크로아티아	과테말라	뉴질랜드
몰디브	레바논	차드	키프로스	가이아나	파푸아뉴기니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코모로	덴마크	온두라스	사모아
싱가포르	시리아	지부티	에스토니아	니카라과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에리트레아	핀란드	파나마	통가
동티모르		감비아	그리스조지아	페루	투발루
베트남		가나	헝가리	세인트키츠네비스	바누아투
		기니	아이슬란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기니비사우	라트비아	수리남	
		말라위	리히텐슈타인	베네수엘라	
		말리	리투아니아		
		모리타니	룩셈부르크		
		모리셔스	몰타		
		모잠비크	모나코		
		니제르	몬테네그로		
		상투메프린시페	북마케도니아		
		세네갈	노르웨이		
		세이셸	포르투갈		
		시에라리온	몰도바		
		토고	산마리노		
		우간다	세르비아		
		탄자니아	슬로바키아		
		잠비아	스웨덴		
		튀니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12개국	10개국	29개국	30개국	15개국	12개국

■ 양원제 국가 81개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부룬디	오스트리아	앤티가바부다	호주
부탄	바레인	카메룬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팔라우
캄보디아	이집트	콩고공화국	벨기에	바하마	
인도	요르단	콩고민주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베이도스	
인도네시아	오만	코트디부아르	체코	벨리즈	
일본	예멘	적도기니	프랑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에스와티니	독일	브라질	
말레이시아		에티오피아	아일랜드	캐나다	
미얀마		가봉	이탈리아	칠레	
네팔		레소토	네덜란드	콜롬비아	
파키스탄		케냐	폴란드	도미니카공화국	
필리핀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그레나다	
타지키스탄		마다가스카르	러시아	아이티	
태국		모로코수단	슬로베니아	자메이카	
투르크메니스탄		나미비아	스페인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스위스	파라과이	
		르완다	영국	세인트루시아	
		소말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남수단		우루과이	
		짐바브웨			
16개국	6개국	20개국	17개국	20개국	2개국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Number of Chamber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4> (검색일 2022.3.4.)
 IPU Parline. The IPU's Open Data Platform. 'Structure of Parliament.'
https://data.ipu.org/compare?field=country%3A%3Afield_structure_of_parliament#map (검색일 2022.3.4.)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검색일 2022.3.4.)

〈표 1-4〉 각국의 의원임기

■ 양원제 국가 상원의원

임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3년(1)	말레이시아					
4년 (16)		바레인 요르단 오만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팔라우
5년 (37)	부탄 미얀마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부룬디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그레나다 자메이카 파라과이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6년 (18)	캄보디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알제리	콩고공화국 가봉 모로코	체코 프랑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멕시코 미국	호주
8년(2)					브라질 칠레	
9년(1)			라이베리아			
임기 다양 (5)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러시아		
75세(1)					캐나다	
종신(1)				영국		

* 이탈리아: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자, 사회·과학·예술 등 영역에서 국가에 업적과 공훈을 쌓은 자 등 일부는 종신직
 ** 아프가니스탄: 주의회에서 선출한 의원은 4년,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의원은 3년, 대통령이 지명한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다양
 ※ 임기다양: 개별 주 정부 등에서 임기결정

■ 단원제 국가, 양원제 국가 하원의원

임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2년(2)					미국	미크로네시아
3년 (6)	필리핀				엘살바도르 멕시코	호주 나우루 뉴질랜드
4년 (74)	한국 몽골 일본 태국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베냉 에리트레아 가나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상투메프린시페 소말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피지 키리바시 마셜군도 팔라우 솔로몬군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5년 (109)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알제리 아르메니아 이집트 키프로스 모로코 튀니지	앙골라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키프로스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임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북한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지부티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기니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니제르 케냐 레소토 튀니지 토고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러시아 산마리노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6년 (4)	스리랑카	모로코 예멘	라이베리아			

* 미크로네시아: 14개 의석 중 4개 주에서 한 명씩 선출한 4석은 임기가 4년이며,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10석은 2년 임기

출처: IPU Parline. The IPU's Open Data Platform. 'Parliamentary te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parliamentary_term&structure=any_lower_chamber#bar (검색일 2022.3.7.)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parliamentary_term&structure=any_upper_chamb#map (검색일 2022.3.7.)

〈표 1-5〉 각국의 대표제도

■ 양원제 국가 상원의원

대표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다수 대표제 (10)	단순다수제 (9)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아이티
	결선투표 (1)				체코		
비례 대표제 (13)	명부식 비례대표제 (10)			적도기니** 나미비아 짐바브웨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3)	파키스탄			아일랜드		호주
혼합제 (4)	2표병립제 (4)	일본	이집트***		프랑스 이탈리아		
연기투표제 (2)		필리핀					팔라우
임명 (18)		태국	바레인 오만 예멘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남수단	독일 러시아 영국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기타 (10)	알제리	3분의 2는 선거인단이 다수대표제로 선출,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6년 임기, 144석 중 절반을 3년마다 선출)					
	벨기에	50명은 지역권별로 지방의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선출(독일어권-다수결, 왈로니아·플랑드르·브뤼셀-최근 선거결과에 따른 비례배분), 10명은 언어 공동체별로 하원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정당한 비례배분해 선출					
	벨라루스	56명은 7개의 지역에서 8명씩 선출, 8명은 대통령이 임명					
	보츠와나	8명은 주요 부족의 족장으로 당연직, 22명 간선 선출, 5명 대통령 임명					
	카메룬	50명은 지방위원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30명 대통령이 임명					
	에스와티니	20명은 국왕이 임명, 10명은 의회에서 선출					
	인도	233명은 주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12명은 대통령이 임명					
	말레이시아	44명은 총리권고를 따라 국왕이 임명, 26명은 주의회에서 선출					
	네팔	56명은 8개의 주에서 간선으로 8명씩 선출, 3명은 대통령이 임명					
	스위스	6명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선출, 36명은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 선출, 4명은 명부식 비례대표제 선출					

*스페인: 208명은 중대 선거구에서 단순다수제로 선출, 58명은 지방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적도기니: 55명은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15명은 대통령이 임명
 ***이집트: 100명은 단순다수제 선출, 100명은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100명은 대통령이 임명

■ 단원제 국가, 양원제 국가 하원의원

대표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다수 대표제 (69)	단순다수제 (50)	방글라데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오만 카타르 예멘	보츠와나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영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칠레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선호투표제 (3)						호주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결선투표제 (13)	부탄 베트남 북한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이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 말리	프랑스	아이티 쿠바	키리바시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3)	아프가니스탄 몽골					바누아투
비례 대표제 (74)	명부식 비례대표제 (72)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이라크 이스라엘 모로코 팔레스타인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튀니지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연방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피지

대표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2)			아일랜드 몰타		
혼합제 (31)	연동형/ 2표 병용제 (9)	한국	지부티 레소토 잔지바르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볼리비아	뉴질랜드
	2표 병립제 (22)	일본 필리핀 타지키스탄 태국	카메룬 기니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니제르 세이셸	안도라 조지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연기투표제 (5)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모리셔스			투발루
임명 (2)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기타 (11)	네팔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세네갈 소말리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앤티가바부다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5> (검색일 2022.3.8.)

IFES.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elections/> (검색일 2022.3.24.)

IPU Parline. 'Electoral system sub-categories.'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electoral_system_sub&structure=any__upper_chamber#map (검색일 2022.3.10.)

〈표 1-6〉 OECD국가의 선거제도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한 국 (대통령제)	-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3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47명 선출) 	혼합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253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어 방식 •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득표율로 전체 의석수를 정한 후 지역구 당선인 수를 제외해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 다만,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의석수의 50%만 적용해 계산하며, 나머지 17석은 해당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 ※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또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함.
영 국 (의원내각제)	상원	800	-	임명직	세습직	-
	하원	650	650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잉글랜드 533명, 스코틀랜드 59명, 웨일즈 40명, 북아일랜드 18명	-
미 국 (대통령제)	상원	100	50개 중선거구 (각 2명 선출)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2년마다 1/3씩 개선하므로 사실상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운영 ※ 조지아 주만 결선투표제 실시	-
	하원	435	435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프랑스 (의원정부제)	상원	348	44개 중대선거구	간접선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 • 선거인단은 프랑스의 본토, 해외영토, 프랑스 자치령,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하원의원, 지역(레종)의 회의원, 도(데парта망)회의의원, 시·읍·면(코뮌)회의의원들로 구성 ※ 선거인단의 선거방식은 혼합제(3년마다 1/2씩 개선) 26개 중대선거구 130명 및 해외선거구에서 6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 18개 중선거구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34명 선출	-
	하원	577	577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 실시) ※ 539개 본토 선거구, 27개 해외영토 선거구, 11개 재외국민 선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당선 • 2차 투표에는 1차 투표결과 12.5% 이상을 얻은 후보자들이 출마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독 일 (의원 내각제)	상원	69	16개 중대선거구 (3~6명 선출)	간접선거	각 주(Länder) 의회가 인구비례에 따라 3-6명을 선출하여 69석을 구성	-
	하원	598	• 299개 소선거구 • 16개 중대선거구	혼합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299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9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수정 생 라게 방식으로 의석 배분 • 권역별 해당 정당의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만큼 제외하고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 지역구 당선인이 해당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의석 발생 • 초과의원 발생시 당초 전국단위의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타 정당의 의석 추가 배분(보정의석) ※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를 하거나, 소선거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을 얻어야 함.
일 본 (의원 내각제)	참의원	242	• 32개 소선거구 • 13개 중선거구 (총 41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48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 • 73명: 32개 소선거구(32명) 및 13개 중선거구(41명)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48명: 전국단일선거구에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총 242명의 의원을 3년마다 1/2씩 개선하므로 매번 선거를 할 때는 선거구 의석의 1/2만(121명)을 선출하게 됨. 이런 이유로 2인 선거구의 경우 1명을 선출하는 사례가 발생	동트 방식
	중의원	465	• 289개 소선거구 • 11개 중대선거구 (6~28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289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7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트 방식 • 중의원명부에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중복입후보한 경우 지역구에서 10% 이상 득표하고, 석패율이 큰 순위에 따라 당선인 결정 ※ 석패율: 해당 소선거구의 당선자 득표수에 대한 낙선자의 득표비율[(낙선후보자의 득표수/당선후보자의 득표수)×100]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스페인 (의원 내각제)	상원	265	59개 중선거구 (1~4명 선출)	다수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9개 선거구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208명 선출 57명은 17개 지방자치커뮤니티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
	하원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개 중대선거구 (총 348명 선출) 2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쇄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50개 선거구에 최소 2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의석은 인구 비례로 배정 소선거구는 Ceuta, Melilla에 각 1명씩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동트 방식
스웨덴 (의원 내각제)	-	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개 중대선거구 (2~34명, 총 310명) 전국단일선거구 (총 39명) 	비례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310명은 선거구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며, 39명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선출됨. 	수정 생 라게 방식 ※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전국 4% 이상 또는 선거구내 12% 이상 득표해야 함.
스위스 (집단 지도제)	상원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개 중선거구 6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다수대표제 ※ 20개 선거구(칸톤)에서 2석 씩, 6개 선거구(칸톤)에서 1석 씩 선출 	-
	하원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개 중선거구 (총 194명 선출) 6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6개 소선거구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하겐바흐-비숍 방식
캐나다 (의원 내각제)	상원	105	-	임명제	연방총리가 추천한 인물을 총독이 형식적으로 임명 (형식적인 기관으로 존재)	-
	하원	338	338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호 주 (의원 내각제)	상원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주별) 대선지구 (각 12명 선출) 2개(준주별) 중선거구 (각 2명 선출) 	비례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한 정당에게 (일괄)투표하거나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롭 기준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 (드롭기준수 = $\frac{\text{총유효투표수}}{\text{의석수} + 1} + 1$) 당선된 후보자의 남아있는 모든 잉여표(기준수를 초과한 표)를 제2선호에 따라 남은 후보자들에게 이양 기준수를 넘는 후보가 없다면 제1선호표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를 제거하면서 그의 표를 제2선호 표시에 따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라 남은 후보들에게 이양해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
	하원	151	150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선호투표제(대안투표제) •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 과반수 이상의 제1순위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 제1순위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어느 한 후보자의 유효투표총수의 득표수가 과반수 이상에 달할 때까지 최하위득표자의 표를 해체하여 그 표에 기재된 차순위후보자에게 이양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 최후로 후보자가 2명만 남는 경우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오스 트리아 (의원 내각제)	상원	61	9개 중대선거구 (3~12명 선출)	비례대표제 (간접선거)	9개 연방 주의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하고 의회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	-
	하원	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9개 대선지구 지역: 39개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후보자명부는 39개 지역(Regional), 9개 주(Provincial), 연방(Federal) 3단계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단위에서 헤어 방식을 이용한 의석배분 후 연방단위에서 동트 방식으로 각 정당의 최종 의석 배분 ※ 지역선거구에서는 1석 또는 전국 기준 4% 이상 획득해야 주와 연방 의석배분 가능
벨기에 (의원 내각제)	상원	60	-	간접선거	50석은 언어권별 지역 선거인단(지방의회)에서 선출 10석은 상원에서 선출(호선, 6명 독일어권, 4명 프랑스어권)	-
	하원	150	11개 중대선거구 (4~24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호투표는 같은 정당 내에서만 가능하며 정당 간 분할투표는 금지	동트 방식 ※ 전체 11개 선거구 중 5% 이상 획득해야 의석배분 가능
칠레 (대통령제)	상원	50	15개 중선거구 (2~5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4년 마다 의원정수 1/2씩 개선	동트 방식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하원	155	28개 중대선거구 (3~8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동트 방식
체코 (의원 내각제)	상원	81	81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 실시) ※ 2년마다 1/3씩 선거	• 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6일 후 2차 선거 실시
	하원	200	14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최대 4명까지 선호 표시 가능	동트 방식 ※ 최소 5% 이상, 2개 정당 연합 시 8%, 3개 연합 시 11% 이상 획득해야 의석 배분 가능
덴마크 (의원 내각제)	-	179	• 10개 대선거구 (총 135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40명 선출) • 2개 소선거구 (각 2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각 2석씩 배정된 Faroe와 Greenland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동트 방식 - 110개 대선거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135석을 배분한 후, - 전국단위에서 각 정당득표율에 따라 40석을 다시 배분 ※ 전국단위 의석은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을 얻거나, 전국기준 2% 이상을 득표하거나, 3개 중 2개 선거구에서 의석당 득표율 이상을 획득해야 배분 가능
에스토니아 (의원 내각제)	-	101	12개 대선거구 (5~15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1단계 (personal mandates) 후보자별 득표수가 해당 선거구의 기준수(quota) 이상인 경우 당선 •2단계 (district mandates) 선거구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할당. 정당은 후보자의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후보자는 최소 기준수의 10% 이상을 득표해야 함) •3단계 (compensation mandates) 남은 의석은 전국후보자명부에서 정당별 득표를 동트 방식으로 배분 ※ 기준수: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총수를 의석수로 나눈 수로 선거구마다 달라짐. ※ 선거구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핀란드 (의원 정부제)	-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8개 대선거구 (2019년 선거: 12개 선거구, 7~36명 선출) • 1개 소선거구 (Åland 1명) 	비례대표제	<p>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p> <p>※ 1석 배정된 Åland지역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p>	동트 방식
그리스 (의원 내각제)	-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개 중대선거구 (총 288석) • 전국단일선거구 (총 12석) 	비례대표제	<p>59개 선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국단일 선거구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하젠바흐-비숍 방식</p> <p>※ 중대 선거구 238석과 전국단일선거구 12석을 배분하고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에 50석을 추가로 할당(MBS: Majority Bonus System, 2016년에 폐지되었으나 2023년 선거까지는 적용 예정)</p> <p>※ 전국 기준 3% 이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p>
헝가리 (의원 내각제)	-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93명 선출) 	혼합제	<p>병립형 다수대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다수대표제(106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93명) 	<p>동트 방식</p> <p>※ 전국적으로 5%, 2개 정당 연합 시 10%, 3개 이상 정당연합 시 15% 이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p>
아이슬란드 (의원 내각제)	-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개 대선거구 (7~14명씩 선출, 총 54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9명 선출)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동트 방식</p> <p>※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해야 전국구 의석배분 가능</p>
아일랜드 (의원 내각제)	상원	60	-	비례대표제 (간접선거)	선거인단 선출(43명)+아일랜드국립대학(3명)+더블린대학(3명)+총리임명(11명)	-
	하원	160 ¹⁾	39개 중대선거구 (3~5명 선출)	비례대표제	<p>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정당에 (일괄)투표하거나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이스라엘 (의원 내각제)	-	120	전국단일선거구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동트 방식</p> <p>※ 최소 3.25% 이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p>

1) 수시로 법률에 따라 변경되며 인구 3만 명당 1명 이하, 2만 명 당 2명 이상일 수 없음.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이탈리아 (의원 내각제)	상원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6개 소선거구 • 33개 중대선거구 (2~8명 선출) • 4개 재외국민 중선거구 	혼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립형 다수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다수대표제(74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22명) • 해외선거구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권역을 1개의 선거구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당연직(전직대통령)1명+ 대통령 임명직 5명 	<p>헤어 방식</p> <p>※ 선거구 기준 개별정당은 3% 이상, 정당연합은 10% 이상 득표해야 의석 배분 가능</p>
	하원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7개 소선거구 • 28개 중대선거구 • 4개 재외국민 중선거구 	혼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립형 다수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다수대표제(147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45명) • 해외선거구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헤어 방식</p> <p>※ 선거구 기준 개별정당은 3% 이상, 정당연합은 10% 이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p>
라트비아 (의원 내각제)	-	100	5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생 라게 방식</p> <p>※ 최소 5% 이상 득표 시 의석배분 가능</p>
리투아니아 (의원 내각제)	-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70명 선출) 	혼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립형 다수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다수대표제(71명)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다수대표제)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으면, 2주 후 1, 2위에 오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선거 실시(결선 투표제) • 비례대표)헤어방식으로 배분 ※ 최소 5% 정당연합 시 7% 이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
룩셈부르크 (의원 내각제)	-	60	4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남부 23명, 중부 21명, 북부 9명, 동부 7명 	하겐바흐-비숍 방식
멕시코 (대통령제)	상원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 중선거구 (각 3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32명 선출) 	혼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립형 다수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 다수대표제(96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32명) ※ 32개 중선거구는 31개 주와 1개의 연방지구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 다수대표제) 각 정당은 동시에 선출될 2명의 후보자를 등록함. - 최다 득표한 정당의 2명 모두 당선, 2위 다수득표정당 1명 당선 ※ 최소 2% 이상 득표 시 의석배분 가능
	하원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200명 선출) 	혼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립형 다수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다수대표제(300명)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선거구는 정당투표 결과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되, 각 정당은 전국단일명부가 아니라 권역별 명부를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한 정당도 30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이 득표비율에 비해 8% 이상 높을 수 없음. 다수대표제 결과에 따른 경우는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하고 정당에 할당된 전국의석범위 내에서 권역명부 당선자를 결정함. • 헤어 방식 ※ 권역명부는 5개 주에서 40개 선거구별로 작성됨. ※ 정당은 200개 이상의 소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하고 전국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
네덜란드 (의원 내각제)	상원	75	-	비례대표제 (간접선거)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12개 주의회의원들이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표에 해당 주 지역의 인구에 따라 가중치 부과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 50% 이상 획득하지 않으면 선호 투표에 따른 순위변경 없음.
	하원	150	전국단일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19개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투표표를 나누는 행정적 기능에 그침. 정당들도 일반적으로 모든 선거구에 동일한 명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정당별 득표를 기준수 (quota: 전국유효투표총수 / 150석)로 나누어 의석배분 • 2차)1차 의석배분에서 남은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정당명부는 선거구별로 작성되지만, 의석배분은 전국단위로 이루어짐. ※ 기준수 이상 득표 시 잔여 의석배분 가능
뉴질랜드 (의원 내각제)	-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48명 선출) 	혼합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72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48명) ※ 72개 소선거구 중 7개는 마오리 지역에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이 배정받은(생 라게 방식) 총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수를 뺀 나머지 수만큼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 결정 • 정당 내 지역구 당선인이 할당된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의원 발생 ※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1석 이상을 얻어야 의석배분 가능
노르웨이 (의원 내각제)	-	169	19개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생 라게 방식 • 150석은 선거구에서 선출하고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구별로 1석씩 총 19석의 보정의석(leveling seat: 정당의 득표율과 의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석 비율이 비례하도록 추가하는 의석)을 배분 ※ 보정의석배분을 위해 정당은 전국유효투표총수의 4% 이상을 얻어야 함(일반의석 배분에는 봉쇄조항 없음).
폴란드 (의원 정부제)	상원	100	100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하원	460	41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수정 생 라게 방식 ※ 개별정당 5% 이상, 정당연합 시 8% 이상 득표 시 의석배분 가능(소수민족 정당은 봉쇄조항 예외)
포르투갈 (의원 정부제)	-	230	• 22개 대선거구 (총 226명 선출) • 2개 중선거구 (각 2명 선출)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해외선거구는 유럽 1개 선거구와 그 외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하여 각 2명씩 총 4명을 선출함.	동트 방식
슬로바키아 (의원 내각제)	-	150	전국단일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최대 4명까지 선호 표시 가능	하겐바흐-비숍식 ※ 개별 정당 5% 이상, 3개 이하 정당연합은 7%, 4개 이상 연합은 10% 이상 득표 시 의석배분 가능
슬로베니아 (의원 내각제)	상원	40	-	다수대표제 (간접선거)	이익집단별로 배분 ※ 지역대표 22석, 비영리단체 6석, 고용주 4석, 고용인 4석, 농민/기능직/전문직 4석에 배분	-
	하원	90	• 8개 대선거구 (각 11명 선출) • 2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는 헝가리, 이탈리아 커뮤니티를 말하며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동트 방식 ※ 최소 4% 이상 득표 시 의석배분 가능
튀르키예 (대통령제)	-	600	87개 선거구 (각 1~18명 선출)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동트 방식 ※ 전국기준 7% 이상 득표 시 의석배분 가능

출처: IPU. PARLINE DATABASE.

<https://data.ipu.org/> (검색일 2022.4.28.)

IFES.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elections/> (검색일 2022.4.28.)

OSCE. ODIHR Elections Activities.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5.4.)

〈표 1-7〉 각국의 선거원칙에 관한 헌법규정

국가	내용	법조문
한 국	국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41조
	대통령: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67조
미 국	대통령: 간접선거(선거인단선출규정)	제2장 제1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수정헌법 제12,15,17,19,24,26조
프랑스	보통, 평등, 비밀선거	제3조
	하원: 직접선거, 상원: 간접선거	제24조
독 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제38조
일 본	보통, 비밀선거	제15조
스페인	보통, 자유,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68,69조
스웨덴	자유, 비밀, 직접, 보통선거	정부조직법 제3절제1,4조
스위스	보통, 평등선거	제136조
캐나다	보통선거	1982년 헌법 제3조
호 주	직접선거	제7,24조
오스트리아	의회: 평등, 직접, 자유, 비밀, 보통선거	제26조
	대통령: 평등, 직접, 자유, 비밀, 보통선거	제60조
벨기에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의무선거	제61,62조
칠 레	직접, 평등, 비밀, 자유선거	제15조
체 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18조
에스토니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60조
핀란드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	제14조
그리스	직접, 보통, 비밀, 의무선거	제51조
헝가리	보통선거	FREEDOM AND RESPONSIBILITY 제23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THE STATE 제2조
아이슬란드	대통령: 보통, 직접, 비밀선거	제5조
	의회: 보통, 비밀선거	제31,33조
아일랜드	대통령: 직접, 비밀선거	제12조
	의회: 보통, 평등, 비밀선거	제16조
이스라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THE KNESSET 제4조
이탈리아	보통, 평등, 자유, 비밀, 의무선거	제48조
라트비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6조
리투아니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55조

국가	내용	법조문
룩셈부르크	직접, 보통선거	제51조제4,5항
멕시코	멕시코 시티 의회: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	제122조제C항
네덜란드	보통, 평등, 직접선거	제4,54조
뉴질랜드	보통, 평등, 비밀선거	권리장전법 제12조
노르웨이	자유, 비밀선거	제49조
폴란드	하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96조
	상원: 보통, 직접, 비밀선거	제97조
	대통령: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127조
포르투갈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10조
슬로바키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30조
슬로베니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80조
튀르키예	자유, 평등, 비밀, 직접, 보통선거	제67조
	의무선거	제175조
기타 국가		
아르헨티나	보통, 평등, 비밀, 의무선거	제37조
브라질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의무선거	제14조
중 국	보통, 평등선거	제34조
러시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81조
대 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129조
태 국	직접, 비밀, 평등선거	제85조

〈표 1-8〉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유형

구분	국가명	
독립위원회형 (Independent model)	아시아	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 동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아프리카	앙골라,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케냐,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유럽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조지아, 코소보,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중·남·북미	앤티가바부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	호주,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혼합형 (Mixed model)	아시아	일본, 동티모르
	중 동	이란, 레바논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가봉,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콩고, 세네갈
	유럽	안도라, 아르헨티나,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중·남·북미	벨리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행정부형 (Governmental model)	아시아	북한, 싱가포르, 베트남
	중 동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	모로코
	유럽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중·남·북미	바하마,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미국
	오세아니아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투발루

※ 독립위원회형: 정부의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그 자체 예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관을 조직하고 관리
 혼합형: 행정부형(정부 부처 또는 지방정부) 부문에 따라 조직되나 독립형(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정책 및 감시·감독 기능) 부문에 따라 일정 정도의 감독을 실시

행정부형: 정부의 부처(예: 내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직되고 관리됨.

출처: IDEA, 'Model of Electoral Management.'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130365> (검색일 2022.3.23.)

〈표 1-9〉 OECD국가의 선거관리기관 현황

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한 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명	6년	대통령 3명 임명, 국회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 지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4,5조
영 국	선거위원회 (Electoral Commission)	9~10명	최대 10년	하원의회에서 위원 선출	의회가 9명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국왕이 임명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3조
	내무부(선거관리)					-
미 국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6명	6년	상원의회의 동의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며, 2년 마다 2명씩 교체	위원장, 부위원장은 1년 (1회 연임 가능) 임기로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연방선거운동법 제30106조
프랑스	투표감독위원회 (Commissions de contrôle des opérations de vote, Voting operations control commissions)	3명	비상설	항소원장이 지명하는 전·현직 재판관 또는 도의 사법보조위원 1명,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1명	항소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1명	선거법 제85-1조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s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National Commission for Campaign Accounts and Political Funding)	9명	5년	국사원 부원장이 지명하는 국사원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회계법원장이 지명하는 회계법원 위원 또는 명예위원 3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52-14조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Constitutional Council)	9명	9년	대통령 3명, 하원의장 3명, 상원의장이 3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며 3년마다 3명씩 교체(정수 외에 전직대통령은 직무상 당연직 종신위원)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헌법 제56조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 la campagne électorale, National Election Campaign Control Commission)	5명	비상설	파기원장 회계감사원장 외에 최고행정법원 파기원, 회계감사원의 전·현직 재판관 또는 회계심의원 중에서 2명을 추가로 지명	국사원 부원장	2001년 3월 8일 no 2001-213 법규명령

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시청각최고위원회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Audiovisual Superior Council)	9명	6년	대통령 3명, 하원의회의장 3명, 상원의회의장이 3명을 임명	대통령이 임명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no 86-1067 법률
독 일	연방선거위원회 (Bundeswahlau sschuss, Federal Electoral Commission)	9명	부정기적	위원장이 정당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8명을 임명	연방내무부 장관이 연방선거관리관(관례상 연방통계청장) 임명 ※ 주 및 선거구선거 관리관은 주정부가 임명	연방 선거법 제8,9조
일 본	중앙선거관리회 (中央選挙管理会)	5명	3년	의회의 의결에 의한 지명에 따라 총리가 임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공직 선거법 제5,6조
	총무성(실질적 선거총괄관리기관)					-
스페인	중앙선거위원회 (Junta Electoral Central, Central Electoral Board)	13명	입법부 임기 (4년)	사법부총평의회의 추천으로 대법원 판사 8명 및 원내정당, 등의 추천에 따라 선임된 5명의 법학·정치학 교수로 위원 구성	사법부 출신 위원 중 선출(호선)	선거법 제9조
스웨덴	중앙선거청 (Valmyndigheten, Central Election Authority) (중앙정부 산하기관)					선거법 제1장 제3절
스위스	연방내각국 (Bundeskanzlei, Federal Chancellery) (중앙정부부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0조
캐나다	중앙선거청 (Elections Canada)	1명	10년	-	선거관리장은 하원의 결로 임명 (1명 독임제)	선거법 제13조
호 주	선거위원회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3명	7년	최소 3년의 경력을 가진 전현직 연방법원 판사와 선거위원, 비사법위원으로 구성	판사가 위원장이 되며, 총독이 임명	연방 선거법 제6,8조
오스트리아	연방선거위원회 (Bundeswahlbe hörde, Federal Electoral Board)	18명	선거 기간	사법부 임명 2명 (최근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한) 정당 임명 15명	내무부장관(당연직)	헌법 제26a조, 의회선거법 제6,12조
벨기에	내무부 선거관리국 (Service public fédéral Intérieur, Federal Public Service Interior-Direction des Elections)					선거법 제13.91, 107조

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칠레	선거청 (El Servicio Electoral, Electoral Service)	5명	불특정 (정년 75세)	대통령이 상원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임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63,66조
체코	선거위원회 (Státní volební komise, State Electoral Commission)	10명 (대체 9명)	불특정	내무부 장관 추천으로 정부가 임명 (내무부, 통계청, 재무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부, 노동부의 직원으로 구성-장관, 청장은 제외)	정부가 임명	선거법 제8조
	선거법상 선거관리기구는 선거위원회(조정, 감독, 기록)이나 내무부(선거의 조직적·기술적 관리), 외무부(재외선거),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지역구선거사무소, 대사관 등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함.					선거법 제7-14g조
덴마크	선거위원회 (Valgnævnet, Election Board)	4명	비상설 (정년 70세)	헌법전문가, 상표권전문가로 내무부가 구성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 판사 중 내무부장관이 임명	의회선거법 제17조
	(선거관리)내무부 (Indenrigs-og boligministere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ousing)					
에스토니아	선거위원회 (Valimised, National Electoral Committee)	7명	4년	- 대법원장이 판사 2명 - 검찰총장이 검사 1명 - 법무부장관·감사원장·의회의장·국무총리가 직원 중 1명씩 임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의회선거법 제10,14조
핀란드	법무부(Oikeusministeriö,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가 감독하는 지역선거위원회는 정당에서 추천한 4년 임기의 위원 5명으로 구성)					선거법 제10,11조
그리스	(선거관리)내무부(Υπουργείο Εσωτερικών, Ministry of the Interior) (후보자 및 정당등록 등)대법원(Αρειος Πάγος, Supreme Civil and Criminal Court) (의석배분, 결과발표)최고선거위원회(Ανώτατη Εφορευτική Επιτροπή, Supreme Election Commission) 이외에 일반법원, 59개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음.					의회선거법 제9,35,37, 101조
헝가리	선거위원회 (Választási szervek, National Election Office)	7명 이상 (현재 13명)	9년	대통령 추천으로 의회에서 7명 선출 추가로 원내정당이 임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20,27,33,39조
아이슬란드	선거위원회 (Landskjörstjórnar,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5명	5년	의회에서 3명(위원장포함)선출 지방자치단체연합 2명 지명	의회에서 선출	의회선거법 제12조
아일랜드	주택계획자치부 (An Roinn Tithíochta, Rialtais Áitúil agus Oidhreachta, Department of Housing, Planning and Local Government)					선거법(1992) 제30조

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이스라엘	중앙선거위원회 (لجنة الانتخابات المركزية, Central Elections Committee)	30명 정도 (현재 34명)	의회 임기	원내정당이 지명 (의석 4석당 1명, 4석 이하인 정 당도 1명 지명 가능)	대법관들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16,17조
이탈리아	(선거관리)내무부 선거관리국 (Ministero dell'Interno, Ministry of Interior- Direzione Centrale per i Servizi Elettorali)					하원선거법 제12조
	(투표집계, 의석배분)법무부 (Ministero della giustizia, Ministry of Justice)					
라트비아	중앙선거위원회 (Centrālā vēlēšanu komisija, Central Electoral Commission)	9명	4년	의회가 8명 임명 대법원이 판사 중 1명 임명	의회에서 선출	중앙선거 위원회법 제1조
리투아니아	중앙선거위원회 (Vyriausiosios rinkimų komisijos, Central Electoral Commission)	7명 이상 (현재 13명)	4년	의회에서 선출 - 법무부 추천 법학전공 후보자 중 2명 - 변호사협회 추천 법학전공 후 보자 중 2명 - 대통령이 추천하는 법학석사 후보자 중 2명 -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은 후 보자 1명 지명 가능	의회에서 선출	선거법 제34조
룩셈부르크	국무부(Ministère d'État, Ministry of State) (지역선거위원회를 3계층 구조로 조직)					선거관할 기관에 관한 법 제1,2조
멕시코	연방선거청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National Electoral Institute)	11명	9년	의회에서 선출	의회가 임명 (하원 2/3 표결)	연방선거법 제36조
네덜란드	선거위원회 (Kiesraad, Electoral Council)	7명	4년	정부가 임명	정부가 임명	선거법 제A5조
	(선거관리)지방자치단체 ※ 내무부와 선거위원회가 지원					-
뉴질랜드	선거위원회 (Electoral Commission)	3명	-	총리가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위원회 최고책임자로 구 성된 3명의 위원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선거법 제4D조

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노르웨이	(선거조직, 관리)지방정부현대화부 (Kommunal- og moderniseringsministeren,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sation) ※ 선거관리국(Valgdirektoratet, Directorate of Elections)은 주 차원의 선거운영, 지방 자치단체는 선거구 단위에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짐. ²⁾					헌법 제43조
폴란드	선거위원회 (Państwowa Komisja Wyborcza,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9명	헌법재판관 대법관: 9년 의회 7명: 의회임기 (정년 70세)	-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헌법 재판관 1명 -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 1명 - 의회가 지명한 판사 7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157조
포르투갈	전국선거위원회 (Comissão Nacional de Eleiçõe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4명 이상 (현재 10명)	의회 임기	내무부, 외교부, 사회부에서 임명한 전문가를 정당이 임명	대법관	선거위원회법 제3,4조
	(선거관리)내무부 내무총국 (Secretaria-Geral da Administração Interna, General Secretariat of Internal Administration)					-
슬로바키아	중앙선거위원회 (Štátna komisia, State Commission for Elections)	14명	비상설	의회지명 10명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에서 각 1명 지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13,18조
슬로베니아	선거위원회 (Državne volilne komisij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6명	4년	의회에서 임명	대법관	의회선거법 제22,32조
튀르키예	최고선거위원회 (Yüksek Seçim Kurulu, Supreme Election Council)	7명	6년	대법원에서 7명 선출 대리위원 5명은 최고행정법원에서 선출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기본법 제11,15,18조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Number of EMB member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M013> (검색일 2022.5.9.)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Term of EMB member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M006> (검색일 2022.5.9.)
 OSCE 국가별 선거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5.26.)

2) Valdirektoratet.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Norway, municipal electoral committees and count.'
<https://www.valg.no/nn-no/om-val/valgiennomforing/roller-og-ansvar/> (검색일 2022.5.26.)

〈표 1-10〉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국가명(도입연도)	기권 시 제재내용	최종투표율	근거 규정	
유럽 국가	벨기에 (18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로 불참 가능 • 벌금 부과(1회 위반 €40~80, 2회 위반 시 €80~200) • 15년 이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4번 이상 불참 시 10년 동안 투표권 박탈, 공직제한 	2019년 88.38%(의)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80,210조
	그리스 (195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2001년 헌법개정에서 투표불참 제재 내용이 빠져 사실상 의무투표제는 유명무실화되었음. 	2019년 57.91%(의)	헌법 제51조 의회선거법 제117조
	룩셈부르크 (19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부과(1회 위반 €100~250, 5년 이내 재위반 시 €500~1,000) ※ 75세 이상 의무투표 제외, 선거구 밖에 거주 중인 경우 불참 가능 	2018년 89.66%(의)	선거법 제89,90조
	스위스 (19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개 주 중 1개 주(샤프하우젠)가 실시하고 있으며, 벌금 6CHF(약 €5.87)이 부과됨. 	2019년 45.12%(의) (샤프하우젠주 59.7%)	샤프하우젠주 선거법 제9조
	튀르키예 (198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부과(1만 Liras) 	2018년 86.22%(의) 2018년 86.24%(대)	헌법 제175조 선거법 제63조
중남미 국가	브라질 (198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부과(해당 지역 최저임금의 3~10%), 공직제한·여권발급 금지·행정입찰 불가·대출제한 등 	2022년 70.85%(의) 2022년 79.42%(대)	헌법 제14조 선거법 제6,7조
	페루 (199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부과(2021년 기준, 거주지역의 빈곤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23~92Soles) 	2020년 74.07%(의) 2021년 70.08%(대)	헌법 제31조 선거법 제9조
	아르헨티나 (19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부과(50~500 Pesos), 3년간 공직제한 	2019년 80.94%(대) 2021년 71.51%(의)	헌법 제37조 선거법 제12,125조
	에콰도르 (193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부과(통합월보수의 10~15%) 	2021년 81.00%(의) 2021년 81.03%(대)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1,292조
	볼리비아 (195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부과(최저임금의 10%), 투표증명서 또는 벌금 납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90일 동안 월급 인출 불가, 공직 불가, 은행 거래 금지, 여권 발급 불가 	2020년 88.42%(의,대)	헌법 제26조 선거법 제43,154조
	우루과이 (193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부과(1UR, 공무원이나 지식인의 경우 2UR) *UR: Unidad Reajutable(2022년 1.428.01pesos) 	2019년 90.13%(의,대)	헌법 제77조

국가명(도입연도)	기권 시 제재내용	최종투표율	근거 규정
호 주 (1924년)	• 벌금(A\$20) 부과, 벌금 미납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2019년 91.89%(의)	연방선거법 제245조
싱가포르 (1959년)	• 선거인명부에서 제명 또는 벌금 부과, 대통령 또는 의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2020년 95.81%(의) 2011년 94.65%(대)	의회선거법 제43조
사모아 (2019년)	• 벌금 부과(21세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20벌금단위, 2회 위반 시 최대 40벌금단위까지) * 벌금단위: 100WST	2021년 69.47%(의) 시행전 2016년 73.06%(의)	선거법 제13조

※ 도미니카 공화국, 레바논, 나우루, 파나마, 파라과이 등에서는 의무투표가 폐지되었고, 콩고민주공화국, 불가리아, 이집트, 온두라스에서는 법으로 의무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LF004> (검색일 2022.3.28.)

IDEA. Compulsory Voting International.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compulsory-voting> (검색일 2022.3.28.)

IDEA. Voter Turnout Database International.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검색일 2022.3.28.)

〈표 1-11〉 OECD국가의 연도별 선거 투표율(%)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한 국	54.26 (의) 75.84 (대)	-	56.81 (지방)	-	58.03 (의) 77.20 (대)	-	60.20 (지방)	-	66.21 (의)	-	77.08 (대) 50.09 (지방)	-
영 국	-	-	-	-	-	68.93 (의)	-	67.55 (의)	-	-	-	-
미 국	67.59 (의) 67.95 (대)	-	42.50 (의)	-	65.44 (의) 65.44 (대)	-	-	-	70.75 (의) 70.75 (대)	-	-	-
프랑스	57.22/5 5.23 (의:1차/ 2차) 79.48/8 0.35 (대:1차/ 2차)	-	-	-	-	48.70/ 42.64 (의:1차 /2차) 74.56 (대)	-	-	-	-	47.51/ 46.23 (의:1차 /2차) 73.69/ 71.99 (대:1차 /2차)	-
일 본	59.32 (의)	-	52.66 (의)	-	-	정보 없음	-	-	-	55.97 (의)	52.05 (의)	-
독 일	-	71.53 (의)	-	-	-	76.15 (의)	-	-	-	76.58 (의)	-	-
스페인	-	-	-	73.20 (의)	69.84 (의)	-	-	71.76 (의)	-	-	-	-
스웨덴	-	-	85.81 (의)	-	-	-	87.18 (의)	-	-	-	84.21 (의)	-
스위스	-	-	-	48.51 (의)	-	-	-	45.12 (의)	-	-	-	의무 투표 (1개 칸톤)
캐나다	-	-	-	68.28 (의)	-	-	-	67.65 (의)	-	62.25 (의)	-	-
호 주	-	93.23 (의)	-	-	91.01 (의)	-	-	91.89 (의)	-	-	89.74 (의)	의무 투표
오스트리아	-	74.91 (의)	-	-	72.75 (대)	80.00 (의)	-	75.59 (의)	-	-	65.19 (대)	-
벨기에	-	-	89.37 (의)	-	-	-	-	88.38 (의)	-	-	-	의무 투표
칠 레	-	41.98 (대) 49.35 (의)	-	-	-	46.53 (의) 46.70 (대)	-	-	-	47.04 (의) 55.64 (대)	-	-
체 코	-	59.48 (의) 59.08 (대)	-	-	-	60.84 (의)	61.88 (대)	-	-	65.39 (의)	-	-
덴마크	-	-	-	85.89 (의)	-	-	-	84.60 (의)	-	-	-	-
에스토니아	-	-	-	64.23 (의)	-	-	-	63.67 (의)	-	-	-	-
핀란드	68.86 (대)	-	-	66.85 (의)	-	-	66.76 (대)	68.73 (의)	-	-	-	-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그리스	62.47 (의)	-	-	63.94 (의)	-	-	-	57.78 (의)	-	-	-	의무 투표
헝가리	-	-	61.84 (의)	-	-	-	69.67 (의)	-	-	-	69.59 (의)	-
아이슬란드	69.32 (대)	81.44 (의)	-	-	79.18 (의) 75.67 (대)	-	-	-	66.92 (대)	80.09 (의)	-	-
아일랜드	-	-	-	-	65.09 (의)	-	43.87 (대)	-	62.77 (의)	-	-	-
이스라엘	67.77 (의)	-	-	72.34 (의)	-	-	-	69.83 (의)	71.52 (의)	67.44 (의)	-	-
이탈리아	-	75.19 (의)	-	-	-	-	72.93 (의)	-	-	-	63.79 (의)	-
라트비아	-	-	58.80 (의)	-	-	-	54.58 (의)	-	-	-	59.43 (의)	-
리투아니아	52.93 (의)	-	47.37 (대)	-	50.64 (의)	-	-	57.37 (대)	47.80 (의)	-	-	-
룩셈부르크	-	91.15 (의)	-	-	-	-	89.66 (의)	-	-	-	-	의무 투표
멕시코	62.45 (의) 63.14 (대)	-	-	47.72 (의)	-	-	63.21 (의) 63.43 (대)	-	-	52.66 (의)	-	-
네덜란드	74.56 (의)	-	-	-	-	81.93 (의)	-	-	-	78.71 (의)	-	-
뉴질랜드	-	-	76.95 (의)	-	-	79.75 (의)	-	-	82.24 (의)	-	-	-
노르웨이	-	78.23 (의)	-	-	-	78.22 (의)	-	-	-	77.16 (의)	-	-
폴란드	-	-	-	50.92 (의) 55.34 (대)	-	-	-	61.74 (의)	68.18 (대)	-	-	-
포르투갈	-	-	-	55.84 (의)	48.70 (대)	-	-	48.57 (의)	-	39.24 (대)	57.96 (의)	-
슬로바키아	59.11 (의)	-	50.48 (대)	-	59.82 (의)	-	-	48.74 (대)	65.81 (의)	-	-	-
슬로베니아	42.41 (대)	-	51.73 (의)	-	-	-	52.64 (의)	-	-	-	70.97 (의)	-
튀르키예	-	-	74.13 (대)	85.18 (의)	-	-	86.22 (의) 86.24 (대)	-	-	-	-	의무 투표

※ 의회의원선거(의), 대통령선거(대)

출처: IDEA.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검색일 2022.11.1.)

〈표 1-12〉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 내용

국가명	공개 내용	근거규정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뢰자 • 선거여론조사기관 • 조사지역 • 조사일시 • 조사대상 • 조사방법 • 표본의 크기 •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 응답률 • 표본오차 • 질문내용 •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에 한함)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6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2조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위임기관 • 날짜 및 방법 • 모집단, 표본규모 및 조사대상 지역 • 질문내용 •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웹 주소 등 	영국여론조사위원회 지침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및 실시기관 • 조사 방법 및 도구(질문지, 답변 측정 방법 등) • 인구의 다양성, 샘플 구성방법 • 조사 날짜, 표본 규모, 가중치 등 	미국여론조사협회 공개기준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뢰자 • 조사목적 • 표본 추출방법과 구성 • 조사방법, 설문내용 • 응답자 비율 등 	여론조사의 공표 및 전파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조사시점 • 조사의뢰자 • 질문내용 및 여론조사 결과 대표성 여부 	독일언론평의회 언론강령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등 	일본 TV도쿄 방송 보도 윤리지침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뢰자 • 표본추출 방법, 표본크기, 오차범위, 피조사 선정방법 • 질문내용, 미응답자 수 	선거법 제69조
스웨덴	-	- (언론기관 자율 규제)

국가명	공개 내용	근거규정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뢰자 • 조사대상 지역 및 인구 구성 • 조사방법, 샘플링 방법, , • 질문지, 조사시기 오차범위 등 	스위스 언론기관의 투표 이전 보도되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뢰자 • 조사지역 및 기간 • 모집단 수, 조사자, 오차범위 • 방송 이외의 수단으로 발표될 경우 조사를 시행한 질문내용 등 	선거법 제326조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관 명칭, 의뢰기관 • 질문내용 • 표본크기, 분석방법 • 조사기간, 장소 • 조사분석기법 등 	호주시장사회조사협회·호주 언론협회의 자율규제지침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뢰자 • 조사기관 • 조사대상 및 기간 • 표본크기, 오차범위 • 응답률 • 피조사자 선정방법 	시장여론조사기구협회 선거여론 조사에 관한 자율규제지침 ³⁾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 질문내용 •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결과공표 48시간 이내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함.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일시 • 조사의뢰자 또는 단체명 • 조사기관 • 응답자 수 • 조사장소 • 결과에 대한 해석과 결과와 방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법 제27조 아일랜드 방송위원회(BAI) 지침 ⁴⁾ ※ 법에서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

3) Verband der Markt- und Meinungsforschungsinstitute Österreichs. 'Richtlinie für die Erstellung und Veröffentlichung von Ergebnissen der Wahlforschung, Guideline for the creation and publication of results of election research.'

https://www.vdmi.at/assets/Richtlinie_Wahlforschung_01-2017.pdf (검색일 2022.5.20.)

4) BAI(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 'Rule 27 of the 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opinion polls' p.8.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Final_English.pdf (검색일 2022.5.20.)

국가명	공개 내용	근거규정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뢰자 또는 단체명 • 조사기관 • 조사일시 •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 • 조사대상자 수와 응답자 수 • 오차범위 • 질문내용 ※ 여론조사 결과 최초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해야 함.	선거운동법 제16e조 제B,H항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관 • 조사의뢰자 •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정보수집 및 정보처리 방식 • 응답자 수 • 질문내용 • 질문별 응답율 • 조사일자 등 	선거미디어법 제8조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여론조사기관 • 조사의뢰자 • 조사대상자 수와 구성 • 조사일시 • 답변을 포함한 질문내용 • 결과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정치여론조사에 관한법 제3조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뢰자 • 선거여론조사기관 • 공표의뢰자 • 조사일시 •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 질문내용 • 무응답 및 거절비율 • 결과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정보수집방법 • 표본오차 및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 ※ 연방선거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여론조사 지침 및 관련 양식에 따라야 함.	연방선거법 제213조 선거규칙5) 제136조제5항

5)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México. 'Reglamento de elecciones. Election regulations.' <https://www.ine.mx/normatividad-vigente-materia-encuestas-electorales/> (검색일 2022.5.25.)

국가명	공개 내용	근거규정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크기 • 조사방법 • 질문내용 • 가중치 적용 • 표본오차 • 조사기간 	<p>정치여론조사지침⁶⁾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p>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관 • 조사 의뢰자의 신분 • 조사목적, 조사대상, 대상자의 수 및 지리적 구성 • 응답자와 미응답자 수, 응답률, 무응답 편향지표 • 무응답률(투표의향을 묻는 경우에는 포기의향자의 비율 포함) • 사용된 표본 추출 방법 및 무작위 표본의 경우 획득한 응답률 • 정보수집 및 기술 방법 • 표본오차 및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 •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법 제7조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관, 조사의뢰자 •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자 표본과 응답, 질문내용, 측정오차 	선거운동법 제5조제1항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관 • 조사대상자의 수 • 조사의뢰자 	선거기본법 제55B조

※ 벨기에, 체코,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선거법 상 여론조사 공표 관련 규정 없음.

6) Research association NZ. 'Political Polling Guidelines.'
<https://www.researchassociation.org.nz/political-polling> (검색일 2022.5.26.)

선거권과 피선거권

〈표 2-1〉 각국의 선거권 연령

연령	국가명		비고
16세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몰타, 니카라과		7
17세	그리스, 인도네시아, 북한, 동티모르		4
18세	아시아	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23
	중동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카타르, 시리아, 예멘	9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50
	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린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49
	중·남·북미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9
오세아니아	호주, 피지, 키리바시,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12	
20세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4
21세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사모아, 싱가포르, 통가		6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1> (검색일 2022.3.24.)

IPU Parline. 'Minimm age for voting in Parliamentary elections.'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in_age_vote_elect&structure=any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3.24.)

〈표 2-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조정 현황	해당 국가
15세 → 18세	이란(2011)
21세 → 18세	볼리비아,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가봉, 온두라스, 레소토, 세네갈, 시에라리온, 튀니지, 말레이시아(2019)
20세 → 18세	일본(2015)
19세 → 18세	한국(2020)
18세 → 17세	그리스(2016)
18세 → 16세	오스트리아(2007), 아르헨티나(2012), 몰타(2018)
25세 → 18세(상원의원)	이탈리아(2021)

〈표 2-3〉 OECD국가의 민법상 성년연령 및 선거권 연령 비교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		선거권 연령	
	국가수	국가	국가수	국가
16세	-	-	1	오스트리아 ※ 영국의 스코트랜드, 웨일즈의 지방선거 선거권 연령 16세, 독일스위스 일부 주 지방선거 선거권 연령 16세, 에스토니아 지역별로 지방선거 선거권 연령 16세 또는 17세로 규정
17세	-	-	1	그리스
18세	34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34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19세	1	한국	-	-
20세	2	뉴질랜드	-	-

* 미국의 성년연령은 주별로 다름(19세- 앨라배마, 네브래스카, 21세-미시시피).

** 캐나다의 성년연령은 주별로 다름(19세-브리티시컬럼비아, 뉴브런즈윅, 누나뿃,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PF1.8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https://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검색일 2022.5.30.)

Wikipedia. 'age of majority in civil law.'

https://en.wikipedia.org/wiki/Age_of_majority#Age_18 (검색일 2022.5.30.)

Valimised. 'Right to vote(Estonia).'

<https://www.valimised.ee/en/estonian-elections-nutshell/right-vote> (검색일 2022.5.30.)

〈표 2-4〉 각국의 선거권 요건(연령 제외)

구분	국가명
<p>시민권 (Citizenship)</p>	<p>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안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남수단,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p>
<p>거주 기간 (Period of Residence)</p>	<p>앙골라, 안티가바부다,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불가리아, 미얀마, 카메룬, 칠레, 코모로, 콩고공화국, 쿡제도, 쿠바, 키프로스, 덴마크, 도미니카, 에콰도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독일,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자메이카, 일본, 리히텐슈타인,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마이크로네시아, 몬테네그로,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필리핀,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남수단, 수단, 수리남, 스웨덴, 태국,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발루, 미국, 우루과이</p>
<p>부모의 시민권 취득 (Citizenship of Parents)</p>	<p>나미비아, 산마리노</p>
<p>귀화 (Naturalization)</p>	<p>아르헨티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이집트, 가이아나, 일본,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니제르, 오만, 세네갈, 태국, 예멘</p>
<p>기타</p>	<p>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안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바레인, 베냉,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가봉, 감비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트비아, 레소토,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이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르완다, 세인트루시아,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수단,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튀니지,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잠비아</p>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Beyond age, what other qualifications exist for registering to vote and voting in the national election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2> (검색일 2022.3.30.)

〈표 2-5〉 OECD국가의 선거권 현황

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거주요건	선거권 결격사유	근거규정
한 국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선거법, 정치자금범죄를 범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영 국	18세	○	3개월 (북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관한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000년 국민대표법 제1,11조, 부칙 17 제8호
미 국	18세	○	주마다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이상자 및 정신박약자 • 유죄판결을 받고 시민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 자 • 선거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 • 후견 하에 있는 자 등 (주마다 다름) 	수정헌법 제26조
프랑스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이상자 및 후견 하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제한된 자 	선거법 제2,5,6조
독 일	18세	○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을 상실한 자 	연방선거법 제12,13조
일 본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공직 중 수뢰죄 또는 알선행위로 인한 이득 관련 죄를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공직선거법 제9,11조
스페인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확정 판결로 선거권 박탈 선고를 받은 자 	선거법 제2,3조
스웨덴	18세	○	×	×	헌법 제3절 제4조
스위스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로 행위 능력이 없는 자 •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 후견 하에 있는 자 	헌법 제36조제1항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조
캐나다	18세	○	×	×	선거법 제3,8,9조
호 주	18세	○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이상자 • 모반죄 또는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 	연방선거법 제93조제1,8항 제99조제1항

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거주요건	선거권 결격사유	근거규정
오스트리아	16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형법 제14~18,24,25조, 형법 제278a~278c조 - 국가사회주의금지법 - 특별형법 제22조 선거, 국민투표 관련 • 5년(고의적인 범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는 법원결정에 따라 선거권 박탈 	헌법 제26조 의회선거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벨기에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제492-1조에 따라 정치적 권리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유죄판결로 선거권이 일시적으로 박탈된 자 	선거법 제1조, 제7조제1항, 제180조
칠레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인 자 • 가중처벌 되는 범죄 또는 테러행위로 기소된 경우 • 헌법재판소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헌법 제13,14,16조
체코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보건을 위한 개인의 자유 제한(감염병 확산 방지) • 법률상 선거권이 제한된 자(민법 제55~65조: 정신적장애, 후견인이 있는 자 등) 	헌법 제18조제3항 선거법 제1조제7항, 제2조
덴마크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무능력자로 판단된 자 	헌법 제29조제1,2항 의회선거법 제1,2,4,15조,
에스토니아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에 있어 법적 무능력자로 선언된 자 •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자 	의회선거법 제4,49조
핀란드	18세	○	×	-	헌법 제14조 선거법 제2조
그리스	17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무능력자 • 형법 제2권 제1-6장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군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 	의회선거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헝가리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범죄 또는 제한된 정신적 능력으로 법원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헌법(Freedom and Responsibility) 제23조 선거절차법 제13/A,102조
아이슬란드	18세	○	국내 거소가 있는 자	-	헌법 제33,34조 선거법 제3조
아일랜드	18세	○ (영국 시민권도 가능)	○	-	헌법 제16조제1항 선거법(1992) 제8조제1,2항
이스라엘	18세	○	×	-	기본법(의회) 제3조 선거법 제2,3조
이탈리아	18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능력 상실한 자 • 확정형벌을 받은 자 • 법률상 부도덕한 자 	헌법 제48조

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거주요건	선거권 결격사유	근거규정	
라트비아	18세	○	×	-	헌법 제8조 선거법 제1,3조	
리투아니아	18세	○	×	• 법원에 의해 무능력자로 판단된 자	선거법 제8조	
룩셈부르크	18세	○	×	•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수감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자(법원 개별 판단) • 후견인이 있는 자	헌법 제52조 선거법 제1,6조	
멕시코	18세	○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정신능력을 상실한 사람,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 위장 또는 무 장한 사람은 투표소에 입장할 수 없음.	헌법 제34,35조 선거법 제9조제1항, 제280조제5항
네덜란드	18세	○	×	• 중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 역형을 선고 받고 법원의 결정으로 선거권이 일시적으로 박탈된 자	헌법 제54조 선거법 제B1조제1항	
뉴질랜드	18세	- (영주권자 가능)	1년 이상 국내 거주	• 지적장애로 인한 차별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3년 이상 정신병원 또는 보호시설에 감금된 자 • 무기징역, 예방적 구금,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자 • 부패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자	선거법 제74,80조	
노르웨이	18세	○	○ (인구등록부에 등록 되었거나 등록된 적이 있는 자)	-	선거법 제2-1조	
폴란드	18세	○	×	•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법적 능력을 상실한 자,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0조	
포르투갈	18세	○	×	•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으 로 선거권이 박탈된 자	헌법 제49조, 의회선거법 제1,2조	
슬로바키아	18세	○	×	• 공중보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법적 으로 제한된 자	헌법 제30조 선거법 제3,4조	
슬로베니아	18세	○	×	• 선거의 의미, 목적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없다 고 법원이 판단한 자(후견인이 있는 경우 법 원이 개별적으로 결정)	의회선거법 제7조	
튀르키예	18세	○	×	• 군복무 중인 자와 사관생도 •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 • (법적능력이)제한된 자 • 공직활동이 금지된 자	헌법 제67조 선거기본법 제6,7,8조	

※ EU회원국 지적장애인 선거권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Can persons deprived of legal capacity vote?' 2014.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4/indicators-right-political-participation-people-disabilities/legal-capacity> (검색일 2022.6.14)

〈표 2-6〉 각국의 피선거권 연령(하원의원 기준)

연령	국가명
17세	북한, 동티모르
18세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벨리즈,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국, 코모로, 크로아티아, 쿠바, 덴마크, 에콰도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케냐,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디브, 몰타,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몰도바,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우간다, 영국
20세	나우루
21세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칠레,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마셜제도, 멕시코, 나미비아, 니카라과, 니제르, 파나마, 폴란드,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솔로몬군도, 남수단, 수리남, 통가, 투발루,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23세	카메룬, 지부티, 루마니아, 튀니지
25세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그리스, 아이티, 인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모리타니, 모나코,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세네갈,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예멘
28세	이라크
30세	바레인,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미크로네시아, 나이지리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출처: IPU Parline. The IPU's Open Data Platform. 'Minimum age of eligibility.'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in_age_member_parl&structure=any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3.30.)

〈표 2-7〉 각국의 피선거권 요건

구분	국가명
나이 (Age)	<p>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p>
시민권 (Citizenship)	<p>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기아나,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바고, 토고, 통가,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p>
출생국 (Country of Birth)	<p>안도라, 부룬디,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쿠웨이트, 말리, 멕시코,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태국, 토고</p>

구분	국가명
거주 (Residence)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레나다,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나우루,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우에, 노르웨이,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루마니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수리남, 타지키스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부모의 시민권 취득 (Citizenship of Parents)	미얀마, 엘살바도르, 마셜제도, 오만, 세인트키츠네비스
등록 (Registration)	한국,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바레인,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쿡제도, 키프로스, 에콰도르,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라크, 케냐,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리, 몰타,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로코, 모잠비크,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모아, 산마리노,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민족 집단 (Nationality Group)	콩고공화국, 마셜제도
최저 교육수준 (Minimum level of Education)	부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감비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케냐, 리비아,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튀니지, 튀르키예, 우간다
최저 수준의 문해력 (Minimum level of Literacy)	바레인, 보츠와나, 브라질,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쿠웨이트, 레소토, 리비아, 말라위, 필리핀, 카타르, 세인트루시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남수단,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토고, 통가, 아랍에미리트, 예멘, 잠비아, 예멘
기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쿡제도, 쿠바, 키프로스,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케냐, 키리바시, 북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नेपाल,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소말리아, 남수단, 스페인, 수단, 수리남, 스웨덴,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예멘, 잠비아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PC003> (검색일 2022.3.30.)

〈표 2-8〉 OECD국가의 피선거권 현황

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거주 요건	기타 요건	근거규정
한 국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없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은 출마 불가	공직선거법 제16조
영 국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파산자, 1년 이상 수감자, 유럽의회의원 및 귀족, 성직자 등은 출마 불가	선거행정법 제17,18조
미 국	30세(상원) 25세(하원)	시민권 9년(상원) 7년(하원)	해당 주에 거주	• 의원 재직 중 공직 겸직 금지	연방헌법 제1조제2,3항
프랑스	24세(상원) 18세(하원)	시민권자	-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등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등은 출마 불가	선거법 제127,296조
독 일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선거권 또는 공무원임권을 상실한 자는 출마 불가	선거법 제15조
일 본	30세(참의원) 25세(중의원)	시민권자	-	• 공직 재직 중 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로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10년간 출마 불가	공직선거법 제10,11조
스페인	18세	시민권자	-	• 확정판결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반란죄테러죄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통해 피선거권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는 출마 불가	선거법 제6조
스웨덴	18세	시민권자	-	-	헌법 제3절 제4조
스위스	18세	시민권자	-	•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행위능력이 결여된 자,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후견 하에 있는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143조
캐나다	30세(상원) 18세(하원)	시민권자	상원의원의 경우 해당 주에 거주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법 위반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선거관리청장 및 선거사무원 등은 출마 불가	선거법 제65조
호 주	18세	시민권자	-	• 외국정부에 충성하는 자, 12개월 이상 징역형 선고를 받은 자, 파산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공무원이나 공적기금을 받는 자, 직업 군인은 출마 불가	헌법 제44조 연방선거법 제163조

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거주 요건	기타 요건	근거규정
오스트리아	18세	시민권자	-	• 고의 범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26조제4항 의회선거법 제41조
벨기에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민법상 정치적 권리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정된 자, 유죄판결로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64조
칠레	35세(상원) 21세(하원)	시민권자	선거일 전까지 선거구 내 2년 이상 거주	• 선거권이 있는 자 • 중급(또는 이에 상응하는)교육을 받은 자	헌법 제48,50조
체코	40세(상원) 21세(하원)	시민권자	-	-	헌법 제19조제1,2항
덴마크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있는 자 •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범죄(의회가 판단)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의회 의원이 될 수 없음.	헌법 제30,33조 의회선거법 제1조제4항
에스토니아	21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있는 자 • 군 복무자 또는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자는 출마 불가	의회선거법 제4조제4항
핀란드	18세	시민권자	-	• 후견인이 필요한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27조
그리스	25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있는 자 • 법적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자	헌법 제55조 의회선거법 제29조
헝가리	18세	시민권자	-	• 범죄, 지적장애를 이유로 법원 결정에 의해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자	헌법 제23조 의회선거법 제2조
아이슬란드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선거권이 있는자 • 혼결 없는 평판을 가진 자(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	선거법 제3,6조
아일랜드	21세	시민권자	-	•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받거나 수감 중인 자, 비면책 파산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선거법 제42조
이스라엘	21세	시민권자 (이중국적자는 타국적을 포기해야 함)	-	• 3개월 이상의 징역을 마치고 7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대한 범죄로 징역을 마치고 1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출마 불가	기본법(의회) 제6조제a항, 제16A조
이탈리아	40세(상원) 25세(하원)	시민권자	-	-	헌법 제56,58조

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거주 요건	기타 요건	근거규정
라트비아	21세	시민권자	-	• 후견인이 있는 자, 교도소 수감자, 특정범죄자(고의적인 범죄,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는 출마 불가	헌법 제4,5조
리투아니아	21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이중국적이 아닌 자 • 선거일 65일 전까지 선고된 형을 마치지 않은 자, 법원에서 법적 무능력자로 판정된 자는 출마 불가	선거법 제10,11항
룩셈부르크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법원에 의해 유죄선고 받은 자, 수감으로 인해 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은 자, 후견인이 있는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52,53조 선거법 제127조
멕시코	25세(상위)	시민권자 국내출생자	선거구 내 6개월 이상 거주	최대 2회 연임 가능	헌법 제55,58,59조 선거법 제10조제1항
	21세(하위)			최대 4회 연임 가능	
네덜란드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있는 자	헌법 제56조
뉴질랜드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최소 1년 이상 거주	• 선거권자로 등록된 자	선거법 제47조
노르웨이	18세	시민권자	해당 선거구 거주	• 선거권이 있는 자는 선출될 권리와 동시에 후보자 추천을 수락할 의무가 있음(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는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면제조건을 두고 있음).	헌법 제61조 선거법 제2-1,3-1,3-2조
폴란드	30세(상위) 21세(하위)	시민권자	-	• 고의적인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 법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99조 선거법 제11조
포르투갈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있는 자	의회선거법 제1,4조
슬로바키아	21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선거권이 있는 자 • 수감 중인 자, 법적능력이 박탈된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74조제2항 선거법 제6조
슬로베니아	18세	시민권자	-	• 선거의 의미, 목적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자(후견인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개별적으로 결정)는 출마 불가	의회선거법 제7조
튀르키예	18세 ※2018년 헌법 개정으로 25세에서 18세로 변경	시민권자	-	•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자, 법적 능력이 없는 자, 병역의무자, 공직이 금지된 자, 1년 이상의 징역 및 중형을 선고받은 자(과실죄 제외), 횡령·부패·뇌물·절도·사기·위조·배임·사기파산·밀수·공적임찰 및 매수 조작·국가기밀 누설·테러행위 가담 및 선동·조장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을 받았더라도 출마 불가	헌법 제76조

〈표 3-1〉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2022년 인구수 기준)

국가명	총인구수	의원수	의원 1명당 인구수
한 국	5,133만 명	300명	17만 명
아이슬란드	34만 명	63명	1만 명
룩셈부르크	64만 명	60명	1만 명
에스토니아	132만 명	101명	1만 명
라트비아	184만 명	100명	2만 명
리투아니아	266만 명	141명	2만 명
핀란드	555만 명	200명	3만 명
스웨덴	1,021만 명	349명	3만 명
덴마크	583만 명	179명	3만 명
노르웨이	551만 명	169명	3만 명
그리스	1,031만 명	300명	3만 명
슬로바키아	546만 명	150명	4만 명
뉴질랜드	489만 명	120명	4만 명
포르투갈	1,014만 명	230명	4만 명
헝가리	960만 명	199명	5만 명
이스라엘	892만 명	120명	7만 명
튀르키예	8,556만 명	600명	14만 명

국가명	총인구수	상원의원	하원의원	총의원수	하원의원 기준 의원 1명당 인구수	총 의원 기준 의원 1명당 인구수
슬로베니아	207만 명	40명	90명	130명	2만 명	2만 명
아일랜드	502만 명	60명	160명	220명	3만 명	2만 명
스위스	877만 명	46명	200명	246명	4만 명	4만 명
오스트리아	906만 명	61명	183명	244명	5만 명	4만 명
체코	1,073만 명	81명	200명	281명	5만 명	4만 명
영국	6,849만 명	800명	650명	1,450명	11만 명	5만 명
벨기에	1,166만 명	60명	150명	210명	8만 명	6만 명
폴란드	3,774만 명	100명	460명	560명	11만 명	7만 명
프랑스	6,558만 명	348명	577명	925명	14만 명	7만 명
스페인	4,671만 명	265명	350명	615명	14만 명	8만 명
네덜란드	1,721만 명	75명	150명	225명	11만 명	8만 명
캐나다	3,838만 명	105명	338명	443명	26만 명	9만 명
칠레	1,925만 명	50명	155명	205명	5만 명	9만 명
이탈리아	6,026만 명	200명	400명	600명	10만 명	10만 명
호주	2,606만 명	76명	151명	227명	17만 명	11만 명
독일	8,388만 명	69명	598명	667명	14만 명	13만 명
일본	1억 2,558만 명	248명	465명	707명	27만 명	18만 명
멕시코	1억 3,156만 명	128명	500명	628명	26만 명	21만 명
미국	3억 3,480만 명	100명	435명	535명	77만 명	63만 명

출처: worldpopulation by country. 2022.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 (검색일 2022.6.15.)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statutory_members_number&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6.15.)

〈표 3-2〉 OECD국가의 지역구·비례대표의원 비율

(2022년 의원수 기준)

국가명	총의원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총 정수 대비 비례대표의원 비율	비례대표의원 대비 지역구 의원	
한 국	300명		253명	47명	15.67%	5.38:1	
뉴질랜드	120명		72명	48명	40.00%	1.50:1	
헝가리	199명		106명	93명	46.73%	1.14:1	
리투아니아	141명		71명	70명	49.64%	1.01:1	
덴마크	179명		4명	175명	97.77%	0.02:1	
핀란드	200명		1명	199명	99.5%	0.005:1	
스웨덴	349명		-	349명	100%	-	
에스토니아	101명		-	101명	100%	-	
그리스	300명		-	300명	100%	-	
아이슬란드	63명		-	63명	100%	-	
이스라엘	120명		-	120명	100%	-	
라트비아	100명		-	100명	100%	-	
룩셈부르크	60명		-	60명	100%	-	
노르웨이	169명		-	169명	100%	-	
포르투갈	230명		-	230명	100%	-	
슬로바키아	150명		-	150명	100%	-	
튀르키예	600명		-	600명	100%	-	
영 국	1,450명	상원	800명	임명		-	-
		하원	650명	650명	-	-	-
미 국	535명	상원	100명	100명	-	-	-
		하원	435명	435명	-	-	-
프랑스	925명	상원	348명	간선	-	-	-
		하원	577명	577명	-	-	-
캐나다	443명	상원	105명	임명	-	-	-
		하원	338명	338명	-	-	-
멕시코	628명	상원	128명	96명	32명	25%	3:1
		하원	500명	300명	200명	40%	1.5:1

국가명	총의원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총 정수 대비 비례대표의원 비율	비례대표의원 대비 지역구 의원	
	참의원	248명					
일 본	713명	참의원	248명	148명	100명	40.32%	1.48:1
		중의원	465명	289명	176명	37.85%	1.64:1
독 일	667명	상원	69명	간선		-	-
		하원 (법정)	736명 (598명)	299명	437명 (299명)	59.38% (50%)	0.68:1 (1:1)
이탈리아	951명	상원	321명 (직권1임명)	116명	199명	61.99%	0.58:1
		하원	630명	232명	398명	63.17%	0.58:1
스위스	246명	상원	46명	42명	4명	-	-
		하원	200명	6명	194명	97%	0.03:1
스페인	615명	상원	265명	208명	57명(간선)	-	-
		하원	350명	2명	348명	99.43%	0.006:1
슬로베니아	130명	상원	40명	간선		-	-
		하원	90명	2명	88명	97.78%	0.02:1
호 주	227명	상원	76명	-	76명	100%	-
		하원	151명	151명	-	-	-
오스트리아	244명	상원	61명	-	61명(간선)	-	-
		하원	183명	-	183명	100%	-
벨기에	210명	상원	60명	간선		-	-
		하원	150명	-	150명	100%	-
칠 레	205명	상원	50명	-	50명	100%	-
		하원	155명	-	155명	100%	-
체 코	281명	상원	81명	81명	-	-	-
		하원	200명	-	200명	100%	-
아일랜드	218명	상원	60명	-	60명(간선)	-	-
		하원 (법정)	160명 (158명)	-	160명 (158명)	100%	-
네덜란드	225명	상원	75명	-	75명(간선)	-	-
		하원	150명	-	150명	100%	-
폴란드	560명	상원	100명	100명	-	-	-
		하원	460명	-	460명	100%	-

출처: IFES.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elections//> (검색일 2022.6.16.)

〈표 3-3〉 각국의 선거구획정기구

담당기구	국가명
하원의회 (64)	알제리, 앙골라, 벨기에, 베냉, 브라질,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쿡제도,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가봉,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키리바시, 쿠웨이트,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리비아, 룩셈부르크, 말리, 마셜제도, 모리타니, 미크로네시아, 몽골, 모잠비크, 나우루, 니카라과, 니제르, 니우에,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폴란드, 레위니옹,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슬로베니아, 스웨덴, 토고,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상원의회 (14)	알제리, 벨기에, 캄보디아, 칠레, 콩고공화국, 체코,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모리타니, 필리핀, 폴란드
행정부 (16)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에스와티니, 그레나다, 마다가스카르, 몰도바, 나미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투발루
선거구획정위원회 (36)	한국, 앤티가바부다, 호주,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캐나다, 도미니카, 에리트레아, 독일, 그레나다, 인도, 아일랜드, 일본,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몰도바,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솔로몬 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미국
선거관리기관 (57)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케냐,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러시아, 르완다,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정부부서 또는 기관 (8)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이집트,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기타 (17)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모로코, 나우루,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카타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수리남, 스위스, 튀니지, 미국, 바누아투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The body responsible for drawing the boundaries i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BD005> (검색일 2022.3.31.)

〈표 3-4〉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 절차

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 주기	획정 절차	근거규정
한 국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4년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②국회는 제출받은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1회에 한하여 재적위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③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새로이 획정안을 마련 해 제출 ④본회의에서 수정없이 표결함.	공직선거법 제24조, 제24조의2
영 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 독립기관)	5년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해 2차에 걸쳐 공청회 실시 ②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획정안을 하원의장에게 제출 (내무부에 사본 제출) ③의회는 가·부를 결정, 수정불가 (의회에서 획정안을 부결한 선례 없음)	선거구 획정법 제3,4,5조
미 국	주의회,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주별로 다름.	10년 (인구조사)	①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별 의석수 배정 ②주의회,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서 주별로 주법으로 선 거구획정	헌법 제1장제2조 제3항 주 선거법
프랑스	선거구획정 조정위원회 (비상설 독립적 자문기구)	비정기	①헌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지침 마련 ②내무부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 ③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④국사원(최고행정재판소)에 자문 ⑤내각회의에 획정안 제출 ⑥의회에서 행정명령 인준, 헌법위원회에서 법령 공포	선거구획정 조직법령 (행정명령)
독 일	선거구 획정위원회 (상설 독립기관)	4년	①위원회가 연방내무장관에게 선거구획정안 제출 ②연방내무장관이 획정안을 하원의회에 제출 ③하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방관보에 공표	연방선거법 제3조제4항
일 본	선거구 획정심의회 (내각부 산하)	10년 (국세조사)	①획정심의회가 총리에게 획정안 제출 ②총리가 획정안을 의회에 보고 ③의회에서 선거구획정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설치법
스페인	의회	4년	①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선거 때 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조정함.	선거법 제161조
스웨덴	중앙선거청	4년	①원칙적으로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중앙선거청이 선거연도 4월 30일까지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선거구의 의석수를 결정함.	기본법 제3절 제6조 선거법 제4절 제3조
스위스	의회	4년	①각 주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선거이후 첫 해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조정함.	헌법 제140조 제4항
캐나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주별 설치)	10년 (인구조사)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작성 선거관리청에 보고 ②선거관리청장이 하원의회에 획정안 제출 ③하원의회의 승인을 거쳐 총독이 행정명령으로 공표 (하원의회에서 획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선거구획정 조정법

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 주기	획정 절차	근거규정
호 주	선거구 획정위원회 (주별 설치, 연방선거위원회 하부기관)	비정기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작성하고 일반인에게 공개 ②공개된 획정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이의제기 가능 ③선거구획정안 결정을 위한 확대선거위원회가 이의를 심사 하고 최종결정 ④확대선거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결정안을 장관에게 제출하 고 장관이 의회에 제출 ⑤의회는 확대선거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권한 은 없음.	연방선거법 제60.68~ 70조
오스트리아	내무부	10년 (인구조사)	①마지막 인구조사 최종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별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②배분된 의석수를 내무부 장관이 연방관보에 공표	의회선거법 제2~5조
벨기에	의회	10년 (인구조사)	①행정구역 경계가 해당 선거구를 구성함. ②각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1석~9석) ※ 국왕은 인구조사 결과를 6개월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의석수를 결정함.	헌법 제63조 제1,2,3항 선거법 제87,88조
칠 레	선거위원회	10년	①선거위원회가 최신 통계청 공식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의석 수 배정 ②인구조사 실시연도 다음해 4월 세 번째 근무일에 선거위원 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됨(인구조사가 의원선거와 같은 해 이루어지는 경우 앞선 해 4월 세 번째 근무일). ③선거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소집 후 10일 내로 획정안을 작성 해야하며 결정 48시간 내로 하원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 ④공표 5일 이내 시민은 누구든지 법원에 획정안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⑤필요한 경우 법원은 10일 이내로 획정안을 승인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 ⑥최종 획정 내용은 해당 연도 2월 1일부터 10일간 관보에 게재	헌법 제47조 선거법 제187~190조
체 코	국가선거위원회 의회	-	①선거구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고정되어 있음. ②국가선거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를 공표하고 7일 이내에 재외선거권자가 등록될 선거구를 추천으로 결정해야 함. ③국가선거위원회는 재외선거 등 특별선거구 획정에 관한 획 정안 제출	선거법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호 제26,27,59조
덴마크	내무부	5년	①매 5년마다 1월 1일 인구통계를 발표 ②내무부장관이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석수를 결정하고 발표	의회선거법 제8,10조
에스토니아	선거위원회	4년	①선거일이 공표된 달의 1일에 인구등록부상 선거권자수에 비례해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배분 ②인구등록을 담당하는 장관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지역별 선거권자수를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③선거위원회는 배분 즉시 공표	의회선거법 제2,6,7조
핀란드	정부	4년	①선거일 6개월 전 마지막 날 인구정보시스템상의 선거구별 인구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 ※ 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 ②정부가 법령으로 공표	헌법 제25조 선거법 제5,6조
그리스	의회	10년 (인구조사)	①행정구역을 단위로 선거구를 구성. 예외가 있으나 기본적 으로 하나의 νομός(현, Prefecture)가 선거구를 구성함. ②최신인구조사 결과가 관보에 게재된 즉시 대통령시행령을 공포해 의석수를 배분	의회선거법 제1,2조

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 주기	획정 절차	근거규정
헝가리	의회	4년	①선거구별 선거권자 수가 평균 선거권자수에 근접하게 획정 ②선거법 별지에 규정 ③선거권자 수의 편차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해야 함. 선거 실시 1년 전부터는 변경불가(의회해산 시는 예외)	의회선거법 제4조
아이슬란드	선거위원회 의회	4년	①기본적으로 (레이카비크 지역을 제외한)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짐. ②선거위원회는 레이카비크 북부와 남부선거구의 경계를 획 정하고 즉시 관보에 공개 ③총선 이후 선거위원회는 총선 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선 거구별 의석당 선거권자 수를 계산함. ④선거구의 의석당 선거권자 수 편차가 규정을 벗어난 경우 선거구를 재조정해야함. 변경사항은 즉시 관보에 공개 ※ 법률에 고정된 선거구 경계와 의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 2/3의 의결이 있어야 함.	헌법 제31조 의회선거법 제7~10조
아일랜드 ⁷⁾	선거구획정위원회 의회	5년 (인구조사) 최소 12년	①중앙통계청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의석수를 배분 ②위원회는 소집 6개월 이내로 획정안을 작성하여 하원의장 에 제출 ③위원회는 획정안 제출 이후 해산 ④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획정 ※ 중앙통계청에서 지역별로 분류된 인구조사 보고서를 발표 하면 (주택계획부)장관은 선거위원회를 소집해야 함.	헌법 제16조제2항 선거법(1997) 제5,6,9조
이스라엘	-	-	기본법에 따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고정	기본법(의회) 제4조 선거법 제9조
이탈리아	선거관리국 (내각부 소속)	5년 (선거시)	①선거시행령과 동시에 내무부장관의 건의로 시행령공포 ②최근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 ※ 선거구를 선거법 별지로 규정 ※ 인구조사는 매년 실시	하원선거법 제3조
라트비아	중앙선거위원회	10년 (인구조사)	①선거법에 따라 5개의 선거구로 고정 ②인구조사결과에 따라 선거구별 의석수 배분 ③결정된 의석수는 관보에 선거일 100일전까지 게시되어야 함(의회해산에 따른 조기선거시 50일전까지).	선거법 제7조 제1,2항 제8조
리투아니아	선거위원회	10년 (인구조사)	①행정구역을 단위로 기본적으로 선거구가 고정됨. ②이전 선거의 선거권자 수에 비례하여 의석수 배분 ③선거일 210일 전까지 배분하고 180일 전까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선거법 제16조
룩셈부르크	의회	비정기	주의 경계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선거 구 당 의석수는 선거법에 고정되어 있음. ※ 선거구 조정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의석수 조정은 의회에서 가능)	헌법 제51,114조 선거법 제117,132조

7) Citizens Information Board. 'The Dáil, Seanad and President'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national_government/houses_of_the_oireachtas/dail_eireann.html (검색일 2022.6.24.)

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 주기	획정 절차	근거규정
멕시코	연방선거위원회	5년 (인구조사)	연방선거위원회가 최신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 작성 - 연방선거위원회가 기술위원회를 임명하여 객관적인 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구를 획정 - 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채택하기 전에 정당은 더 나은 안을 제안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	헌법 제52,53조 연방선거법 제32조 제1항제a호, 제214조
네덜란드	-	-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선거구를 선거법 별지로 규정	선거법 제E1조
뉴질랜드	선거구 획정위원회	5년 (인구조사)	①위원회가 정기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가안을 작성하고 회의를 소집 ②가안을 관보에 게시하고 이의제기 가능기간(적어도 1개월 이상)을 명시 ③일반인 등의 이의제기 가능 ④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 ⑤회의 소집 6개월 이내에 획정안을 총독에게 보고하고 관보에 게시해야 함.	선거법 제28,35, 38,40조 제77조제4항
노르웨이 ⁸⁾	지방정부 현대화부	8년	①19개 선거구가 고정되어 있음. ②지방정부현대화부 장관은 8년마다 선거구별 면적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의회에 통보	헌법 제57조 선거법 제11-1, 11-3조
폴란드	의회	비정기	①행정구역의 변경, 인구변화의 이유로 선거구 변경을 이 필요한 경우 선거위원회가 의회에 제안(의회 임기가 12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변경할 수 없음) ②의회는 선거 공표일 3개월 이전까지 획정 ③선거법 별지에 규정하고 선거위원회가 선거일 52일 전까지 공지 및 게시	선거법 제201~203조
포르투갈	-	10년	①최신 인구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선거권자수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 ②선거위원회는 선거일 60~55일 이전까지 총의석수와 선거구 지도를 관보에 공표	의회선거법 제12,13조
슬로바키아	-	-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고정	선거법 제44조
슬로베니아	의회	비정기	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회에서 의결 ※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	의회선거법 제20,21조
튀르키예	최고선거위원회	비정기	①헌법에 따라 최고선거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 ②선거법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구가 행정구역과 일치함. ③최신 인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수 변동을 고려하여 의석수 배분 ④배분결과는 인구조사결과 발표 후 6개월 이내 최고선거위원회가 관보, 라디오, TV를 통해 발표	헌법 제79조 선거기본법 제3조 의회선거법 제4,5조

8) Stortinget. 'Fordeling av mandatene ved neste stortingsvalg(Distribution of seats in the next parliamentary elections).'

<https://www.stortinget.no/no/Hva-skjer-pa-Stortinget/Nyhetsarkiv/Hva-skjer-nyheter/2019-2020/fordeling-av-mandatene-ved-neste-stortingsvalg/> (검색일 2022.6.17.)

〈표 3-5〉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 기준

구분 국가명	획정 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인구를 기준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으나 인구범위(2:1)를 미달하는 경우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음. •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25조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선거구 평균선거권자수(electorate quota)를 기준으로 함. - 평균선거권자 수는 전체 선거권자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값으로 선거구당 선거권자 수가 95%미만이거나 105%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선거구의 크기, 모양, 접근성 등 지정학적 고려 및 지방정부의 경계, 현행 선거구의 경계 등을 고려함. 	선거구획정법 부칙 2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연방하원의원을 할당하며, 선거구획정은 주의 결정사항임. - 인구 3만 명 당 1명을 배정하되, 각 주에 최소 1명의 의원이 있어야 하며, 조밀성·인접성·행정구역·이익공동체·이전 구역 존중 등을 기준으로 함. - 위 요소들 중 각 주의 실정에 맞게 선택해 획정함. • 1962년 연방대법원은 선거구획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고 인구비례를 위배한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Baker v. Carr). • 1964년 선거구간 3:1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Wesberry v. Sanders). • 1969년 선거구간 1.06:1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Kirpatrick v. Preisler). • 1973년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1.1: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결(White v. Weiser). • 1983년 선거구간 0.6984%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Karcher v. Daggett). • 1997년 선거구간 0.35%의 인구편차를 합헌으로 판결(Abrams v. Johnson). • 연방의회 선거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0에 최대한 가깝게 인구편차를 줄여야 함. 다만, 주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대체로 10%정도까지 허용되며, 이를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함. ※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방의회 선거구와 주의회 선거구가 모두 구속을 받음. 	헌법 제1장제2조 제3항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도에서 선거구획정 시 평균인구편차는 상하 20%(1.5:1)이내여야 함. -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설정할 수 있음. 	선거구획정 조직법규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편차 15/100(1.35:1) 이내여야 함. • 편차가 25/100을 초과한다면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함. 	연방선거법 제3조제1항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선거구의 최소 및 최대 선거구의 인구격차가 2배 이하여야 함[2:1(±33%)]. - 행정구역, 지세, 교통, 역사적 연혁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중의원선거구획정 심의회설치법 제3조제1항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상 50개 도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 - 선거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조정 	선거법 제161조제1항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는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고 선거구의 선거권자 수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함. - 각 선거구의 선거권자 수를 전국 선거권자 수의 310분의 1로 나눈 몫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함. - 전체 선거구 의석이 위 방법에 의해 배분되지 못하고 잔여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위 방법으로 계산 후 나머지 수의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함. • 선거권자 수는 선거연도 3월 1일 국세청 인구등록을 기준으로 함. 	기본법 제3절 제6조 선거법 제4절 제1,3조

국가명	구분	획정 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며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함. - 인구조사법에 따라 지난 선거 이후 첫 해의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 스위스 거주 인구를 200으로 나눈 몫에 따라 주별 인구수에 비례 1,2,3차 할당과정을 거쳐 각 주의 선거구당 의석수를 확정함. 	헌법 제149조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6조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의 인구수를 각 주의 의원정수로 나누어 선거구 기준수를 산출 - 선거구 기준수(electoral quota)의 상하편차 $\pm 25\%$(1.67:1)을 초과하지 못함. • 주 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선거구의 역사적 형태, 인구 희박지역 등을 고려함. 	선거구획정조정법 제15,51조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획정이 시작되는 날 등록되어 있는 선거권자 수를 의원정수로 나누어 선거권자 기준수를 산출 - 선거권자 기준수(quota of electors) 상하편차 $\pm 10\%$(1.22:1)을 초과하지 못함. 	연방선거법 제65,66조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행정구역(9개의 주)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각 행정구역의 크기에 따라 다시 39개로 분할 함. • 선거구 별 선거권자 수를 기준계수로 나누어 의석 배분 ※ 기준계수: 최근 인구조사에 따른 오스트리아 선거권자 수(등록된 해외선거권자 수 합산)/의석수(183) 	헌법 제26조제2항 의회선거법 제2~4조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Province)가 기본적으로 한 개의 선거구이며, 브뤼셀도 한 개의 선거구임. - 선거구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될 수 있음. 또는 한 개의 행정구역이 여러 선거구로 나누어질 수 있음. • 행정구역은 법에 규정된 분할표에 따라 선거구로 나뉘며, 국왕은 선거구 내의 지자체 경계가 변경되거나 지방법원의 위치가 다른 선거구로 옮겨진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구역·선거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음. • 선거구별 의석 배분은 선거구 인구/연방계수 결과에 따라 국왕이 결정하며 잔여 의석은 인구가 많은 순위에 따라 배분 ※ 연방계수(Federal Divisor): 벨기에 총인구/의석수(150) 	헌법 제63조제1,2,3항 선거법 제87,88조
칠 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통계청 공식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선거법 제121조 계산식(정당의석배분방식, 동트방식)에 따라 인구수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 • 28개 선거구 당 3석~8석의 의석수를 배분하며 초과된 경우 해당 의석은 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선거구에 재배분 	선거법 제121, 187~190조
체 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의원: 81개 선거구로 구성되며 선거법에 고정 • 하원의원: 14개 지방자치구역이 각각의 선거구가 됨(13개의 주와 별도 편성된 프라하 수도권 지역). 	선거법 제3,26,59조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눔(Metropolitan Copenhagen, Sealand-Southern Denmark, Northern and Central Jutland). - Metropolitan Copenhagen 지역은 4개 선거구로, Sealand-Southern Denmark와 Northern and Central Jutland 지역은 각 3개 선거구로 나뉨 (총 10개 선거구). ※ 총의석은 179석: 지역구의석 135석, 보정의석 40석, 페로제도 2석, 그린란드 2석 • 인구, 직전 선거의 선거권자 수, 선거구면적(km²)×20의 합산 값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최대잔여방식) • 175석을 3개 권역에 배분하여 의석수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의석을 제외한 135석을 10개 선거구에 배분하여 선거구별 의석수 결정(결과에 따라 보른홀름 선거구가 최소 2석을 배분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배분하고 133석을 재배분) - 3개 권역에 보정의석(권역별 의석수-권역에 속한 선거구 당 의석수의 합)을 배분 	의회선거법 제7,10조

국가명	구분	획정 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행정구역을 12개의 선거구로 구분해 의석을 배분 • 선거구별 의석수 = 선거구 선거권자수 ÷ (총 선거권자수/의석수(101)), (최대잔여방식) - 선거권자 수는 선거가 공표된 달 1일의 인구등록부를 기준으로 함. 	의회선거법 제6,7조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란드 행정지역 구분에 따라 최소 12~18개의 선거구를 획정 (2022년 현재 13개 선거구, 올란드 제도 지역은 별도 선거구로 1석을 배정) • 선거구별 의석수=선거구 인구÷총 인구×의석수(199),(최대잔여방식) 	헌법 제25조 선거법 제5,6조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구분하고 최신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선거구별 의석을 배분 • 선거구별 의석수=선거구 인구수÷(총 인구수/의석수),(최대잔여방식) 	선거법 제2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운티 경계와 부다페스트 경계를 넘지 않고 인접한 지역이어야 함. • 직전 의회선거 당일의 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선거권자 수가 근접하게 선거구 획정 • 평균선거권자 수는 상하편차 ±15%(1.35:1)를 초과하지 못함. • 지리적, 민족적, 역사적, 종교적 및 기타 지역 특성과 인구이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함(단, 예외의 경우에도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정해야 함). ※ 선거구를 선거법 별지로 규정 	의회선거법 제4조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선거구가 고정됨. - 북서선거구: 의석 7개, 보정의석 1개/ 북동부선거구, 남부선거구: 의석 9개, 보정의석 1개/ 남서부선거구: 의석 11개, 보정의석 2개/ 레이카비크 남부선거구, 레이카비크 북부선거구: 의석 9개, 보정의석 2개 • 선거위원회는 레이카비크 북부와 남부선거구의 경계를 획정 - 선거일 56일 전의 선거인등록부를 기준으로 의석당 선거권자 수가 최대한 동일하고 기존 선거권자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획정 • 총선이 끝나고 선거구의 의석당 선거권자 수의 편차가 2:1이 되는 경우 의석을 재배분해야 함. • 선거구당 최소 6석 이상을 배분해야 함. 	헌법 제31조 의회선거법 제7~10조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선거구별 3개~5개 의석을 배분 • 최신 인구조사에 따른 선거구 간의 인구수의 비례와 의석수의 비례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결정 • 카운티의 경계를 유지하고 인접한 지역들로 구성 • 선거구의 지리적 특징과 인구밀도, 연속성 등을 고려해야 함. 	헌법 제16조제4항 선거법1997 제5,6,7조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기본법(의회) 제4조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의석 정수의 3/8에 해당하는 수의 소선거구를 결정 - 선거법에 고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신 통계청 공식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인구수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 - 선거구별 의석수=선거구 인구÷(총인구/의석수),(최대잔여방식) - 배정된 의석이 2석 이상인 경우 선거구를 나누어 소선거구로 획정 • 인접한 소선거구를 묶어서 중대선거구 결정(3개~8개 의석배정) ※ 선거구 결정에서 재외의석은 예외로 함. 	헌법 제56,57조 상원선거법 제1조 하원선거법 제1조제2항

국가명	구분	획정 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 제공된 인구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석을 배분 • 선거구별 의석수=선거구 인구÷(총인구/의석수(100)) • 나머지 의석은 최대잔여방식으로 배분하며 나머지 값이 같은 경우 이미 배정된 의석수가 적은 선거구에 배정하고 값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추첨 	선거법 제8조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선거의 선거권자 수와 행정구역을 고려해 71개의 소선거구를 결정 • 평균선거권자수 편차 ±10%(1.2:1)를 초과하지 못함. 	선거법 제16조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선거구(남부, 동부, 중부, 북부)가 헌법과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 • 선거구별 인구 규모에 따라 선거구당 의석을 배분해 선거법에 고정 	헌법 제51조 선거법 제117조
멕시코 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위원회가 지도 제작, 인구통계 및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임명하여 객관적인 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함. • 알고리즘에는 인구수, 지리적연결성, 정치적 경계유지, 이동시간 및 소수자 대표성 등이 고려되어 있음. • 평균인구편차 ±15%(1.35:1)를 초과하지 못함.¹⁰⁾ • 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채택하기 전에 정당은 더 나은 안을 제안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 	헌법 제52.53조 연방선거법 제14.44조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관리 목적의 선거구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단일 선거구 	선거법 제E1조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섬 16개의 선거구 우선 배분 • 남섬의 선거구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북섬의 선거구를 획정 - 북섬의 총선거구 수=북섬인구수÷기준수(남섬 인구수/16) •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구분하며 기존 행정구역과 (마우리 족을 포함한) 공동체 경계, 통신시설, 지형적 특징, 예상 인구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함. (2020년 선거 65개의 일반 선거구, 7개의 마오리 선거구로 구성) • 평균인구수 편차 ±5%(1.1:1)을 초과하지 못함. ※ 마오리족은 일반 선거구와 마오리 선거구 중 선택이 가능함. 인구통계조사 이후 4개월의 선택 기간 이후에 마오리 선거구의 인구를 확정 	선거법 제35,36,76, 77,269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 선거구가 선거법에 고정되어 있음 ※ 기존의 노르웨이 주(州) 경계와 일치하였음. 2019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가 11개로 줄었으나 선거구는 유지됨. • 선거일로부터 2년 전 연말 인구수와 선거구 면적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합산하여 기준을 산정하고 의석배분 - 기준값: [선거구 면적(km²)×1.8]+[선거구 인구수] - 기준값을 1,3,5,7..로 나누어 몫이 큰 선거구 순으로 배분(생-라게 방식) 	헌법 제57조 선거법 제11-1,2,11-3조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당 7명 이상의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구수에 비례해 획정 •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총인구수/의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으로 의석수 배정(나머지가 있는 경우 반올림) • 의석이 많이 배정된 경우 의석이 가장 적은 선거구에서 의석을 제하고 의석수가 부족한 경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에 의석을 추가함. 	선거법 제201,202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고정하고 선거구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 - 본토는 행정구역의 경계로 분류, 마테이라령과 아조레스령에 각 1개의 선거구, 해외선거구 2개 • 선거구별 선거권자 수를 동트방식으로 배분 	의회선거법 제12,13,16조

구분 국가명	획정 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법에 따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선거법 제8조제2항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선거구 당 11석을 배정 • 각 권역은 다시 11개의 선거구로 나뉘 1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 • 인구와 지리적, 문화적, 기타 특징 등을 고려 • 선거구는 의석당 선거권자 비율이 거의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 • 이탈리아, 헝가리 소수자 집중거주지역을 위한 특별선거구 배정 	의회선거법 제20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법에 따라 하나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각 행정구역 당 1석을 배분하고 인구수에 비례해 추가 의석 할당 • 의원정수 18명까지 1개 선거구로 설정하며, 의원정수 19명 이상 35명 이하까지는 2개, 36명 이상부터 3개 선거구로 분할 • 선거구당 의원수가 가능한 비슷하거나 동일하고, 지리적 거리, 교통수단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추가 의석 배분을 위한 인구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의 잔여 인구수를 합산하여 계산 	선거기본법 제4조 의회선거법 제4조

9)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México. ‘Distritación Electoral.’

<https://www.ine.mx/sobre-el-ine/distritacion-electoral-2021/> (검색일 2022.6.20.)

10)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ACUERDO del Consejo General del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por el que se aprueban los aspectos metodológicos y técnico-operativos para la aplicación de criterios y reglas operativas para la Distritación Nacional 2021-2023.(AGREEMENT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National Electoral Institute approving the methodological and technical-operational aspects for the application of criteria and operational rules for the 2021-2023 National District).’

https://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40250&fecha=05/01/2022#gsc.tab=0 (검색일 2022.6.20.)

제4장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표 4-1〉 OECD국가의 의회 선거소집

구분 국가명	선거일	선거간격	선거소집 및 공고	근거규정
한 국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4년	-	공직선거법 제34조
영 국	5월 첫째 목요일	최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가 해산되면 국왕이 선거소집령 발부 (실질적으로 총리가 결정) • 의회해산 후 25일 이후 실시 	1983년 국민대표법 제23조, 부칙 1
미 국	11월 첫 번째 화요일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회에서 결정 	연방법 제2편 제1장 제7조
프랑스	선거소집령이 발부되는 날로 부터 일곱 번째 일요일	최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 • 의회해산 후 20일 이후 40일 이내 실시 	헌법 제12조 선거법 제54,55,122,173조
독 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46개월 이후 48개월 이내 • 의회해산 후 60일 이내 실시 	기본법 제39조 선거법 제16,39조
일 본	선거일은 늦어도 12일 전에 공시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내 • 의회해산 후 40일 이내 실시 	공직선거법 제31,32조
스페인	선거소집령 발부 후 54일이 되는 날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 25일 전에 국왕령으로 선거소집령 발부 • 의회해산 시 선거소집령 발부 	선거법 제42,167조
스웨덴	9월 둘째 주 일요일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해산 시 정부가 선거일 결정 	선거법 제1절 제3조
스위스	10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의회가 선거일 결정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0,19조
캐나다	10월 세 번째 월요일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소집령 발부 후 4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 	선거법 제57조
호 주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23일 이후 31일 이내 토요일	최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 또는 의회해산 후 10일 이내에 선거소집령 발부 	연방선거법 제151,157조
오스트리아	일요일 또는 공휴일	최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해산 시 100일 이내 정부가 관보에 선거일 공표 	헌법 제27,29조 의회선거법 제1조제2항
벨기에	이전 선거일로부터 5년이 지 난 첫 번째 일요일	최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해산 시 40일 이내에 선거 소집(2개 월 이내에 하원의회 소집) • 내무부는 선거일 2주 전까지 관보에 선거 일 공표 	헌법 제46,65조 선거법 제105조

구분 국가명	선거일	선거간격	선거소집 및 공고	근거규정
체코	금요일(2pm~10pm)부터 토요일(8am~2pm)까지	최대 4년	•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대통령이 선거를 공고해야 함.	선거법 제1조제3,4항
칠레	11월 세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헌법 제26,47조 선거법 제183조
덴마크	임기 이내	최대 4년	• 총리는 4년 이내에 선거를 소집할 책임 • 국왕이 선거소집령 발부 • 선거일 10일 전까지 내무부 장관이 별도 공고	헌법 제32조제1,2항 의회선거법 제21조
에스토니아	3월 첫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4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대통령이 소집 - 의회해산 시 선거소집 20일 이후 40일 이내 선거 실시	헌법 제60,78조
핀란드	4월 세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의회해산 시 대통령이 선거소집령 발령 - 선거소집령 공고 50일 이후 75일 이내 (일요일) 실시	헌법 제24,26조 선거법 제107조
그리스	일요일	최대 4년	• 임기만료 또는 의회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각료회의가 서명한 대통령령으로 소집 • 선거소집령 공고 후 30일 이내 마지막 일요일에 실시	헌법 제53조제1항 의회선거법 제31,50조
헝가리	4월 또는 5월의 일요일	최대 4년	• 대통령은 해산 명령과 동시에 선거일확정 • 의회해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선거가 실시되어야 함.	헌법(STATE) 제2조제3항, 제3조제6항 선거절차법 제6조
아이슬란드	선거주기 이내에 실시 (이전 의회선거일과 같은 달, 같은 주, 같은 요일 전까지 실시)	최대 4년	• 선거위원회가 선거일 공표 • 의회해산 공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함.	헌법 제45조 선거법 제23조
아일랜드	소집령 발령 후 근무일 수 17 일~25일 이내	최대 5년	• 의회 해산이 선언되는 즉시 의회사무처장이 선거소집령 발령 • 주택계획자치부 장관이 선거일을 결정해 관보에 공표	선거법(1992) 제39,96조
이스라엘	이스라엘 Cheshvan월 (9월~10월)의 셋째 주 화요일	최대 4년	• 의회해산을 결정하는 법에 선거일이 포함 되어야 함(의회해산법이 통과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함).	기본법(의회) 제9,34,35조
이탈리아	임기만료일 70일 이내 실시	최대 5년	• 내각의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집됨. - 선거일 45일 전까지 관보에 공표	헌법 제60,61조 하원선거법 제11조
라트비아	10월 첫 번째 토요일	최대 4년	• 의회해산 시 선거위원회가 선거일을 결정해 관보에 공표(해산 후 2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헌법 제10,11,48조 선거법 제8조

구분 국가명	선거일	선거간격	선거소집 및 공고	근거규정
리투아니아	10월 두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이 의회임기만료 6개월 전까지 공표(의회임기만료 4개월 전까지 공표하지 않을 경우 선거위원회가 법정 선거일에 선거 실시) • 해산 시 3개월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함. 	헌법 제55,57,58조 선거법 제12조
룩셈부르크	이전 선거가 실시된 날과 같은 날(그날이 일요일이 아닐 경우 직전 일요일)	최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헌법 제56,74조 선거법 제134조
멕시코	6월 첫 번째 일요일	최대 3년	-	연방선거법 제208조
네덜란드	3월 중 수요일 : 후보자 등록일(1월 30일 ~ 2월 5일 사이 월요일) 44일 후 ※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칙령으로 요일 변경 가능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 시 칙령(Royal decree)으로 선거일 결정 	헌법 제54조 선거법 제C1,F1,F2,J1조
뉴질랜드	토요일	최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독은 해산 또는 임기만료 7일 이내에 선거소집령 발령 	헌법(1986) 제17조 선거법 제125,139조
노르웨이	9월 중 월요일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왕이 선거일을 월요일로 고정 • 선거위원회가 선거일투표장소시간 공표 	헌법 제54조 선거법 제9-1,9-2조, 제9-3조제3항
폴란드	임기만료 30일 이내(공휴일)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임기만료 90일 이전에 대통령이 소집하고 결정 5일 이내에 관보에 게시 	헌법 제98조 선거법 제194조
포르투갈	9월 14일에서 10월 14일 사이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이 선거일 60일 이전, 해산의 경우 55일 이전까지 선거일 공표 	의회선거법 제19조
슬로바키아	토요일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의장이 선거일 공표 - 선거에 대한 결정 공고는 법률집에 게시 	헌법 제89조 선거법 제20조
슬로베니아	선거소집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	최대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이 임기만료 135일부터 75일 이전까지 선거를 소집 • 해산 시 선거는 소집일로부터 40일 이후 실시 	의회선거법 제12~15조
튀르키예	임기만료 전 마지막 일요일	최대 5년	-	헌법 제77조 의회선거법 제5.6조

※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집권당의 총수가 의원해산을 결정하거나 의회 내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또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의회선거를 실시하게 됨. 반면, 대통령제 국가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 의회선거를 실시함.

〈표 4-2〉 각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구분	국가명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25)	안도라,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콩고공화국, 키프로스, 적도기니,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란, 이스라엘, 쿠웨이트,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미크로네시아연합, 몽골, 모로코, 나우루, 노르웨이, 포르투갈, 세네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시리아, 투발루
지역정부 (Regional Government) (2)	인도네시아, 미국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Authority) (26)	한국, 알제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코모로, 체코, 덴마크, 프랑스, 가봉,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니우에,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 베트남
선거관리기관 (Election Management Body) (126)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군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기타 (10)	바레인, 벨라루스, 쿡제도, 쿠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모나코, 산마리노,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Which is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registration of voters for national election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4> (검색일 2022.3.31.)

〈표 4-3〉 OECD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

국가명	작성 방법	작성 시기	담당 기관	근거규정
한 국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구·시·군의 장	공직선거법 제37조
영 국	신청등록제 (개별선거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작성)	선거인명부등록관	1983년 국민대표법 제9조, 부칙 2
미 국	신청등록제 (대부분의 주)	영구명부제 (대부분의 주)	주 또는 지방정부 사무소	선거인등록법 제20503조
프랑스	신청등록제	영구명부제	투표구행정위원회	선거법 제11,16조
독 일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게마인데 행정청	연방선거법 제17조
일 본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3·6·9·12월 작성)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9조
스페인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매월 갱신)	선거인명부관리국	선거법 제31~33조
스웨덴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선거일 30일 전 기준으로 작성)	중앙선거청	선거법 제5절 제1조
스위스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주 행정당국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조
캐나다	신청등록제	수시명부제	선거관리청장	선거법 제44조
호 주	신청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연방선거법 제90조
오스트리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법 제23조 선거인등록법 제1조
벨기에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10,15조
칠 레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선거인등록법 제2,3,5조
체 코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내무부	선거법 제5,6조
덴마크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법 제18조제1,2항, 제19조
에스토니아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인구등록관리국 (내무부산하)	의회선거법 제22조
핀란드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인구등록관리국 (재정부 산하)	선거법 제18조
그리스	직권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갱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법 제9,10조

국가명	작성 방법	작성 시기	담당 기관	근거규정
헝가리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선거절차법 제76조제2항, 제82조
아이슬란드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인구등록기관	의회선거법 제21조
아일랜드	신청등록제 ¹¹⁾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갱신)	지방자치단체	선거법(1992) 제8,13조
이스라엘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내무부	선거법 제26조제A,D항
이탈리아	직권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에 2번, 선거전 갱신)	지방자치단체 (지역선거위원회)	선거인등록법 제3,4조
라트비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중앙선거위원회 시민·이민사무국	선거인등록법 제3,5조
리투아니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중앙선거위원회	선거법 제53조
룩셈부르크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7조
멕시코	직권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갱신)	연방선거위원회 (선거인등록부사무국)	선거법 제132,133,138조
네덜란드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D1,D2조
뉴질랜드	신청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선거등록관	선거법 제22,82조
노르웨이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정부현대화부 (선거관리국)	선거법 제2-3조
폴란드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관리·감독) 지방자치단체(유지·관리)	선거법 제18,26조
포르투갈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내무부 관리국	선거인등록법 제1,3,5조
슬로바키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9,11조
슬로베니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내무부	선거인등록법 제4,20~22조
튀르키예	직권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수정, 선거시 갱신)	최고선거위원회 (선거권자등록사무국)	선거기본법 제28,33조

11) Citizens Information. 'registering to vote.'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voting/registering_to_vote.html#182302 (검색일 2022.7.12.)

〈표 5-1〉 각국의 무소속 후보자 출마가능 선거

구분	국가명
출마 불가 (22)	앙골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이스라엘, 요르단, 모나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페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리남, 스웨덴, 탄자니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선거 (19)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크로아티아, 지부티, 기니비사우,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팔레스타인, 파나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동티모르,
하원의원선거 (55)	앤티가바부다,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보츠와나, 미얀마, 캐나다, 쿡제도,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피지, 독일, 그레나다, 이라크,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마셜제도, 모리셔스,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우에, 오만,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산마리노,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스페인, 타지키스탄, 통가,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잠비아
상원의원선거 (10)	호주, 벨기에, 부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대통령선거, 의원선거 모두 가능 (92)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이란, 아일랜드, 케냐,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나우루, 네팔, 니제르, 파키스탄, 팔라우,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레위니옹,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스위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짐바브웨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an independent candidates compete in presidential or legislative election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PC008> (검색일 2022.3.31.)

〈표 5-2〉 OECD국가의 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정당추천후보자등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추천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 - 추천정당의 당인 및 대표지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 	공직선거법 제49조제2항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는 본인 또는 제안자(Proposer)나 찬성자(Secondar)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 후보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을 기재하고 제안자 및 찬성자 각 1명과 추천에 동의하는 8명 등 총 1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함. 	1983 국민대표법 부칙1 제6~8호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선언서(declaration of candidacy)를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등의 주 담당기관에 제출 	주 선거법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이 있는 자를 입증하는 증명서 첨부 	선거법 제154,298조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거구후보자추천서에는 최소한 선거구내의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자필서명을 받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제출 • 비례대표의원) 정당의 명칭 및 순위대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한 주명부를 주의 선거권자 총수 1,000분의 1 이상(서명인 수 2,000인 이하) 서명을 받아 주선거위원회에 제출 	연방선거법 제19,20,27조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의원) 정당(또는 정치단체)의 강령·당규·규약, 후보자 동의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다는 해당 후보자의 선서서 등의 문서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비례대표의원) 정당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과 중앙원명부등재자의 이름·본적·주소·생년월일 및 직업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문서와 정당 등의 강령·당규·규약 등을 기재한 문서, 후보자 동의서, 피선거권에 결격이 없다는 후보자의 선서서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공직선거법 제86조,86조의2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및 정당연합의 명칭, 약칭, 심벌 및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이름을 명확히 표시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후보자승낙 선서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도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45,46조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은 선거구별로 각 후보자가 입후보를 승인한 선언이 포함된 후보자 동의서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중앙선거청 또는 지역선거청에 제출 	선거법 제2절 제9조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의 이름, 성별, 출생일, 직업, 집 주소 및 출생지를 기재하고, 각 후보자가 서면으로 추천을 수락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후보자명부를 주 당국에 제출 	선거법 제21,22조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의 이름·주소·직업 및 소속 정당명, 추천자의 서명, 후보자의 추천 승낙서 등이 포함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선거법 제66조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는 이름, 주소 및 직업 등을 기재하고 등록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동의,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출마 자격이 있다는 선언, 호주 시민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된 후보자추천서를 해당 선거위원에게 제출 	연방선거법 제166,167, 170조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은 후보자명부를 후보자 동의서와 함께 선거일 58일 전까지 지역선거관리기관에 제출 	의회선거법 제42,43조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명부에는 정당명, 약칭, 이름, 출생연도, 직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의원 3명 이상 또는 지역별로 규정된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서명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rgenland·Vorarlberg지역: 100명, Carinthia·Salzburg·Tyrol지역: 200명, 북부오스트리아·Styria지역: 400명, 남부오스트리아·비엔나지역: 500명 ※ 후보자명부는 39개 지역(Regional), 9개 주(Provincial), 연방(Federal) 3단계로 작성됨. 주 명부는 선출될 의석수의 2배 이상의 후보를 포함할 수 없고, 지역 명부는 선출될 의석수의 2배 이상 또는 12명 이상일 수 없음.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후보자동의서를 선거구선거위원회장에게 선거일 57일 또는 58일 전까지 정해진 시간에 제출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정당의 약칭, 상징(로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 거주지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고, 최소 3명의 전직의원의 서명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서명이 첨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선거구는 500명, 50만~100만 명인 선거구는 400명, 그 외 선거구는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 서명이 필요함. 	선거법 제115,116조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또는 선거연합(pacto electoral)의 대표 또는 사무총장이 작성한 후보자 선언서를 선거일 90일 전 자정까지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공증된 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자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각 정당은 정당 간 선거연합을 구성할 수 있으며 무소속 후보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선거법 제3,4,7,10조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또는 연합은 선거일 최소 66일 이전까지 대리인을 통해 후보자명부를 선거구 사무소에 제출 후보자명부에는 선거구, 소속정당 또는 연합의 명칭,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후보자의 순서, 정당 및 연합 대표의 서명과 대리인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함. 후보자 성명서는 등록에 동의하며 후보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명부에 중복 등록되지 않는다는 진술, 등록 거주지와 생년월일을 후보자가 수기로 직접 작성하고 기재해야 함.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 상원은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선거구, 소속 정당 또는 연합 명칭이 기재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시민권증빙서류와 후보자성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구 지역사무소에 제출 	선거법 제31,32,60,61조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은 총선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 선거에 처음 참가하는 정당은 선거일 15일 전 정오까지 주택내무부에 등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등록신청서 제출 시 지난 선거 총 유효투표수 1/175에 해당하는 수의 선거권자 서명을 제출 후보자신청서는 선거일 11일전 12시까지 항소위원회(Ankestyrelsen, 내무부 산하)에 제출되어야 함. 주택내무부가 승인한 양식에 이름, 사회보장번호, 직업, 주소, 소속정당(또는 무소속), 서명을 기재해 제출 후보자는 1개 정당 소속으로 1개 선거구에만 출마할 수 있음. 	의회선거법 제11,12,33,33a조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 90일 전까지 비영리기관 등록을 마친 정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은 정당명으로 선거에 참여하며 후보자등록 시에 정당 대표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함께 제출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45일 전 18시까지 가능하며, 정당은 후보등록신청서, 지역구전국구 후보자명부, 기탁금 영수증, 각 후보자별 후보자지원서를 주 선거위원회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지원서에는 정당소속(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며 후보자로서 요건을 갖추었음을 명시하고 이름, 주민번호, 소속정당명, 연락처, 학력,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함. 	의회선거법 제26,28,30조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신청서는 선거일 40일 전 16시까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후보자명부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정당대표는 각 후보자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며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함. - 후보자명부는 각 후보자의 이름과 직위, 직업, 거주지가 명시되어야 함. - 동의서는 개인 ID번호를 기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의원으로서의 책임에 동의하며 다른 정당 또는 지역구에 중복 출마하지 않는다는 진술과 서명이 있어야 함. 정당은 연합을 구성할 수 있음. 	선거법 제120~122조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정당연합, 무소속후보자 연합 등은 선거기간 시작 후 7일 이내에 명부를 준비하여 전자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후보자는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선거권자 12명 이상의 추천과 소속 정당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직업,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 후보자 추천동의서에 등록선거구, 생년월일, 선거권이 있으며 다른 명부에 동시에 추천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함. 기탁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의회선거법 제32,34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후보추천과 겸직금지에 대한 동의내용을 기재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 서명(추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자필서명)을 받아 선거위원회에 제출 전국비례대표(의원) 14개 주 이상, 최소 71개 선거구에 지역구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만 전국구 비례대표명부를 등록할 수 있음(연합구성 가능). -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권자 추천 서명 없이 후보자명부 등록신청서만 제출 - 소수민족 자치기구는 별도의 명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수민족 선거권자의 1% 또는 1,500명의 추천 서명을 제출해야 함. 	의회선거법 제6~9조 선거절차법 제120,122, 129조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정치단체는 선거일 36일 전 12시까지 선거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해야 함. 후보자추천동의서, 추천 서명(필요한 경우)을 첨부해야함. - 후보자명부에는 정당명,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직업을 기재함. - 의석수 2배(최소 30명 이상 40명 미만)에 해당하는 추천 서명이 필요하며 추천자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주소를 명시 	선거법 제36,37,39조
아일랜드 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스스로 또는 선거구내 선거권자의 추천으로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음. ※ 두 개 이상의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음. 등록된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을 원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정당가입증명서를 출마하려는 선거구의 선거위원회에 선거소집령 발령 7일 후 정오까지 제출 -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동의와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시하고 이름, 주소, 직업을 기재함. 	선거법 제46,49조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1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후보자명부에는 후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2개 이상 정당 연합 시 후보자 별 소속 정당명 기재 후보자명부는 정당 대표자 또는 정당법 제19B조에 따른 대리인의 이름을 날인하며 2개 이상 정당 연합 시 각 정당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날인 각 정당은 대표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후보자가 서명한 동의서와 후보자명단을 선거일 47일 전 22시까지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 	기본법(의회) 제5A,6조 선거법 제57조

12) Citizensinformation. 'General elections.'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national_elections/the_general_election.html#14fd6d (검색일 2022.7.29.)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참여하려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로고와 정당명을 내무부에 등록해야 함. • 후보자는 5개의 중대선거구와 1개의 소선거구에 후보자로 동시에 등록될 수 있음. 단, 재외선거구 후보자는 국내선거구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후보자명부 제출 시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5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서명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만료일 120일 전 하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추천 선거권자 수는 위 숫자의 1/2로 함. - 추천 정당과 후보자와 선거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기입되어야 함. - 시장, 공증인, 해외거주자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기타 법에 규정된 기관에 의해 공증되어야 함. 선거권자는 하나의 명부에만 추천 서명을 할 수 있음. • 후보자명부 제출 시 대표 2명, 대리후보 2명의 이름을 기재하여 선거일 35일전 오전 8시부터 34일 전 오후 8시까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 	상원선거법 제8,9조 하원선거법 제14,18-2,20조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명부는 선거일 1년 전에 창당되었고 당원 500명 이상인 적법한 정당만 제출할 수 있음. • 각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은 후보자명부를 작성해 의사결정부서에서 임명한 자를 통해 중앙선거위원회 절차에 따라 제출 • 후보자명부는 선거일 8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선거구 할당 의원정수 +3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정당 또는 연합은 후보자명부와 함께 본인이 서명한 후보자등록 동의서, 후보자 성명서와 모든 후보자들이 서명한 캠페인 플랫폼을 제출해야 함. • 후보자의 공용어 능력,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ID번호, 해외시민권, 거주지, 직업/직업 등 정보, 학력, 구소련 또는 구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나 해외 정보 또는 방첩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접촉 또는 협력했는지 여부, 후보자의 자산정보를 후보자 서명으로 확인해 제출 	선거법 제9,10,11조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185일 전까지 등록이 완료된 정당은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일 83일 전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거일 65일 전 오후 5시에 마감 • 정당은 후보자등록신청서, 위원회 양식에 따른 선거프로그램, 후보자명부와 각 후보자의 서명을 받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후보자의 이름, 신분증번호,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위, 소속정당, 의원의 부적격 사유에 관한 질문 등에 관해 전자적으로 입력해야 함. - 서약서에는 선출 시 양립 불가능한 활동에 대한 해임 동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동의, 세무조사관이 승인한 소득세 신고서와 자산신고서의 주요내역, 중앙선거위원회의 양식에 따른 뇌물공여 금지서약이 포함되어야 함. • 정당은 후보자 사진 및 약력, 선거대리인 허가서, 기탁금 지불확인, 기탁금환불용 계좌, 선거운동 자금조달 보고서 사본(지난 선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당월 1일까지 정당의 보조금 및 자금 정보 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함. • 정당이 비례대표명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소속후보자라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추천서명을 제출해야 함(검역 등 비상사태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지역의 경우 500명 이상의 추천서명으로 가능). 	선거법 제70조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자추천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명의 추천 또는 해당 선거구의 전현직 의원 또는 3명의 지역회의의원에 의해 이루어짐. • 본인 또는 대리 제출자의 이름, 직업, 거주지 정보가 포함된 본인이 서명한 성명서를 선거일로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각 선거구의 지정기관(주로, 지방법원)에 제출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선거구 의원정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각 선거구 선거위원장은 선거일 최소 65일 전까지 후보자명부 제출과 투표 참관 대리인의 추천을 위한 일자, 시간, 장소 등을 공표 	선거법 제135,136조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연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하원의원후보자: 선거구위원회 - 비례대표하원의원후보자: 연방선거위원회 - 상원의원후보자: 해당 지역위원회 - 비례대표상원의원후보자: 연방선거위원회 • 후보자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명, 이름, 출생지, 출생년월, 거주지 주소, 거주기간, 직업, 선거증 번호, 입후보 대상 직위명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해 제출 • 재출마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입후보 대상 직위 재임 기간과 헌법에서 명시한 재임한도를 준수하고 있음을 명시,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는 재임 횟수를 표기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시 입후보수락 선언문, 출생증명서 사본 및 선거증 사본을 첨부 • 출마 후보자 소속 정당은 서면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정당 정관에 따라 선출되었음을 밝혀야 함. 	연방선거법 제237,238조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일 최소 3주전까지 후보자명부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장소와 시기를 공지 • 정당은 후보자명부,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 후보자 동의서, 기탁금 지급증명, 후보자 신분증명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수가 19석 미만인 선거구와 Bonaire 선거구는 10명, 19석 이상 39석 미만인 선거구는 20명, 이 외의 선거구는 30명의 선거구내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이 필요함. 	선거법 제H1,H3,H4, H9,H12조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이 일괄로 후보자를 등록(bulk nomination)하는 경우 정당은 후보자 등록일 전날 정오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전자 방식으로 일괄 제출 의사를 밝힘. 후보자의 이름, 후보자 동의서, 선거권자임을 증명하는 법적진술, 정당대표의 확인을 포함한 후보자 등록신청서류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개별 등록(individual nomination)은 지역구에 등록된 선거권자 2명 이상의 추천 서명, 후보자의 이름과 동의, 정당의 등록로고를 첨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등록일 정오까지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143,146D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가 있는 해 3월 31일 오후 12시까지 후보자명부를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후보자명부에는 일정 수의 사람들이 서명을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500표 이상을 득표하거나 전국에서 5,000표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명부: 해당 선거구 지구당 집행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 그 외: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500명 • 후보자명부와 함께 후보자의 생년월일, 서명인의 생년월일과 거주지 주소를 첨부해야 함. 	선거법 제6-1,6-3,6-4조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이나 연합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5,000명 이상의 추천 서명과 이름, 직업, 거주지, 국적, 주민번호, 후보자의 동의, 적격한 후보자임을 확인하는 문구를 기재한 후보자명부를 선거일 40일 전까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권자는 하나 이상의 명부에 추천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름, 주소, 신분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함. 	선거법 제208~212조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와 정당대리인의 신원정보(이름, 나이, 소속, 직업, 시민증번호, 거주지 등)가 포함된 후보자명부와 헌법재판소의 정당등록 증명서 사본, 후보자·대표의 선거인등록 증명서 및 후보자 성명서를 선거일 41일 전까지 선거구 지방법원에 제출 후보자 성명서에는 후보자 부적격사항이 없고 다른 선거구나 명부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후보자 추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 	의회선거법 제23,24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또는 연합은 후보자명부, 후보자 성명서, 기탁금 납입증명서를 동봉해 선거일 최소 90일 전 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출 후보자명부에는 정당 또는 연합의 명칭, 이름, 직위,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 모든 후보자의 명부상 기호 순번, 명부 제출자의 이름, 직위, 서명, 정당 또는 연합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후보자성명서는 후보자 추천에 동의하고 다른 명부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후보자가 자필로 작성 후보자명부 후보자 수는 1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선거법 제50조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은 정강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며 국회의원 3명 이상이 지지하는 경우에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선거구내 당원 50명의 추천 서명으로 해당 선거구에 1명의 후보자를 등록할 수 있음.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추천 서명으로 후보자를 등록할 수 있음. 명부에는 선거구 의석수 이상의 후보자가 포함될 수 없으며 후보자는 하나 이상의 선거구에 동시에 등록될 수 없음. 단, 정당이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구 할당 의석수보다 적은 경우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내 하나 이상의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될 수 있음. 후보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하며 동의는 취소가 불가능 함. 후보자명부에는 출마선거구, 명부의 명칭, 후보자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학력, 직업, 직위, 거주지), 명부 대표자의 이름, 거주지가 기재되어야 함. 지역구별 후보자 목록과 명부 결정 기록과 정당규정도 첨부해야 함. 	의회선거법 제42~51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은 각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명부를 최고선거위원회에 제출 정당은 연합을 형성하여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수 있음. 당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의회선거법 제12,12A,16, 20조

〈표 5-3〉 OECD국가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국가명	등록방법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명~500명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은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49조제3항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및 부록 서식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에서 무소속입후보가 가능하나 주에 따라 추천인의 수가 다름.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연방하원 및 주 상·하원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 하는 자는 이전 총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 또는 500명 중 적은 수의 선거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8400조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154조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하원이나 주의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하지 못한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자필서명을 얻어야 함. 	연방선거법 제20조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으로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86조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인단체나 지난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 연합, 연정의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최소 0.1% 서명 필요 	선거법 제169조제3항
스위스	-	-
스웨덴	-	-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66조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이름,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등록신청서를 제출 	선거법 제166조제1항
오스트리아	-	-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가 되기 위해 정당을 설립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시민들과 함께 명부를 구성하여 출마해야 함. • 후보자명부는 최소 1명의 후보자와 6명의 대체 후보자가 지명되어야 함(최대 후보자의 수는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 다름). • 후보자 등록방법은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116,117조

국가명	등록방법	근거규정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추천 후보자와 등록 요건이 동일하나 5명의 추천인에 의해 작성되며 공증된 추천인 명부를 첨부해야 함(공증인은 법률상 선거권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설립된 정당에 소속되어있지 않고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주소지가 등록된 자여야 함). 최소추천인 수를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별도 지정하는 마감일자로부터 7개월 전에 관보에 게재 ※ 지난 총선 선거구 선거권자 수의 0.5% 이상의 서명 	선거법 제3,11,13,14조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원의원 무소속후보자는 다른 정당, 정당연합명부에 포함되어 출마 가능하며 후보자 명부에 무소속후보자임을 명시해야 함. 상원의원 무소속후보자는 단독으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무소속 후보자임을 명시해야 하며 선거구내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첨부해야 함(서명에는 선거권자의 이름, 생일, 거주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유효하지 않음). 그 이외의 절차와 방법은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31,32,60,61조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의회선거법 제32조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등록신청서, 기탁금영수증사본, 후보자지원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27조, 제30조제4항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자 100명 이상이 선거구 연합을 설립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연합은 헌장을 작성하여 설립. 후보자의 이름, 직업과 직위, 거주지역이 기재되고 연합회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선거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명,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함. 후보자 등록절차는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나 연합설립헌장을 함께 제출 	선거법 제119,124조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방법은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34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참여 가능하며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게 최소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을 선거위원회에 제출 	의회선거법 제5,6조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선거에서는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연합목록에 참여가능) 	의회선거법 제2조, 헌법 제5조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선거구내 선거권자 30명의 추천성명서를 첨부하거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함. 선거권자는 두 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음. 	선거법 제46,47조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기본법(의회) 제5A조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국가명	등록방법	근거규정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후보자는 지역구의원선거에만 출마 가능 - 해당 선거구내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검역 등 비상사태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지역의 경우 500명 이상의 추천서명으로 가능). 	선거법 제70조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단독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선거법 제135조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연방선거법 제232조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후보자와 동일하게 후보자명부, 선거권자 추천 서명 - 의석 19석 미만인 선거구는 10명, 19석 이상 39석 미만인 선거구는 20명, 이 외의 선거구는 30명 	선거법 제H1,H3,H4조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참여 가능하며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2명 이상의 추천 서명과 후보자의 동의, 후보자 이름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류를 제출 	선거법 제144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이나 연합이 작성한 후보자명부에 포함될 수 있음. 선거권자들이 모인 단체를 통해서도 등록 가능 ※ 선거권자 단체는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추천 서명으로 후보자추천 위원회를 설립 가능 	헌법 제100조제1항 선거법 제204조제6항 제212조제3항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또는 연합의 후보자명부에 무소속후보자를 포함하여 작성 가능(개별적으로 출마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의회선거법 제21조제1항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선거법 제50조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자 최소 1,0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함. 	의회선거법 제44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등록신청서는 입후보 자격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서신과 기탁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무소속후보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등록될 수 있음. 	의회선거법 제16,21조

〈표 5-4〉 OECD국가의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국가명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	근거규정
한 국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
영 국	• 유럽의회의원,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고위공직자, 판사, 외국대사, 정규군인, 경찰, 공기업, 잉글랜드 은행장 등	하원의원 부자격법
미 국	•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공직	연방헌법 제1조제2,3항
프랑스	•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지방지사 및 도지사(Préfet)는 재직 중 및 재직 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한 지역과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모든 선거구에서는 하원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 부지사(sous-préfet), 도사무국장(secrétaires généraux de prefecture), 각급 판사 및 지역사무소장, 군인·경찰 공무원, 대학총장, 의료기관장 등의 지역 행정기관장 등은 재직 중이거나 재직 후 1년간 근무한 도내의 모든 선거구 내에서는 하원의 피선거권이 없음.	선거법 제46,132조
독 일	•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원, 직업군인, 일시적 지원병, 법관	기본법 제137조제1항
일 본	• 선거사무관계자(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또는 특정독립행정법인,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원 및 직원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 내각관방부장관,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부대신(국무대신직을 가지고 그 장을 맡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 각 청의 부장관을 포함) 및 대신정부관은 공무원 입후보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재직 중 공직선거 입후보 가능 ※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등록신청은 수리되지만 입후보신청일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직을 상실하게 됨(공직선거법 제90조).	공직선거법 제88,89조
스페인	• 연방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연방평의회 구성원은 연방법원의 법관직을 겸직할 수 없음.	연방헌법 제144조
	•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사원장, 감사원장 및 헌법 제131조제2항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판사, 검찰총장,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급 기관의 차관, 군인, 선거인명부관리국의 장, 공공기관 직원 등	선거법 제6조
	• 연방정부의 공무원, 연방의회사무국 공무원은 연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연방의회에 관한 법 제14조
스웨덴	• 의회의장이나 내각의 장관이 된 경우 겸직 금지	헌법 제4절 제9조
스위스	•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대법원 판사	헌법 제144조
캐나다	• 총독이 임명한 판사, 선거관리청장, 선거사무원	선거법 제65조
호 주	• 공무원, 공적기금을 받은 자, 직업 군인 등	헌법 제44조 연방선거법 제36조

국가명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	근거규정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의원,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구성원, 판·검사, 군인, 경찰이나 공공보안, 재정, 토지평가 관련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는 행정 업무는 겸직할 수 없음.¹³⁾ 	헌법 제59,92,122, 147조 공직자청립법 제2,6a조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국왕이 장관으로 임명 시 상·하원 의원직 정지(장관직 사임 시 의원 복귀) • 연방정부가 유급직으로 임명한 경우 상·하원의원직 상실 • 지방의회의원은 상·하원의원 겸직 금지 • 연방행정법률고문, 국가회계담당, 유한회사의 정부위원 도지사, 부도지사, 도의원, 감사원직원, 입법평가관, 검사, 검찰청 직원 등은 의원직과 겸직 금지 	헌법 제49~51조 제119조 겸직 금지법 제1조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주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의원, 정무장관, 중앙은행 위원회 위원, 대법원 판사, 경력법관, 헌법재판소 판사, 선거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감사원장, 노동조합 또는 유사단체 관리자급 직위에 있는 자, 국가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장, 검사, 지방검사, 내무공안부 수사관, 육해공군 총사령관, 경찰총장, 수사경찰국장 등은 하원 및 상원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헌법 제57조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대통령, 판사는 법령에 따라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헌법 제21,22조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 입후보에 정부 허가 필요 없음. 	헌법 제30조제2항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과 겸직할 수 없음. • 군복무 중인 자는 입후보할 수 없음. 	헌법 제63조 의회선거법 제4조제6항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관련 공무원, 행정감찰관, 법무부장관, 대법원 또는 최고행정법원 판사, 검찰총장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 선출되거나 겸직 불가능한 업무에 임명 될 경우에는 사직해야 함. 	헌법 제27조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군인, 보안업체 직원, 지방 공무원, 공공법무인, 지방자치단체장, 주지사, 부지사, 국영·공영 기업 또는 사법에 의해 통제되는 법인, 국가나 행정관련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영과 임명에 관여하는 기업의 대표,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등은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함. 	헌법 제56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헌법재판소 판사, 검사, 특정 공직과 법무직, 판사, 경찰, 군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 	헌법(STATE) 제24,26,29,30, 45,46조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판사는 피선거권 없음. 	헌법 제34조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의원, 유럽사법재판소 판사, 법무감, 유럽감사원재판소 판사, 경찰, 군인, 공무원법상 출마 허가가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대통령, 상원의원, 감사원장, 감사관, 판사 등은 피선거권이 없음. 	선거법(1992) 제41조

13)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Austria. 'The Members of the National Council.'
<https://www.parliament.gv.at/ENGL/PERK/NRBRBV/NR/ABGNR/index.shtml> (검색일 2022.8.3.)

국가명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	근거규정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유대교 최고지도자 랍비 2명, 판사, 종교재판관, 이스라엘방위군 참모총장, 입기 내 행정부 각 부처 장관 및 종교인,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고위공무원 및 고위장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고위 경찰간부 및 고위 교도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공기업 고위 근로자 등은 의회 총선 후보자명부 제출일 이전 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일자 이전에 사직해야 함. • 각 직렬 최고위급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이스라엘방위군 장교, 경찰, 교도관 등은 선거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전에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음. 	기본법(의회) 제7조 선거법 제56조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회 의원, 도의회의장, 인구 20,000명이 넘는 자치시의 시장, 경찰서장 및 부서장과 감찰관, 각 부처의 장관, 사르데냐 자치주 정부 대표, 시칠리아 지역 국가 위원, 일반지역위원, Friuli Venezia Giulia 지역정부위원, Valle d'Aosta 지역 위원회의장, Trento 및 Bolzano 지방정부위원, 중앙정부 조정관 등, 공안기관의 부책임자, 일정한 영역에서 명령권을 갖고 있는 장군 이상의 장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전에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음. • 법관(고등기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제외)은 후보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 이전에 휴직이나 면직이 되어 있어야 함. • 명예직 외교관을 제외한 일반 외교관 등 • 국가와 업무상의 계약이나 하청 등의 관계에 있는 사기업이나 회사의 대표자 등 	하원선거법 제7,8,9,10조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감사원장 또는 감사위원, 특명전권대사 또는 전권대사, 헌법재판소 판사, 검사, 군인, 경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후보자명부 등록 후 1개월 이내 사임해야 하며 확인 서류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유럽의회의원이 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의회의원 선서와 동시에 유럽의회 의원 자격을 상실 • 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당선 확정과 동시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을 상실 •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 판사는 출마할 수 있으나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 	의회선거법 제6조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 경찰, 군인 정당가입 불가 • 판사, 군인, 특정 공무원은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탄핵으로 의원직에서 해임된 자는 10년경과 후 출마 가능 	헌법 제113,114조 공무원법 제44조제2항 선거법 제11조제3항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국가직 근로자, 정부 또는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철도공사 근로자, 국무회의 최고위원(사임시 제외), 판사, 회계위원회 위원, 군인 등은 피선거권이 없음. • 의원과 혈연,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출마할 수 없음(동시에 당선된 경우 추첨으로 선택). 	선거법 제129조제1항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 관할의 군인, 법집행관, 지역사법 경찰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함. • 헌법상 자치기구의 책임을 맡은 자, 국무장관 또는 차관, 연방기관의 장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임해야 함. • 대법관, 선거재판소장, 선거위원회위원장, 선거위원회위원 또는 해당 기관들의 최고 관리직은 직위를 마친 후 3년이 지나야 함. • 장관, 연방판사, 지방판사, 시장, 정치행정단체의 책임자는 90일 이전에 사직해야 함. • 상원의원은 연속 2회까지 선출될 수 있으며, 하원의원은 연속 4회까지 가능 	헌법 제55,58,59조 선거법 제10조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장관, 국무장관, 국무위원, 회계법원 판사, 국가행정감찰관 또는 부감찰관, 대법원 판사, 검찰 총장 겸직 금지 	헌법 제57조

국가명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	근거규정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위원회 위원과 부위원, 선거관리관, 선거등록관은 입후보 할 수 없음. • 공무원과 경찰 또는 국가법에 따라 고용된 사람은 휴직 상태에서에서만 입후보 할 수 있음 (당선 시 사직해야 함). 	선거법 제47A, 52, 53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부처의 공무원(장관, 정치고문 제외), 대법원 판사, 외교관 또는 영사직원은 선거일 당일까지 위 직책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음. 	선거법 제3-1조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국립은행장, 감사원장, 시민권리위원장, 아동권리위원장, 금융통화위원회, 전국 라디오·TV연합회위원, 외교대사, 판사, 검사, 공무원(장관은 제외), 군인,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는 겸직 금지 	헌법 제102, 103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판·검사, 군인, 현직외교관, 선거위원회 위원 • 세무서의 장·책임자, 관할권이 있는 종교 성직자는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없음. 	의회선거법 제5, 6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 검사, 인권 변호사, 군인, 경찰, 유럽의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음. • 의원이 정부 관료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하나 행사할 수는 없음. 	헌법 제77조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 경찰 정당 가입 금지 • 선거공무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후보자 출마 시 법률에 따라 퇴직됨. 	헌법 제42조 의회선거법 제25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 검사, 대법원 판사, 고등교육기관 교수, 고등교육위원회 위원, 기타 공무원, 업무에 따라 공무원의 직위를 가지거나, 고용직으로 판단되지 않는 공공기관 종사자, 군인 등은 사직하지 않는 한 출마할 수 없음. • 최고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주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입후보를 위해 총선 또는 중간선거 1개월 전 또는 재선거 공표 후 7일 이내로 사직해야 함. 	헌법 제76조 선거기본법 제17, 18조

〈표 5-5〉 OECD국가의 후보자 사퇴 시한

국가명	사퇴 시한	비고
한 국	규정없음.	-
영 국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미 국	예비선거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총선거에서 사퇴 불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8801조
프랑스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선거법 시행규칙 제100조
독 일	후보자추천서 제출 후 추천서 승인기간 전까지	선거법 제23,24조
일 본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캐나다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선거법 제74조
호 주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연방선거법 제177조
헝가리	선거일 2일 전 오후 4시까지	선거절차법 제137조
리투아니아	선거일 35일 전까지	선거법 제44조
멕시코	선거일 30일 전까지 ※ 선거일 6월 첫 번째 일요일 입후보등록기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선거법 제241조
뉴질랜드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선거법 제146조

※ OECD국가 중 다수대표제로 지역구위원을 뽑는 국가 대상(비례대표제 실시국가 제외)

〈표 5-6〉 각국의 여성 의회의원 비율

(2022년 10월 기준)

순위	국가명	하원의회(단원)				상원의회			
		선거일	의석	여성의원	%	선거일	의석	여성의원	%
1	르완다	2018. 9. 9.	80	49	61.3%	2019. 9. 9.	26	9	34.6%
2	쿠 바	2018. 3. 3.	586	313	53.4%	-	-	-	-
3	니카라과	2021. 11. 7.	91	46	50.6%	-	-	-	-
4	멕시코	2021. 6. 6.	500	250	50.0%	2018. 7. 1.	128	63	49.2%
”	아랍에미리트	2019. 10. 5.	40	20	50.0%	-	-	-	-
6	뉴질랜드	2020. 10. 17.	120	59	49.2%	-	-	-	-
7	아이슬란드	2021. 9. 9.	63	30	47.6%	-	-	-	-
8	코스타리카	2022. 2. 6.	57	27	47.4				
9	안도라	2019. 4. 4.	28	13	46.4%	-	-	-	-
10	볼리비아	2020. 10. 18.	130	60	46.2%	2020. 10. 18.	36	20	55.6%
”	남아프리카공화국	2019. 5. 5.	396	183	46.2%	2019. 5. 5.	54	20	37.0%
12	스웨덴	2018. 9. 9.	349	161	46.1%	-	-	-	-
13	핀란드	2019. 4. 4.	200	91	45.5%	-	-	-	-
14	노르웨이	2021. 9. 9.	169	76	45.0%	-	-	-	-
15	아르헨티나	2021. 11. 14.	257	115	44.8%	2021. 11. 14.	72	31	43.1%
16	나미비아	2019. 11. 27.	104	46	44.2%	2020. 12. 15.	42	6	14.3%
”	세네갈	2022. 7. 31.	165	73	44.2%	-	-	-	-
18	스페인	2019. 11. 10.	349	150	43.0%	2019. 11. 10.	265	104	39.3%
19	벨기에	2019. 5. 5.	150	64	42.7%	2019. 7. 4.	60	29	48.3%
20	스위스	2019. 10. 20.	200	85	42.5%	2019. 10. 20.	46	13	28.3%
21	모잠비크	2019. 10. 15.	250	106	42.4%	-	-	-	-
22	북마케도니아	2020. 7. 15.	120	50	41.7%	-	-	-	-
23	에티오피아	2021. 6. 6.	470	195	41.5%	2021. 10. 4.	144	44	30.6%
24	오스트리아	2019. 9. 9.	183	75	41.0%	-	61	25	41.0%
25	네덜란드	2021. 3. 3.	150	61	40.7%	2019. 5. 5.	75	24	32%
26	몰도바	2021. 7. 7.	101	41	40.6%	-	-	-	-
27	벨라루스	2019. 11. 17.	110	44	40.0%	2019. 11. 7.	60	15	25%
”	페 루	2021. 4. 4.	130	52	40.0%	-	-	-	-

순위	국가명	하원의회(단원)				상원의회			
		선거일	의석	여성의원	%	선거일	의석	여성의원	%
"	슬로베니아	2022. 4. 24.	90	36	40.0%	2017. 11. 22	40	4	10%
"	동티모르	2018. 5. 5.	65	26	40.0%				
31	덴마크	2019. 6. 6.	179	71	39.7%	-	-	-	-
32	카보베르데	2021. 4. 4.	72	28	38.9%	-	-	-	-
33	에콰도르	2021. 2. 2.	137	53	38.7%	-	-	-	-
34	세르비아	2022. 4. 3.	249	96	38.6%				
35	호 주	2022. 5. 21.	151	58	38.4%	2022. 5. 21.	76	43	56.6%
36	부룬디	2020. 5. 20.	123	47	38.2%	2020. 7. 20.	39	16	41%
37	프랑스	2022. 6. 12.	577	215	37.3%	2020. 9. 27.	348	122	35.1%
38	포르투갈	2022. 1. 1.	228	84	36.8%	-	-	-	-
39	탄자니아	2020. 10. 28.	388	143	36.9%	-	-	-	-
40	알바니아	2021. 4. 4.	140	50	35.7%	-			
41	가이아나	2020. 3. 3.	70	25	35.7%	-	-	-	-
42	아르메니아	2021. 6. 6.	107	38	35.5%	-	-	-	-
43	칠 레	2021. 11. 21.	155	55	35.5%	2021. 11. 21.	50	12	24%
44	독 일	2021. 9. 9.	736	257	34.9%	-	71	24	33.8%
45	영 국	2019. 12. 12.	649	224	34.5%	-	776	222	28.6%
46	도미니카	2019. 12. 6.	32	11	34.4%	-	-	-	-
47	카메룬	2020. 2. 2.	180	61	33.9%	2018. 3. 3.	100	26	26%
48	우간다	2021. 1. 1.	556	188	33.8%	-	-	-	-
49	양골라	2022. 8. 24.	220	74	33.6%	-	-	-	-
"	네 팔	2017. 11. 26.	271	91	33.6%	2022. 1. 26.	59	22	37.3%
51	룩셈부르크	2018. 10. 14.	60	20	33.3%	-	-	-	-
:		:							
124	한 국*	2020. 4. 15	300	57	18.6%	-	-	-	-

* 2020.4.15. 선거 결과 300명 중 57명이 여성의원이었으나 2022.10. 기준 55명으로 18.6%임.

출처: IPU Parline.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s://data.ipu.org/women-ranking?month=3&year=2022> (검색일 2022.11.16.)

〈표 5-7〉 각국의 여성할당제

구분	상원의원 선거	하원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지정의석 할당제 (Reserved Seats)	부룬디, 이집트, 에스와티니, 아이티, 케냐, 네팔, 파키스탄,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룬디, 중국,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가이아나, 아이티, 이라크, 요르단, 케냐, 코소보, 모리타니, 모로코, नेपाल, 니제르, 파키스탄, 르완다,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짐바브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부룬디, 이집트, 에리트레아, 기니, 인도, 이라크, 요르단, 케냐, 코소보, 레소토,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니제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시에라리온, 남수단, 수단, 스리랑카, 탄자니아, 동티모르, 우간다, 바누아투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Legislated Candidate Quotas)	아르헨티나, 벨기에,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파라과이, 콩고공화국, 스페인,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한국,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기니,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북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남수단, 스페인,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한국, 알바니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나미비아, 네팔, 니카라과, 북마케도니아,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태국, 튀니지,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정당자율 할당제 (Voluntary Party Quotas)	알제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베냉,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케냐,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셔스, 몰타, 멕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튀르키예, 우간다, 영국, 우루과이, 짐바브웨		
기타	일본	정당의 후보자 추천 시 남녀 성비가 가능한 균등해지도록 지향해야 함. 단 의무사항은 아님(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 제2조).	

※ 지정의석 할당제: 헌법이나 선거법에 여성만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 수를 규정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선거법에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시 성비나 추천 순서를 규정
 정당자율할당제: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성비나 순서를 결정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overview> (검색일 2022.4.1.)

〈표 5-8〉 지정의석할당제 국가 현황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근거규정
아프가니스탄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9석 중 68석을 여성에게 할당 - 각 주에서 인구를 기반으로 절차와 공식을 준비해야 함. - 선거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제83조 선거법2016 제254조, 제51조제1,2항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법2016 제58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
방글라데시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석 중 50석을 여성에게 할당 • 300석을 의회 선거에서 선출한 후, 각 정당의 의석 획득수에 비례하여 여성지정의석을 배분 	헌법 제65조제3A항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방의회에서는 12명의 의석 중 3석을 여성에게 할당 - 3개의 기초 단위 선거구 마다 하나의 여성전용선거구(직선)를 구성하여 여성 의원을 선출 	헌법 제9조
부룬디	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선거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가 후보자명부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제185조 선거법2014 제142조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후보자명부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후보자 추천관련 규정도 있음(후보자명부 4명 중 1명은 여성). 	헌법 제169조 선거법2014 제108조제1항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평의회 15명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가 최다 득표한 여성후보자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성비가 낮은 성별의 후보자가 우선 	선거법 제182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81조제2항, 제191조
중국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 22%의 의석을 여성에게 할당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결정 제8조
이집트	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석 중 10%를 여성에게 할당 	141상원법 제1조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8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102조제1항 하원의회법 제1조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 중 1/4을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180조
에리트레아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법 제12조제4항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 	선거법 제17조제2항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근거규정
에스와티니	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석 중 13석을 여성에게 할당 - 간선제로 선출되는 10석 중 5석은 여성에게 할당, 국왕이 임명하는 20석 중 최소 8석은 여성을 임명해야 함. 	헌법 제94조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76석 중 30% 여성할당 - 국왕이 임명하는 최대 10석 중 50%는 여성을 임명해야함. - 선출되는 의석이 여성할당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회에서 선거인단 선거로 4석의 여성지정의석을 추가로 할당 	헌법 제86,95조
아이티	상원·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별도 시행 규정 없음. 	헌법 제17조제1항, 제30조제1항
인도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시, 마을의회 의석 중 33%를 여성에게 할당 - 별도의 선거구를 순환방식으로 지정해 선출 	헌법 제243조D제2,3항 제243t조
이라크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 선거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제49조제4항 선거법26(2009) 제3조제3항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명의 당선인 중 마지막 당선인은 최다 득표한 여성후보자로 선출 (Best loser system) 	선거법 제13조제2항
요르단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석 중 15석을 여성에게 할당 - 선거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낙선한 여성후보자들 중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자를 선출(Best loser system) 	선거법 제51조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970석 중 297석을 여성에게 할당 	
케냐	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석 중 18석을 여성에게 할당 - 47명은 지역구를 통해 선출, 정당이 획득한 의석비율에 따라 16석의 여성지정의석을 배분 - 청년대표 2석 중 1석은 여성 - 장애인대표 2석 중 1석은 여성 	헌법 제98조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0석 중 47석을 여성에게 할당 - 47개의 카운티마다 여성전용단일선거구를 구성해 선출 ※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 중 2/3 이상이 같은 성별인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헌법 제27조제8항, 제81조 정당법 제25조제2항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 마다 2/3 이상이 같은 성별으로 구성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여성전용특별의석을 추가 지정 - 정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특별의석을 배분 	헌법 제175조(C), 제177조(1:b), 197조제1항
레소토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도, 지방의회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할당 - 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배분 	지방선거법(2011)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근거규정
리비아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회 의석 중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해야한다고 규정 - 별도 시행 규정 없음. 	선거법 제1조제20항, 제46조제2항
모리타니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7석 중 20석을 여성에게 할당 - 여성후보 별도명부를 통해 전국 단일선거구로 선출(106석은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40석 중 20석을 여성에게 할당) 	선거법 제3조
모로코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5석 중 60석을 여성에게 할당 - 60석은 여성지정의석으로 전국단일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 ※ 305석은 중대 선거구에서 선출, 30석은 40세 미만 청년지정의석으로 선출 	선거법20-16 제23조제2항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지방의회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 •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여성전용선거구를 지정해야 함.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한 법59-11 제76,77,143조
네 팔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 ※ 의장과 부의장 중 한 명은 여성으로 선출되어야 함. 	헌법 제84조제8항, 제91조제2항
파키스탄	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제로 선출하는 104석 중 17석을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59조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2석 중 60석을 여성에게 할당 -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정당이 선거 전 제출한 여성 후보자명부에서 간접비례대표방식으로 선출) 	헌법 제51조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의석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성지정의석 배분 	헌법 제32조, 제106조제1,3항
르완다	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제와 임명을 통해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9조제4항, 제82조
	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석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함. - 24석은 간선으로 여성만 선출[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도(province)와 키갈리시티(City of Kigali)에서 각 2명씩 선출 -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53석에 여성후보자 추천 관련 법정할당제(30%)적용 - 일반적으로 50%가 넘는 여성의원 비율을 보임(2022년 여성의원 비율 1위). - 여성의원 비율을 보임(2022년 여성의원 비율 1위). ※ 80석 중 2석은 간선으로 청년의원 선출, 1석은 여성 	헌법 제10조제4항, 제75조 선거법 제5,102,109조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기초의회에서 1명의 여성의원과 1명의 남성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 • 광역의회 의석의 30%를 간선을 통해 여성에게 할당 	선거법27/2010 제155,156조
사모아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석 중 10%를 여성에게 할당 -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제44조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근거규정
사우디아라비아	의회	• 150의석 중 20%를 국왕이 여성으로 임명	의회법 국왕령 A/91
시에라리온	지방	• 구 개발 위원회 10석 중 5석을 여성에게 할당 - 별도 시행 규정 없음.	지방자치법 제95조
소말리아	의회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별도 시행 규정 없음.	Garowe원칙
수 단	하원	•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 득표율에 비례하여 4%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할당	선거법 제29조, 제33조제7항
탄자니아	하원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393석 중 264석은 지역구 선거로 선출, 113석 여성지정의석, 대통령 임명 중 5석은 여성, 잔지바르대표 5석 중 2석은 여성 - 지역구선거 득표율에 비례하여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할당	헌법 제66조1:b, 제78조제1항 선거법 제86A조제2항
	지방	•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 -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여성지정의석을 배분	
동티모르	지방	• 지방의회의 3석을 여성에게 할당 - 별도 시행 규정은 없음.	지방선거법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우간다	의회	• 529석 중 153석을 여성에게 할당 - 선거구 선출 499석 중 146석을 여성전용선거구에서 선출 - 간선제 30석 중 7석을 여성에게 할당 · 청년대표 5석 중 1석 · 장애인대표 5석 중 1석 · 노동자대표 5석 중 1석 · 노인대표 5석 중 1석 · 우간다 인민방위군 대표 10석 중 2석	헌법 제78조제1항 선거법 제8조
	지방	• 지방의회 의석의 1/3을 여성에게 할당 - 여성후보자별도명부를 통해 선출	헌법 제180조2:b 선거법 제108조제3항
바누아투	지방	• 지방의회 의석 중 1석을 여성에게 할당	도시법 개정(2013)
아랍에미리트	의회	• 의석 중 50%를 여성에게 할당 - 2019년 40석 중 20석을 여성에게 할당(7석은 선출, 13명은 대통령이 임명함)	2019 대통령시행령 제1호
짐바브웨	하원	• 210석을 지역구 선거로 선출한 뒤 60석을 여성에게 할당 - 전국 10개 지역에서 6명씩 선출 - 정당의 지역구 득표수에 비례하여 여성지정의석을 배분	헌법 제124조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database> (검색일 2022.4.1.)

〈표 5-9〉 OECD국가의 후보자 추천 관련 여성할당제와 제재 현황

■ 선거법에 규정이 있는 국가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불이행시 법적제재
한 국	국회의원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50% 이상을 추천 하되, 후보자명부 순위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함. 지역구국회의원선거선거 후보자 추천 시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함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2호, 제2항)
	지방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50% 이상을 추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선거 후보자 추천 시 전국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지역구사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함). 	
프랑스	상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 50%, 남녀교호순번제 (선거법 제299조제1항, 제300조제1항), ※ 헌법 제1,4조	행정법원에 제소 (선거법 제303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301조)
	하원선거	소속 정당 추천 후보자 전체에서 후보자의 남녀성비 차이가 2%를 초과할 수 없음.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 제9-1조) ※ 헌법 제1,4조	성비 차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비율로 국고보조금 삭감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 제9-1조)
	지방선거	<p>중역·기초의회선거 - 남녀로 구성된 한 조(pairs)의 후보에게 투표 (선거법 제191조)</p> <p>인구 1,000명 이상 코뮌 비례선거,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 하원의원 선거 - 남녀교호순번제 (선거법 제264,346조)</p>	-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265,350조)
일 본	의회선거 지방선거	남녀 후보자의 수가 가능한 균등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정치 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 제2조)	제재 규정 없음
스페인	상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 50%. 명부 순서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44조2의제2,4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47조제2,4항)
	하원선거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44조2의제1,2항)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불이행시 법적제재
벨기에	상원선거 하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 50% 명부 상위 두 명은 동일한 성별이면 안 됨. (선거법 제117-2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119-5조)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 50% (지방선거법 제23조제9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지방선거법 제26조제2항)
칠레	상원선거 하원선거	남녀성비는 후보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선거법 제4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4조)
그리스	의회선거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의회선거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8조제4항) ※ 헌법 제116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의회선거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아일랜드	하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 1997 제17조제4B항) ※ 2012에 개정시 30% 이상이였지만 7년 이내에 40%까지 할당	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선거법 1997 제17조제4B항)
이탈리아	상원선거	남녀교호순번제 (상원선거법 제9조) ※ 헌법 제51조	-
	하원선거	남녀성비는 후보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남녀교호순번제 (하원선거법 제18-2조) ※ 헌법 제51조	여성정치참여를 위해 기부금의 10%를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시 벌금부과 (국고보조금 폐지 및 기부금 규정 제9조제3항)
	지방선거	인구가 3000명을 넘는 지방의회위원의 남녀성비는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 제1조제137항) ※ 헌법 제117조	지역별 규정 Calabria, Friuli, Marche, Trento, Tuscany 지역은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Lazio, Umbria, Puglia 지역은 재정적 제재
멕시코	상원선거 하원선거	선출직과 임명직 의원의 남녀성비는 50%가 되어야 함. 후보자 남녀 성비가 최소 45%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3,232,233조) ※ 헌법 제41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235조)
	지방선거	각 주별로 규정	각 주별로 규정
폴란드	하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 제211조제3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215조제5항)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 3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선거법 제425조제3항, 제457조제2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431조)
포르투갈	의회선거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 2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평등에 관한 법 제1조, 제2조제1,2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평등에 관한 법 제4조)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불이행시 법적제재
슬로베니아	하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의회선거법 제43조제6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의회선거법 제56조)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 3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지방선거법 제70a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지방선거법 제74조)

■ 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국가

정당자율 할당제 실시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여성할당제 관련 적극적 조치가 없는 국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미국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관련 각국의 헌법 규정 내용

프랑스	헌법 제1조제2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 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헌법 제4조제2항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스	헌법 제116조제2항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채택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다. 국가는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실제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51조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동등하게 공직과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남녀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구체적 조치를 채택한다.
	헌법 제117조	주법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에서의 완전한 남녀평등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남성과 여성의 선출직에 대한 기회 균등을 촉진한다.
멕시코	헌법 제41조	정당의 목적은 국민의 민주주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의제 통합에 기여하고, 시민이 프로그램과 원칙 및 사상에 따라 보통·자유·비밀 및 직접 선거를 통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연방 및 지방의원선거 후보자들의 성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overview> (검색일 2022.6.30.)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Electoral quota for women'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is_electoral_quota_women&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6.30.)

〈표 5-10〉 각국의 청년 의회의원 비율

(2022년 11월 기준, 30세 미만 국가 순으로 정리)

순위	국가명	최근선거	총의석	청년의원			평균연령 (세)
				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	한국*	2020.4.15	300	0.00	3.7	7.41	54.9
1	노르웨이	2021.9.13.	169	13.61	34.32	44.97	46.1
2	아르메니아	2021.6.20.	107	13.08	52.34	70.09	40.02
3	세르비아	2022.4.3.	250	12.8	40.4	56.4	45.07
4	부탄	2018.4.20.	25	12.5	54.17	70.83	40.39
5	산마리노	2019.12.8.	60	11.67	26.67	48.33	46.9
6	수리남	2020.5.25.	51	9.8	37.25	50.98	46.02
7	덴마크	2022.11.1.	179	9.5	30.73	49.72	46.7
8	지부티	2018.2.23.	65	9.23	29.23	38.46	49.17
9	독 일	2021.9.26.	598	8.83	28.94	41.98	47.3
10	아이슬란드	2021.9.25.	63	7.94	20.63	41.27	48.73
11	몰도바	2021.7.11.	101	7.92	37.62	47.52	46.71
12	오스트리아	2019.9.29.	183	7.65	27.87	43.72	47.29
13	우크라이나	2019.7.21.	450	7.09	46.34	63.36	-
14	코스타리카	2022.2.6.	57	7.02	28.07	43.86	48.43
15	튀니지	2019.10.6.	217	6.91	26.73	39.63	48.08
16	과테말라	2019.6.16.	160	6.88	29.38	41.88	47
17	이탈리아	2018.3.4.	630	6.83	42.7	59.52	44.25
18	스웨덴	2022.9.11.	349	6.59	28.94	43.84	46.7
19	볼리비아	2020.10.18.	130	6.15	42.31	60	44.3
20	칠레	2021.11.21	155	5.81	31.61	45.16	47.3
21	포르투갈	2022.1.30.	230	5.65	24.35	37.39	49.04
22	앤티가바부다	2018.3.21.	18	5.56	11.11	27.78	-
23	슬로베니아	2022.4.24.	90	5.56	22.22	35.56	48.44
24	감비아	2022.4.9.	58	5.45	43.64	63.64	43.05
25	슬로바키아	2020.2.29.	150	5.41	29.05	52.03	47.51
26	네덜란드	2021.3.17.	150	5.33	39.33	62	43.71
27	멕시코	2021.6.6.	500	5.2	28.6	44.8	48.05
28	에콰도르	2021.2.7.	137	5.11	33.58	54.01	46.16
29	북마케도니아	2020.7.15.	123	5	33.33	53.33	49.71
30	몬테네그로	2020.8.30.	81	4.94	37.04	53.09	46.44
31	탄자니아	2020.10.28.	393	4.89	27.59	45.11	-
32	브라질	2018.10.7.	513	4.87	26.9	40.16	51.58
33	우즈베키스탄	2019.12.22.	150	4.86	29.17	47.92	45.67
34	남아프리카공화국	2019.5.8.	400	4.71	24.12	35.29	-
35	불가리아	2021.11.14.	240	4.58	32.5	51.67	-
36	모로코	2021.9.8.	395	4.56	17.47	28.35	-

순위	국가명	최근선거	총의석	청년의원			평균연령 (세)
				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37	폴란드	2019.10.13.	460	4.35	22.39	36.96	50
38	루마니아	2020.12.6.	330	4.26	34.65	59.57	44.75
39	뉴질랜드	2020.10.17.	120	4.17	27.5	40.83	47.38
40	라트비아	2022.10.1.	100	4	27	51	47.3
41	스위스	2019.10.20.	200	4	25.5	39.5	48.6
42	에티오피아	2021.6.21.	547	3.83	51.28	71.28	40.46
43	인도네시아	2019.4.17.	575	3.83	14.96	26.26	51.62
44	우간다	2021.1.14.	529	3.83	24.33	48.47	46.85
45	아일랜드	2020.2.8.	160	3.75	18.75	41.25	48.5
46	영국	2019.12.12.	650	3.69	21.69	34	51
47	안도라	2019.4.7.	28	3.57	10.71	35.71	48.89
48	핀란드	2019.4.14.	200	3.5	29	45	48
49	몰디브	2019.4.6.	87	3.45	26.44	59.77	43.75
50	스페인	2019.11.10.	350	3.43	22.86	40.86	47
51	벨기에	2019.5.26.	150	3.33	28	54	46.1
52	룩셈부르크	2018.10.14.	60	3.33	20	28.33	53.07
53	말리	2020.12.5.	121	3.31	21.49	33.06	-
54	헝가리	2022.4.3.	199	3.02	18.59	30.15	53.47
55	에스토니아	2019.3.3.	101	2.97	19.8	35.64	51.62
56	세이셸	2020.10.22.	35	2.86	25.71	42.86	47.2
57	리투아니아	2020.10.11.	141	2.84	29.08	45.39	49
58	조지아	2020.10.31.	150	2.67	24.67	49.33	47.57
59	파키스탄	2018.7.25.	342	2.63	14.33	31.87	52.39
60	바레인	2018.11.24.	40	2.5	25	47.5	46.8
61	르완다	2018.9.3.	80	2.5	25	50	46.81
62	아랍에미리트	2019.10.5.	40	2.5	25	40	48.5
63	태국	2019.3.24.	500	2.4	16.6	26.4	54
64	트리니다드토바고	2020.8.10.	42	2.38	23.81	40.48	50.16
65	이집트	2020.10.24.	596	2.36	20.95	32.94	-
66	스리랑카	2020.8.5.	225	2.23	11.61	25	53.02
67	차드	2021.9.24.	93	2.15	24.73	38.71	-
68	부탄	2018.10.18.	47	2.13	21.28	46.81	43
69	체코	2021.10.8.	200	2	19	33	50.4
70	콩고	2017.7.16.	151	1.99	11.92	20.53	-
71	캐나다	2021.9.20.	338	1.95	16.88	30.19	50.58
72	카자흐스탄	2021.1.10.	107	1.89	17.92	29.25	-
73	벨라루스	2019.11.17.	110	1.82	13.64	20.91	50.5
74	키프로스	2021.5.30.	80	1.79	23.21	33.93	49.41
75	시에라리온	2018.3.7.	146	1.6	27.2	53.6	47.01

순위	국가명	최근선거	총의석	청년의원			평균연령 (세)
				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76	투르크메니스탄	2018.3.25.	125	1.6	35.2	63.2	46.16
77	베트남	2021.5.23.	500	1.6	10.42	29.26	49.77
78	레바논	2022.5.31.		1.56	9.38	17.19	55.92
79	가이아나	2020.3.2.	72	1.49	31.34	46.27	47.83
8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20.12.27.	140	1.43	17.14	29.29	-
81	모리셔스	2019.11.7.	70	1.43	21.43	40	49.41
82	튀르키예	2018.6.24.	600	1.33	14.83	28.67	52.83
83	파라과이	2018.4.22.	80	1.25	28.75	50	45.91
84	중 국	2018.3.5.	3000	1.24	5.61	11.56	53
85	아르헨티나	2021.11.14.	257	1.2	15.2	30.8	-
86	모잠비크	2019.10.15.	250	1.2	22시	33.2	51.17
87	카메룬	2020.2.9.	180	1.11	8.89	18.33	55
88	싱가포르	2020.7.10.	104	1.05	15.79	40	48.3
89	우루과이	2019.10.27.	99	1.01	31.31	36.36	48.68
90	말레이시아	2018.5.9.	223	0.9	10.36	18.02	55.89
91	아제르바이잔	2020.2.9.	125	0.85	10.17	22.03	-
92	인 도	2019.4.11.	545	0.79	10.71	20.24	51
93	가 나	2020.12.7.	275	0.73	12.36	28	49
94	잠비아	2021.9.10.	166	0.68	15.54	35.14	49.2
95	그리스	2019.7.7.	300	0.67	12.33	24.67	53.85
96	크로아티아	2020.7.5.	151	0.66	22.52	39.74	-
97	케냐	2017.8.8.	350	0.57	12.89	29.8	50.73
98	앙골라	2017.8.23.	220	0.56	11.11	17.78	-
99	코트디부아르	2021.3.6.	255	0.39	3.15	15.35	55.18
100	방글라데시	2018.12.30.	350	0.29	5.71	10.57	59.48
101	미 국	2020.11.3.	435	0.23	6.73	16.24	58.4
102	일 본	2021.10.31.	465	0.22	6.02	17.2	55.53

30세 미만 청년의원이 없는 국가	한국, 호주, 베냉,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피지, 아이티,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요르단, 키리바시,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나우루, 네팔, 니카라과, 오만,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상투메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	--

* 2020.4.15. 선거 결과 30세 미만 정의당 비례대표의원 1명이 있었으나 2022.11. 기준으로는 없음.

출처: IPU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Data on age: By country.'

<https://data.ipu.org/age-brackets/> (검색일 2022.5.18.)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통계-30세 미만 정의당 비례대표 1인.'

<https://open.assembly.go.kr/portal/theme/visual/searchVisualPage.do> (검색일 2022.11.15.)

〈표 5-11〉 각국의 청년할당제

구분	국가명	적용연령	비율(의석수)	할당방법	근거규정
지정의석 할당제 (Reserved Seats)	르완다	35세 미만	1.8%(2석)	전국청년위원회에서 선출	헌법 제76조
	모로코	40세 미만	7.6%(30석)	폐쇄형 비례대표제로 선출	의회선거법 제1조
	케냐	(상원)35세 미만	2.9%(2석)	의회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	헌법 제90,98조
		(하원)35세 미만	3.4%(12석:청년·장애 인·노동자)	의회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이 지명	헌법 제90,97조
	우간다	30세 미만	1.2%(5석)	전국청년대표대회에서 선출	의회선거법 제5조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Legislated Candidate Quotas)	국가명	적용연령	추천비율		근거규정
	필리핀	-	비례후보자명부의 50%는 청년을 포함한 소수집단 대표로 구성되어야 함.		헌법 제6조제5항제2호
	튀니지	35세 미만	25% - 4명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명부 상 위 4명 중 1명을 청년으로 추천		헌법 제8조 선거법 제25조
	가봉	40세 미만	20%		9/2016법 제4조
	키르기스스탄	35세 미만	15%		선거법 제60조제3항
	이집트	35세 미만	비례대표제 4개의 선거구 중 15석이 배정된 선거구 는 적어도 2명 이상, 45석이 배정된 선거구는 적어 도 6명 이상의 청년후보자를 추천해야 함.		선거법 제3조
정당할당제 (Political Party Quotas)	국가명		적용연령	추천비율(정당마다 다름)	
	니카라과		-	40%(여성, 청년), 15%	
	루마니아		-	30%	
	멕시코, 몬테네그로		30세 미만	30%, 20%	
	베트남		40세 미만	26.5%	
	엘살바도르		31세 미만	25%	
	스웨덴		35세 미만	20%	
	모잠비크		35세 미만	20%	
	키프로스		45세, 35세 미만	20%	
	리투아니아		35세 미만	-	
	헝가리, 세네갈		-	20%	
앙골라, 튀르키예		-	15%, 10%		

※ 지정의석할당제: 헌법이나 선거법에 청년대표가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규정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각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청년후보자의 추천비율을 법으로 정함.
 정당자율할당제: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청년후보자의 추천비율을 정함.
 출처: IPU. 2021.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table 18,19,20.'
<https://www.ipu.org/youth2021> (검색일 2022.5.10.)

〈표 5-12〉 OECD국가의 청년 의회의원 현황 및 청년 연령범위

(2022년 5월 기준)

국가명	단원 및 하원의원 수(비율%)				최연소 의원 이름(당선 시 연령, 성별)	청년 연령범위(세)
	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총의석수		
한 국	1(0.33%)	9(3%)	28(9.3%)	300	류호정(27,여)	9~24
영 국	24(3.69%)	141(21.69%)	221(34%)	650	Nadia Whittome(24,여)	13~19
미 국	1(0.23%)	28(6.73%)	70(16.24%)	431	Madison Cawthorn(25,남)	14~25
프랑스	32(5.55%)	134(23.22%)	213(36.92%)	577	Ludovic Pajot(23,남)	3~30
독 일	65(8.83%)	213(28.94%)	309(41.98%)	736	Emilia Fester(23,여)	12~26
일 본	1(0.22%)	28(6.02%)	80(17.20%)	465	Yuki Baba(29,남)	0~30
스페인	12(3.43%)	80(22.86%)	143(40.86%)	650	Marta Rosique i Saltor(23,여)	15~29
스웨덴	36(9.42%)	120(31.41%)	176(46.07%)	382	Ebba Hermansson(22,여)	13~25
스위스	8(4%)	51(25.5%)	79(39.5%)	200	Andri Silberschmidt(25,남)	16~25
캐나다	6(1.95%)	52(16.88%)	93(30.19%)	308	Eric Melillo(23,남)	16~28
호 주	0	21(13.91%)	39(25.83%)	151	Phillip Thompson(31,남)	12~24
오스트리아	14(7.65%)	51(27.87%)	80(43.72%)	183	Yannick Shetty(24,남)	14~24
벨기에	5(3.33%)	42(28%)	81(54%)	150	Dries Van Langenhove(26,남)	0~30
체 코	4(2%)	38(19%)	66(33%)	200	Ondřej Babka(27,남)	15~30
칠 레	-(자료없음)			155	Camila Rojas Valderrama(27,여)	15~29
덴마크	17(9.5%)	55(30.73%)	89(49.72%)	179	Aki-Matilda Høegh-Dam(22,여)	15~29
에스토니아	3(2.97%)	20(19.80%)	36(35.64%)	101	Ruuben Kaalep(25,남)	7~26
핀란드	7(3.5%)	58(29%)	90(45%)	200	Iiris Soumela(26,여)	0~29
그리스	2(0.67%)	37(12.33%)	74(24.67%)	300	Maria Apatzidi(29,여)	15~35
헝가리	6(3.02%)	37(18.59%)	60(30.15%)	199	Miklós Hajnal(27,남)	15~29
아이슬란드	5(7.94%)	13(20.63%)	26(41.27%)	63	Lilja Rannveig Sigurbjörnsdóttir(25,여)	6~25
아일랜드	6(3.75%)	30(18.75%)	66(41.25%)	160	James O'Connor(23,남)	15~24
이스라엘	0	15(12.50%)	37(30.83%)	120	Shirley Pinto Kadosh(32,여)	13~18
이탈리아	43(6.83%)	269(42.7%)	375(59.52%)	630	Angela Raffa(25,여)	15~35
라트비아	4(4%)	27(27%)	51(51%)	100	Reinis Znotiņš(26,남)	13~25
리투아니아	4(2.84%)	41(29.08%)	64(45.39%)	141	Marius Matijošaitis(28,남)	14~29
룩셈부르크	2(3.33%)	12(20%)	17(28.33%)	60	Djuna Bernard(26,여)	12~30
멕시코	26(5.2%)	143(28.6%)	224(44.8%)	500	Karla Ayala Villalobos(22,여)	12~29
네덜란드	8(5.33%)	59(39.33%)	93(62%)	150	Habtam de Hoop(23,남)	0~24

국가명	단원 및 하원의원 수(비율%)				최연소 의원 이름(당선 시 연령, 성별)	청년 연령범위(세)
	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총의석수		
뉴질랜드	5(4.17%)	33(27.5%)	49(40.83%)	120	Chlöe Swarbrick(26,여)	12~24
노르웨이	23(13.61%)	58(34.32%)	76(44.97%)	169	Åse Kristin Ask Bakke(25,여)	12~29
폴란드	20(4.35%)	103(22.39%)	170(36.96%)	460	Robert Gonatarz(26,남)	15~24
포르투갈	12(5.22%)	62(26.96%)	90(39.13%)	230	Miguel Martins(25,남)	12~30
슬로바키아	8(5.41%)	43(29.05%)	77(52.03%)	148	Dominik Drdul(22,남)	0~29
슬로베니아	4(4.44%)	16(17.78%)	29(32.22%)	90	Jure Ferjan(25,남)	15~29
튀르키예	8(1.33%)	89(14.83%)	172(28.67%)	600	Rueysa Kadak(22,여)	14~29

출처: 청년연령범위

YOUTHPOLICY.ORG. 'Factsheets.'-국가별 검색

<https://www.youthpolicy.org/factsheets/> (검색일 2022.5.10.)

IPU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Data on age: By country.'

<https://data.ipu.org/age-brackets/> (검색일 2022.5.18.)

〈국제기구별 청년의 연령범위〉

국제기구	연령범위(세)
국제연합(UN), 유네스코(UNESCO), 국제노동기구(ILO)	15~24
유엔 인간정주계획 청년기금(UN Habitat-Youth Fund)	15~32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Adolescent: 10~19 Young People: 10~24 Youth: 15~24세
유니세프(UNICEF), The 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	~18
아프리카 청년헌장(The African Youth Charter)	15~35
유엔개발계획 세계 청년 전략 2014-2017	15~24(핵심적 초점 연령) 15~30(유연한 확장 연령)

출처: UN. 'Definition of Youth.'

<https://www.un.org/esa/socdev/documents/youth/fact-sheets/youth-definition.pdf> (검색일 2022.5.10.)

윤혜영·정태일. 2020.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검토: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1). p.7~30.

〈표 5-13〉 OECD국가의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국가명	기탁금액	반환기준	근거규정	비고
한 국	(지역구국회의원) 1,500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 5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 사망,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시 반액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70%만 납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는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이면 전액,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반액 반환됨.
영 국	£500(하원) (한화 약 913,000원)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9호 부칙 4. 제53호	-
일 본	¥300만 (중의원·참의원선거구) (한화 약 3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원) 유효투표총수의 10분의 1 이상 득표 시 • 참의원) 해당 선거구 내의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8분의 1 	공직선거법 제92,93조	중의원·참의원 비례대표선거: 1명당 ¥600만
호 주	A\$2,000 (한화 약 1,800,000원)	제1순위 지지 총투표수의 4% 이상 득표 시	연방선거법 제170,173조	-
체 코	20,000CZK(상원의원) (한화 약 1,086,000원)	유효투표총수의 6%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61조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과 거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귀속됨.
	19,000CZK(하원의원) (한화 약 1,031,700원)	기탁금 반환 안됨.	선거법 제31조	-
에스토니아	선거가 실시되는 해 월 최저임금액 2018년 의회선거 €500 (한화 약 660,000원)	당선인이 있거나 기준수의 1/2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의회선거법 제30조제5항, 제62,77조	기준수(simple quota)는 유효투표총수/의석수를 의미
그리스	€150 2019년 €146.74 (한화 약 190,000원)	기탁금 반환 안됨.	선거법 제34조제6항	국고로 귀속되며 내무부장관과 예산상황에 따라 금액변동 가능
아일랜드	€500 (한화 약 660,000원)	선거구 할당 1/4 (25%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47,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소속후보자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명의 추천 성명서를 제출하거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함. • 후보자 사퇴·사망, 후보자등록거부, 당선의 경우에도 반환 됨.

국가명	기탁금액	반환기준	선거규정	비고
라트비아	€1,400 (한화 약 1,870,000원)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12조	유효투표총수 2% 이하 득표 시 국고에 귀속
리투아니아	(지역구)월평균임금 2020년 의회선거 €900 (한화 약 1,200,000원) (비례대표)월평균임금×10배 2020년 의회선거 €9,000 (한화 약 12,000,000원) ※ 지난선거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2배의 기탁금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8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최근의 국가경제 월평균임금 기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선거자금관련 법률을 크게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고로 귀속
네덜란드	€11,250 (한화 약 1,530,000원)	정당이 기준수의 75%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H12.P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정당이 아닌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지난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만 납부 기준수(electoral quota)는 유효투표총수/의석수
뉴질랜드	NZ\$300 (한화 약 240,000원)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144,146F조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탁금 납부의무 없음.
슬로바키아	€17,000 (한화 약 22,720,000원)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50조	유효투표총수 2% 미만 득표 시 국고에 귀속
튀르키예	재무부 산하 고위직 공무원 월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2018년 의회선거 13,916TRY (한화 약 1,010,000원)	당선 시	의회선거법 제21,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 후보자만 납부. 정당소속후보자는 기탁금 납부의무 없음.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 후보등록 전에 사망 또는 신청취소, 등록이 거부된 자, 법적후견인이 있는 자는 신청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음.

※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기탁금 납부제도 없음.

※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투표용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모든 정당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435유로를 납부해야 함(의회 선거법 제43조제4항).

〈표 6-1〉 OECD국가의 선거운동기간

국가명	선거운동기간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가능 -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 -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선거일 제외) - 위의 예외 규정을 제외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59,254조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해산일부터 17일 이내에 실시되는 선거일까지므로 대개 선거기간은 3~4주 ※ 사전선거운동제한은 없음.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 개념이 없음. 	-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전까지 대선은 12일 간, 총선은 20일간 진행됨. - 이 기간동안 선거용 포스터 게시장이 설치되며, 선거운동위원회가 설치(선거법 제166조) - 선거일 2주전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선거일 전일 자정에 종료함. 2차 투표의 선거운동기간은 1차 선거일 익일부터 시작하고 선거일 전일 자정에 종료함.(선거법시행령 제26조) ※ 다만, 전자통신 이용 선거운동 메시지 배포는 선거일 전일 오전 0시부터 제한됨(선거법 제49조). 	선거법 제164조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 기간 등 법적 규정이 없으며, 선거운동이 자유로움. • 일반적으로 각 정당은 대개 선거일 약 3개월 전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선거 체제에 들어감 - 실제로 선거운동 개시시기, 선거운동총비용액 등 정당간의 협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은 후보자 신고가 있는 날부터 선거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음. - 참의원의원선거: 17일간 - 중의원의원선거: 12일간 ※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도 위 기간과 같음. 	공직선거법 제129조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소집일 후 38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5일 동안 	선거법 제51,53조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국가명	선거운동기간	근거규정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기간(election period)을 선거소집령의 발행일로부터 선거일 또는 선거소집령이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까지로 함. • 선거기간을 고려하면 최소선거운동기간은 36일이며, 최대 50일까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 개념 및 기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선거법 제2,57조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4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비용제한법 제4조
체 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가 소집된 날부터 선거 최종 결과 발표 시까지 	선거법 제16조제3항
칠 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를 통한 선거운동, 포스터·현수막·유인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 언론 및 라디오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법 제31,32,35조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통상적으로 선거를 공표함과 동시에 시작되며 선거일 당일까지 선거운동가능 (투표소 내부 제외) 	-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소집령이 발령된 날 또는 의원 임기종료 15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선거법 제31조제1,4항, 제48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5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절차법 제139조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공식적 선거운동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선거일까지 가능 	-
아일랜드 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해산일(임기만료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14시까지 • 선거벽보는 선거일 30일 전 또는 선거 공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 제19조제7항제b호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법 제2조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공표는 의회 임기 만료일로부터 70일 이내로 내각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표 • 선거 공표일로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 전일부터 대부분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서는 모든 선거운동 금지(선거일에도 게시판이나 신문 게시물은 허용) 	헌법 제61조 하원선거법 제11조 선거선전법 제9조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가능 • 의회, 지방의회 해산 또는 주민소환, 재선거 시 해당 공표일로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함. 	선거운동법 제1조제4항

국가명	선거운동기간	근거규정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등록발표일로부터 선거운동금지기간 전까지 - 선거일 투표시작 7시간 전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모든 선거운동 금지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1차 투표 선거운동금지기간 이후부터 재투표 선거운동금지시간 이전까지 	선거법 제64조제3항
룩셈부르크 ¹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없음. 정당들이 선거전에 모여서 선거운동 시작시기를 합의함. - 일반적으로 선거일 5주 전부터 시작 	-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상하원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해의 선거운동기간은 90일 하원의원 선거만 실시되는 해의 선거운동기간은 60일 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연방선거법 제251조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없음. ※ 후보자 등록 44일 이후에 선거가 실시됨. 	선거법 제11조제1항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가능 다만 TV나 라디오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소집일(writ day)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 가능 - 「선거법」 제3B조의 규제기간(regulated period)과 동일하며, 이 기간은 선거운동지출비용 산정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됨. 	방송법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없음. 	-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공표일로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선거법 제104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선거법 제53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공표일로부터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선거운동법 제2조제2항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선거운동법 제2조제1항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 10일 전 오전부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선거기본법 제49조

출처: OSCE 국가별 의회선거보고서 중 'ELECTION CAMPAIGN' 참조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8.10.)

14) Citizens Information. 'General elections.'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national_elections/the_general_election.html#1312d8 (검색일 2022.8.16.)

15) elections.public.lu. 'Questions and answers - Legislative elections.'

<https://elections.public.lu/en/support/faq/faq-legislatives.html> (검색일 2022.8.17.)

〈표 6-2〉 OECD국가의 무료 방송시간 배정방법

국가명	배정방법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할 수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해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에서 후보자의 경력을 알리기 위한 방송을 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72,73조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협회(The Broadcaster's Liaison Group)에서 각 정당에 배정 	1983 국민대표법 제93조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시청각최고위원회(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가 각 정당에 배정 	선거법 제167-1조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방송관련 비용을 보전 받음. 	방송국가협정 제42조제2항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참여한 정당·무소속후보자는 정견방송과 경력방송을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150,151조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참여한 정당·연정·연합 및 선거인단체의 최근 선거의 총 득표수에 따라 방송시간 배정 	선거법 제61,64,65,67조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 	라디오·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당의 하원의석수와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정 - 각 정당의 출마 후보자 수에 따라 추가 방송시간 배정 	선거법 제338조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공영방송국(ABC)이 방송시간 배정 - 두 개의 주요 정당에게는 동일 시간 배정 - 소수당은 득표율에 따라 배정 	공영방송법 제79A조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개의 언어권별 규정에서 공영방송이 무료방송시간을 제공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음. - 공영방송사는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방송시간을 배정 	선거비용제한법 제4조제3항
칠 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텔레비전위원회(National Television Council)가 이전 선거 득표수를 기준으로 배정함. - 이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가장 적은 득표수를 가진 정당과 동일한 시간을 배정 	선거법 제32조
체 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14시간) 배정 ※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방송가능 	선거법 제16조제8항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선거기간 동안 텔레비전에서 정치적인 내용의 광고는 금지 	라디오·텔레비전 운영법 제76조제4항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사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함. 	정당법 제10조

국가명	배정방법	근거규정
그리스	• Inter-party Committee of Elections와 National Council for Radio and Television의 의견을 받아 내무부, 행정지방분권부, 언론대중매체부의 장관이 공동으로 비례평등의 원칙에 따라 방송시간을 배정하여 관보에 게재	의회선거법 제48조 정당자금지원법 제10조제1항
헝가리	•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	선거절차법 제147조제1항
아이슬란드	• 모든 후보와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 - 전국단일선거구에 등록하지 않은 후보자는 등록된 선거구 수에 비해 방송 시간 배정	공익을 위한 국영방송, 대중매체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아일랜드	• 방송사는 정당에 불공정한 방송시간을 할당할 수 없음. - 2021년 선거 시 공영방송사(RTE)는 의석이 있는 정당과 7명 이상의 후보를 등록한 신규정당에 방송시간을 제공하기로 결정 - TV토론 참여기준은 마지막 선거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 ※ 방송매체의 정치광고는 선거기간에만 허용됨.	방송법 제39조제2항 BAI Rule 27 제10조 ¹⁶⁾
이스라엘	• 모든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라디오 15분, TV 7분) - 다만,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추가 배정(의석 당 라디오 추가 4분, TV 추가 2분)	선거운동법 제15,15a조
이탈리아	• 모든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	선거미디어법 제1조 통합방송법 제6조제2항
라트비아	• 모든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공영방송사(Latvijas Televīzija and Latvijas Radio), 40분] • 각 후보자들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5분간 4회)	선거운동법 제7조
리투아니아	• 공영 방송사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과 요금으로 정치광고를 제공해야 함. • 선거위원회는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해 특별 선거운동 전문방송을 무료제공 - 비례대표후보자는 전국 방송 프로그램, 지역구 대표후보자는 지역 방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수는 선거위원회가 결정	선거법 제96.99조
룩셈부르크	• 규정 없음. ※ 선거 전 정당과 언론사 간의 합의를 통해 무료방송 시간을 배정	-
멕시코	• 방송시간의 30%는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배정 • 70%는 이전 선거 결과(득표율)를 기준으로 배정	선거법 제167조
네덜란드	• 지난 총선에서 1석 이상 획득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 -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추가 배정	미디어법 제6조제1,2항

16) 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Rule 27 Guidelines.'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Final_English.pdf
 df (검색일 2022.8.16.)

국가명	배정방법	근거규정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방송이나 인쇄물이 정당에 배정되지는 않으나 유료방송비용을 선거위원회가 할당한 선거운동지원금으로 지불할 수는 있음. 	방송법 제70,79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방송사들 자체 규정을 통해 배정). ※ 방송에서의 유료정치광고 금지 	방송법 제3-1조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방송 - 절반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에 배정하며, 선거법에 규정된 전국방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 • 지역방송 - 하나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에 배정하며, 선거법에 규정된 지역방송시간을 등록 후보자명부 수에 비례해 배정 	선거법 제252,253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방송 - 총 선거구 중 25% 이상의 선거구에 총 후보자 수 25% 이상의 후보자 수를 등록한 정당에 비례방식으로 배정 • 지역방송 -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한 정당 간에 균등하게 배정 	의회선거법 제63조제1항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방송을 통한 모든 선거광고는 유료임. 유료방송 할당 기준과 방송사의 최대 송출시간 제한 규정은 선거법에 있음. 	선거운동법 제10,12조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이 있는 정당에 동일하게 방송시간 배정 • 총 방송시간의 1/3은 의석이 없는 정당에게 동등하게 배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법 제12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게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7일 전부터 전일 18시까지 방송가능, 첫날과 마지막 날 각 정당에 10분씩 배정 • 정당 규모에 따라 추가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10분 추가, 집권당 20분 또는 15분 추가 	선거기본법 제52조

출처: OSCE 국가별 의회선거보고서 중 'Media' 참조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8.10.)

〈표 6-3〉 OECD국가의 선거운동방법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고공약서,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공직선거법 제7장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전단, 호별방문, 선거인사문 송부, 스티커, 신문광고 등 선거운동방법에 제한 없음. • 정당에 의한 정책 위주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 신문·잡지 등은 자유롭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음. 	1983년 국민대표법 제91조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가정배달 우편물, 광고전단, 안내 팸플릿, 스티커, 정당기관지, 신문광고, 방송광고, 전화 및 PC이용선전, 호별방문, 좌담·연설회, 광고계시판 등 선거운동방법에 제한 없음. 	-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 신문광고, 벽보첩부, 선전물, 공개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전벽보, 집회고지벽보, 회람장, 투표용지송부, 방송연설(TV, 라디오), 선거집회 전단 등 • 정당 및 정치단체는 라디오·TV 등 공공방송을 통해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가능 • 법에 규정된 벽보판에는 개인용 포스터 게시가 가능하며, 벽보·전단 홍보물은 인쇄자의 주소·이름을 기재하여 배부할 수 있음. 	선거법 제51조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엽서, 선거운동용 전단(2종 이내), 포스터, 문서·도화의 게시, 신문광고(5회 이내), 정견방송, 경력방송, 개인연설회, 가두연설, 선거공보, 공개장소방문, 전화 등의 선거운동방법이 가능함. 	공직선거법 제13장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집회, 현수막, 벽보설치, 선거비용의 20% 내에서 민간소유의 정기간행인쇄물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을 위해 공영방송매체 무료 이용이 가능함. 	선거법 제54,58,64조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 선거벽보, 선전물, 호별방문, 대중집회, 라디오·TV토론, 인터넷,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선거운동 가능 	-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전단, 가두배포물, 라디오·TV방송, 선거집회, 간판, 현수막 등 선거운동방법 제한 없음(제81조는 아파트 호별방문 또는 다세대주거단지 공동구역에서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선거법 제81조, 제325조의1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광고, 전단, 팸플릿 및 선거표지(신문광고에 의한 고지와는 성격이 다름), 비디오 영상물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매체의 변화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 보이스콜(bulk voice call), robocall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토론, 인쇄매체광고, 간판 및 선거벽보, 가두 배포물, 호별 방문,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이 넓게 허용 	-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TV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적 논고, 공공방송에서의 토론, 인쇄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선전, 선거권자들과의 만남, 호별방문을 통한 유세활동 등 	-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규정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광고, 라디오, TV, 사진, 시청각 미디어, 유인물, 선거벽보, 현수막,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가능 • 공원, 공공장소에서 선거운동 가능 • 공공장소에 2m²를 초과하는 대형 부착물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 • 영화관 등에서의 선거운동, 항공기를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 대형 홍보물(6m² 이하)의 게시는 사유지에서 소유자의 동의하에 가능함. - 각 정당 및 후보자는 각 지역에서 최대 5개의 주요 장소를 결정해 게시할 수 있음. 	선거법 제31,32,35,36조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나 대형 광고판을 사용한 선거운동 또는 다른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메시지의 선전인 경우 의뢰인 및 제작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함. • 정당, 연합은 선거운동 시 이름, 정당약칭을 표시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성, 이름을 표시 •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벽보를 게시할 장소를 무료로 제공함. • 도시 지역에서는 벽보, 게시판을 통한 캠페인이, 작은 지역에서는 호별방문, 개별유세 등이 선호됨. 소셜네트워크와 유료광고의 활용도 높음. • 선거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제3자(자연인 또는 법인)는 등록을 통해 가능 	선거법 제16조제4,6항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을 통한 정치광고는 선거기간 동안 금지됨. • 신문은 가능하며, 온라인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선거권자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강조됨. • 선거홍보물 게시에 관한 요건을 제외하고 규제가 많지 않음. 	선거법 제50조, 라디오·텔레비전 운영법 제76조제4항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 신문광고, 선전물 등 •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없음 	정당법 제12' 조제9항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무료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한 홍보, 옥외광고, 자체 발행한 선거홍보물, 기타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공공장소에서 연설, 토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선거자금법 제6조제3항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 TV·라디오 광고, TV·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출연, 소셜미디어, 배너, 포스터 및 기타 판촉물 및 홍보자료 게시, 선거공보 배포,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연설 	의회선거법 제44,45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벽보, 스티커 등 인쇄물 첨부, 거리유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직접 홍보, TV나 극장에서의 선거광고,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 선거집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선거절차법 제140~149조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거리를 다니며 선거권자를 만나는 등의 유세활동과 호별방문, 방송, 인쇄매체 및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별방문, 신문 및 온라인 광고, 벽보, TV·라디오 토론 등의 다양한 선거운동방법 가능 	-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벽보, 전단, 우편, 신문광고, 옥외광고물, 집회, 라디오·TV 등의 수단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법에서 정한 규칙과 기한을 따라야 함. •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14일 전부터, 우편방식을 통한 홍보는 42일 전부터 가능 	선거운동법 제2a~c,5,7,10,12,15,15a,16a~d조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가 주요 선거운동방법으로 활용되고, 호별방문·선거권자와의 소규모 미팅 등을 통한 선거운동, 게시판이나 벽보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선전법 제1,3조 상·하원의원 선거운동법 제2조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규정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라디오, 온라인 매스미디어, 인터넷, 공공장소, 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법 제2~6장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과 선거법, 도덕성, 공정성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양한 형태와 방식(비디오, 오디오, 인쇄물, 공공장소·건물·차량 등을 이용한 옥외광고 이용)으로 선거운동 가능 공영 방송사는 동일한 조건과 요금으로 정치광고를 제공해야 하며 특별 선거운동 전문방송을 무료제공 선거권자와의 개별 만남, 공공장소의 선거운동천막설치, 토론참여, 온라인 광고 등의 방법을 활용 	선거법 제95~99조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회, 벽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선거운동 등 전통적인 방법도 사용되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주로 활용 정당과 방송사는 선거전에 TV·라디오 방송시간과 토론의 형식, 횟수, 시간대 등을 합의함. 	-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장소 집회, 가두행진, 대중연설, 전단배포, 사진자료, 녹화물, 프로젝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라디오·텔레비전 등의 미디어와 인쇄물을 통한 광고 	연방선거법 제242,243조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TV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호별방문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등 	-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법상 선거운동(election advertisement) 선거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수단으로 정의되어 있음. 신문, 벽보, 게시판, 인쇄물, 옥외광고, TV, 라디오, 인터넷, 기타 전자 매체 등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광범위하게 허용 선거위원회에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선거법 제3A조, 제2041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선거운동 보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강조됨. 	-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벽보, 전단지, 집회, 가두행진, 연설, TV, 라디오, 후보자토론회,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법 제110,117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법은 자유로운 선거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형평성, 표현과 정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규정 방송, 선거벽보, 옥외·옥내 집회, 가두연설, TV토론, 소셜네트워크 등 정당에 무료로 할당된 방송시간, 공연장은 정당 간 교환해 사용할 수 있음. 	의회선거법 제53~67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 TV, 라디오, 후보자토론회, 선거벽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 	선거운동법 제10,12,13, 16조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라디오, 인터넷 게시물, 온라인 네트워크, 대중집회, 포스터, 전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법 제1조제5항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회, 벽보, 현수막, 깃발, 선거운동부스, 확성기 차량 등이 사용되며 시청각 이미지가 포함된 홍보물, 전단지, CD, DVD 등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음. 무료 방송시간이 할당되며 유료 광고도 허용됨. 	선거기본법 제49~66조

출처: OSCE 국가별 의회선거보고서 중 'ELECTION CAMPAIGN' 참조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8.10.)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표 7-1〉 OECD국가의 확성기 사용제한

국가명	제한 내용	관련규정
한 국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제102조제1항
영 국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소음법 등 ¹⁷⁾
독 일	주거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13시~15시	노스트라인 - 베스트팔렌 주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확성기 및 벽보광고 지침 2.2.2.1
일 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 야간 가두연설회 금지	공직선거법 제164조의6
캐나다	선거일에 금지	선거법 제165조
호 주	선거일에 금지	연방선거법 제340조
덴마크	선거법 상 제한 없음. ※ 다만, 법무부 장관은 도로나 광장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내용을 명시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음.	선거법 제107조
그리스	내무부, 시민안전부 장관은 협의를 통해 투표소, 정당사무소 및 차량 및 기타 장소에서의 확성기 운용시간 및 최대 음량을 규정하며, 시에스타(공중 휴식시간) 및 학교나 병원과 인접한 장소에서 사용 금지	의회선거법 제46,47조
아일랜드	투표소 50m 이내에서 선거 방송을 위한 공중연설장비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법 1992 제140조제2항제d호
이스라엘	합법적 집회, 회의 이외에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일 전일 19시부터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운동법 제4조 선거법 제129조

17) Law & Your Environment. 'What Type of Noise? - Loudspeaker noise.'
<http://www.environmentlaw.org.uk/rte.asp?id=70> (검색일 2022.9.14.)

국가명	제한 내용	관련규정
이탈리아	자동차의 확성기 사용은 선거선전 집회와 연설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집회일과 그 전날 9시부터 21시30분까지로 제한	선거규칙개정법 제7조
멕시코	선거운동은 환경보호 및 소음방지법령을 준수해야 함(소음 방출 허용 수준이 규정되어 있음).	선거법 제248조
네덜란드	확성기가 부착된 차량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운행 금지 평일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금지	일반지방규칙 제4:6조
뉴질랜드	선거일에 금지	선거법 제197조제1항c
튀르키예	정당의 요청에 따른 확성기 사용이 가능한 장소, 시간, 기타 사항들은 각 지역구 선거위원회가 결정 정당은 각 지역구 선거위원회 운영방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 확성기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선거기본법 제56조

※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출처: OSCE 국가별 의회선거보고서 중 'ELECTION CAMPAIGN' 참조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8.10.)

〈표 7-2〉 OECD국가의 선거일 선거운동

국가명	가능 여부	관련규정
한 국	불 가 ※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	공직선거법 제59조
영 국	선거운동 가능(주로 투표참여 위주)	-
미 국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금지 ※ 앨라배마 주는 9m이내에서 금지	주 법
프랑스	불 가(선거일 시청각 통신수단에 의한 선거운동 규제)	선거법 제49조
독 일	불 가(투표소 내부 및 입구에서 선거인에게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연방선거법 제32조제1항
일 본	불 가(투표소에서 300m 밖에 선거사무소는 설치 가능)	공직선거법 제129조
스페인	불 가(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만 가능)	선거법 제93조
스위스	규정 없음.	
스웨덴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기타활동을 금지	선거법 제8절 제3조
캐나다	선거일 확정장치 사용 금지, 투표소 내·외부 선전물 등 금지	선거법 제165,166조
호 주	선거일 확정장치 사용 금지, 선거일 투표소의 출입구 6m 이내의 공·사유지에서 투표를 위한 유세, 특정 후보자 지지행위 등 금지	연방선거법 제340조
오스트리아	선거일 투표소와 일정 반경 내에서는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홍보물의 부착이나 배부, 집회 등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금지	의회선거법 제58조
벨기에	선거운동 가능 (선거일 투표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선거법 제111조
체 코	선거 최종결과 발표 시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투표소가 위치한 건물 내부 또는 인근에서의 정당, 연합, 후보자 연관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16조제3,9항
칠 레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3일 전에 종료되어야 함)	선거법 제35조
덴마크	투표소 내부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50조
에스토니아	투표소 내부의 선거운동 금지	의회선거법 제5조제3항
핀란드	인쇄물의 배포나 게시, 연설 등 선거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투표소 주변, 투표소 내에서 금지	선거법 제72조
그리스	선거일 전일과 당일 모든 선거운동 금지	의회선거법 제48조
헝가리	선거일에 미디어를 통한 정치광고를 방송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 투표소 주변의 150m이내이거나,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모든 선거운동 금지	선거절차법 제143조, 제145조제2항, 제147조제4a항

국가명	가능 여부	관련규정
아이슬란드	선거운동 가능 투표소 주변에서 승인되지 않은 선거운동은 금지	선거법 제81조
아일랜드	불 가(선거일 전날 14시부터 선거 당일까지)	BAI Rule 27 제11조
이스라엘	불 가(선거일 전날 19시부터 선거 당일까지 집회, 행진, 확성기, 방송, TV를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129조
이탈리아	선거일 전일과 당일에는 집회, 벽보, 선전물, 현수막을 비롯한 직간접적 선거운동 금지 ※ 투표소 입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모든 선거운동 금지	선거선전법 제9조
라트비아	투표소 건물 내부 및 출입구 반경 50m 이내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당일 라디오, 방송, 인쇄물, 공공장소 이용,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의회선거법 제19조제1항 선거운동법 제32조제1,2항
리투아니아	불 가(선거일 투표 시작 7시간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모든 선거운동 금지) ※ 재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64조제3항
룩셈부르크	선거운동 가능 (공영방송사는 선거일 전일과 선거당일에 선거방송금지를 준수해야 함).	-
멕시코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3일전에 종결되어야 함.)	연방선거법 제251조제3항
네덜란드	투표소 내에서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금지	선거법 제36조
뉴질랜드	선거 당일 투표소 안이나 주변에서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의 접근 금지(시위 또는 행렬, 확성기·방송·영화 장비 등을 이용한 홍보 또는 성명서나 정당명, 슬로건, 로고 등의 첨부, 전시, 배포 금지)	선거법 제197조
노르웨이 ¹⁸⁾	투표소 내부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9-4조
폴란드	선거일의 24시간 전부터 투표가 마감 될 때까지 집회, 행렬, 연설, 전단지 배포, 후보자 지지를 선동하는 행위금지 투표소와 투표소 주변에서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	선거법 제107조
포르투갈	투표소 내부 및 외부 500미터 이내에서 모든 선거운동 금지(후보자명부의 상징, 약자, 기호 등의 게시를 포함)	의회선거법 제92조
슬로바키아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48시간 전에 종료되어야 함)	선거운동법 제2조제2항
슬로베니아	불 가(선거일 투표소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선거일 최소 24시간 전에 선거운동 종료	선거운동법 제5조 의회선거법 제65조
튀르키예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 18시에 종료되어야 함)	선거기본법 제49조

18) Valgdirektoratet. 'Valgagitasjon(Election campaigning).'

<https://www.valg.no/om-valg/valggiennomforing/lover-og-regler/valgagitasjon/> (검색일 2022.8.17.)

〈표 7-3〉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기간

구분	국가명
선거일 전일부터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차드, 콜롬비아, 프랑스, 기니비사우, 이라크, 라트비아, 리비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선거일 전 2일~3일부터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호주,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체코, 조지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선거일 전 4일~5일부터	알바니아,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러시아, 스페인, 타지키스탄
선거일 전 6일~7일부터	한국, 볼리비아, 키프로스, 피지, 몽골, 페루,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선거일 전 8일~9일부터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가봉
선거일 전 10일 이상부터	카보베르데,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탈리아, 레바논,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파나마, 파라과이, 싱가포르, 대만, 튀니지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What is the blackout period, if any, during which results of pre-election opinion polls may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ME062> (검색일 2022.3.31.)

〈표 7-4〉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변동 현황

국가명	1996년	2002년	2012년	2017년	2018년 이후
아르헨티나	0	1	15	2	8
아제르바이잔	-	-	0	1	1
볼리비아	2	2	-	30	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0	1	2	-
브라질	0	0	2	7	-
불가리아	1	7	0	1	-
캐나다	3	2	3	1	1
콜롬비아	7	1	7	7	1
코스타리카	-	2	7	3	3
키프로스	0	7	7	7	7
체코공화국	-	7	3	3	2
에콰도르	-	-	15	8	20
엘살바도르	-	-	1	15	15
프랑스	7	1	0	2	1
그리스	0	15	15	1	15
조지아	-	0	-	2	2
온두라스	-	0	45	30	30
인도	0	0	0	2	-
인도네시아	21	0	0	7	-
이스라엘	0	1	0	5	-
이탈리아	28	15	15	14	15
카자흐스탄	1	0	0	5	5
쿠웨이트	-	-	3	0	-
라트비아	0	0	0	1	-
룩셈부르크	30	30	-	5	5
북마케도니아	0	5	5	1	5
멕시코	7	7	3	4	3
네 팔	0	1	0	0	-

국가명	1996년	2002년	2012년	2017년	2018년 이후
노르웨이	0	0	1	1	-
니카라과	0	0	-	3	-
파키스탄	-	0	0	1	-
파나마	-	1	-	20	10
팔레스타인	-	-	0	1	-
페루	15	7	7	7	7
폴란드	12	1	1	1	1
포르투갈	7	1	1	1	-
루마니아	-	2	7	2	2
러시아	2	0	5	6	5
세르비아	-	-	2	1	-
싱가포르	-	-	1	14	-
스리랑카	-	-	7	0	-
슬로바키아	-	14	0	14	1(의회) 3(대통령)
슬로베니아	1	7	0	1	-
대만	0	0	10	10	10
트리니다드토바고	-	-	0	1	-
우크라이나	0	0	15	1	2
우루과이	15	7	2	4	2
베네수엘라	15	2	7	7	7

※ -: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해, 2018년 이후 자료는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의 국가별 업데이트를 참고하였음.

출처: Esomar. Wapor. 2017. 'Freedom to Conduct Opinion Polls.'

https://www.esomar.org/uploads/public/library/news/ESOMAR-WAPOR_Freedom-to-Conduct-Opinion-Polls.pdf (검색일 2022.3.31.)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What is the blackout period, if any, during which results of pre-election opinion polls may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ME062> (검색일 2022.3.31.)

〈표 7-5〉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출구조사 규제 현황

국가명	제한 여부	근거규정
한 국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영 국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1983년 국민대표법 제66A조
미 국	• 연방차원에서 출구조사에 관한 법적 규제 없으나, 주별로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이 있음.	-
프랑스	• 선거일 전일과 선거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및 보도 금지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52-2조
독 일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32조
일 본	• 출구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인기투표의 공표 금지조항에 따라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 공개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공직선거법 제138조의3
스페인	• 선거일 전 5일부터는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선거여론조사의 고시 또는 방송 금지 • 선거일 5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69조
스웨덴	•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하지 않음.	-
스위스	• 선거일 전 10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법적 규제는 아니나 언론인들 자체적인 규정) •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하지 않음.	투표 이전 보도되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 제5조
캐나다	•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328조
호 주	• 선거법상 규제는 없음. • 방송사는 선거일 전 수요일 정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운동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함.	방송법 schedule 2. part 2-3(2)
칠 레	• 선거일 15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37조
체 코	• 의회 선거일 3일 전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모든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16조제7항
핀란드	• 선거법상 규제는 없으나 대중매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함. -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그리스	• 선거일 15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해당 기간 동안 미디어, 정당, 후보자는 여론, 정당, 직위, 인물 또는 경제·사회 주제에 대해 진행된 모든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 및 선호도 공표 금지 • 오후 7시(투표마감)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회선거법 제49조제1,2,3항
헝가리	•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나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공표 금지	선거절차법 제150조
아일랜드	• 선거일 전일 오후 2시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투표마감 시까지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법 제27조 아일랜드 방송위원회(BAI) 지침 ¹⁹⁾

19) BAI(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 'Rule 27 of the 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opinion polls' p.8.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Final_English.pdf (검색일 2022.5.20.)

국가명	제한 여부	근거규정
이스라엘	• 선거전일부터 투표마감 시까지 신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해당기간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결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함.	선거운동법 제16조제B,H항
이탈리아	• 선거일 15일 전부터 선거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해당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도 공표 금지	선거미디어법 제8조
라트비아	• 선거일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운동법 제12조제4항
룩셈부르크	• 선거일 5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관련자료 배포나 논평 금지	정치여론조사에 관한 법 제3조
멕시코	• 선거일 3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연방선거법 제213조 선거규칙 제134조제1항
뉴질랜드	• 선거일 이전에 선거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여론조사 금지 • 투표 마감 시까지 출구조사 금지	선거법 제197조제1항d호
노르웨이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9-9조
폴란드	• 선거일 24시간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115조
포르투갈	• 선거일 전날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여론조사법 제10,11조
슬로바키아	• 선거일 48시간 이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운동법 제17조
슬로베니아	• 선거일 24시간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금지	선거운동법 제5조제2항
튀르키예	• 선거일 10일 전부터 여론조사 금지 - 선거일 18:00까지 라디오 및 방송사는 선거 관련 뉴스나 결과예측, 논평 금지 - 18:00부터 21:00까지 최고선거위원회에서 제공한 뉴스 및 발표 방송(라디오) 가능, 21:00부터 모든 방송 가능	선거기본법 제55B,80조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는 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관련 금지 규정이 없음.

※ 덴마크²⁰⁾, 이스라엘²¹⁾은 개표 집계 전에도 계속 발표 가능함.

※ 이외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국가: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케냐, 모로코,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인도, 필리핀²²⁾

20) Folketinget. 'The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in Denmark.' p.21.

https://www.thedanishparliament.dk/~media/pdf/publikationer/english/the-parliamentary-system-of-denmark_2011.ashx (검색일 2022.5.20.)

21) Haaretz 'Israel Election 2019: Netanyahu Ties With Gantz, but Has Clear Path to Form Next Government.'

<https://www.haaretz.com/israel-news/elections/netanyahu-elections-gantz-vote-updates-results-1.7105719> (검색일 2022.5.20.)

22) ARTICLE 19 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2003. 'Comparative Study of Laws and Regulations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https://www.article19.org/data/files/pdfs/publications/opinion-polls-paper.pdf> (검색일 2022.5.20.)

〈표 7-6〉 OECD국가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현황

국가명	구분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영국		의회 보고서, 정부 데스크포스	허위정보,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산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가짜 뉴스’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와 현존하는 미디어 규제들을 온라인 뉴스에 적용하는 방안, 허위정보 확산경로 연구를 위한 워크그룹 구성 등을 제안 • 정부는 ‘국가 및 기타 행위자에 의한 허위정보 유포 대응’을 위한 국가통신안전청을 설립 • 그러나 세부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냉전시대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19년 9월, 교육보건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허위정보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과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
미국		연방법률, 플랫폼사업자 증언 주 미디어정보 해독 관련법, 위협 평가, 소송	정치광고,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일반적인 오보,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딥페이크 비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0월, 하원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광고주가 누구인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TV 및 라디오에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하는 차원이었음. • 2017년 11월, 페이스북트위터구글 기업 대리인들은 미국 상원 법사 위원회에 출두하여 선거기간 중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증언함. • 2018년 9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최소 24개주에서 시행됐었던 또는 시행중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폰서 콘텐츠와 뉴스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스탠포드대학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함. • 2018년 중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정보 당국에 2018년 말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하라고 요청. 의원들은 외부세력이 딥페이크 비디오를 이용하여 잠재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 • 2019년 1월, 가짜 소셜미디어 프로필 생성으로 수익을 올린 기업이 뉴욕 주 법 위반 판결을 받음.
프랑스		법률	선거 허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1월 22일, 하원에서 ‘가짜 뉴스(fake news)’를 정의하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언론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 통과됨. ※ 가짜뉴스란?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정확한 혐의나 비방 또는 사실을 허위로 전달하는 보도(Inexact allegations or imputations, or news that falsely report facts, with the aim of changing the sincerity of a vote). •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2차례 부결됐던 바 있음. • 2018년 12월 20일,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이 프랑스 헌법위원회를 통과하여 23일부터 시행 • 법원의 상대적 판단에 따라 선거 전 허위정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 •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정부는 선거 3개월 전부터 소셜미디어상의 허위정보를 제거하거나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수 있으며, 스폰서 콘텐츠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음.

구분 국가명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누가 스폰서 콘텐츠 또는 캠페인 광고를 어떤 가격에 구매했는지 공개해야 하며, 이는 기존 TV 및 라디오에 대해 존재하는 기준을 소셜미디어에 적용하는 미국의 「정직한광고법(Honest Ads Legislation)」과 유사함. • 해당 법안은 미디어 감시기구인 프랑스 고등방송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에 '해의 국가의 영향력을 받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법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부여함. • 2019년, 트위터가 프랑스 법상 광고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을 위반하여 정부 후원의 선거캠페인이 금지됨.
독 일	법률	헤이트 스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을 제정 • NetzDG는 2백만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콘텐츠를 24시간 내로 삭제하도록 강제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의 벌금을 부과 • '타이타닉'이란 월간지가 일부 모욕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이용이 금지되었으며 NetzDG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연방법무장관도 트위터 이용이 금지되는 등 NetzDG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과도할 정도로 많은 콘텐츠들을 차단한다는 비판이 있음. • 2018년 3월,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잘못 삭제된 콘텐츠를 복구하거나 소셜미디어플랫폼 사업자가 NetzDG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구를 두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고려되고 있음. • 2021년 5월, 법을 개정해 소셜미디어 공급자의 범죄 콘텐츠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개선하고 민원인과 분쟁 해결도 간소화했으며 불법콘텐츠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도 간결해짐.²³⁾
스페인	위원회 요청안, 공동사이버보안, 정부 테스크포스	허위정보, 선거 허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3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2018년 11월, 잘못된 정보가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공동 사이버보안연대를 형성하기로 협의함. • 2019년 4월, 총선 전 약 100명의 공직자들로 구성된 팀을 형성하여 허위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게시물을 검색함(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불분명).
스웨덴	정부 당국, 유인물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국가처럼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기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기초임. • 2018년 1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스테판 뢰프벤 스웨덴 총리는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확산과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확대 시도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 정확한 출범 일자는 미정 • 시민안전청과 의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해당 기구는 방해환경 하에서도 사실기반 정보전달 보장을 위해 허위정보 판별, 분석, 대응 업무에 주력할 것임. • 2018년 시민안전청은 긴급준비태세 유인물 내용에 허위정보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 배포

23) Deutscher Bundestag. 'Bundestag stimmt Änderung des Netz - werk - durch - setzungs - gesetzes zu.'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1/kw18-de-netzwerkdurchsetzungsgesetz-836854> (검색일 2022.4.11.)

구분 국가명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캐나다	정부 테스크포스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	미디어 리터러시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월, 연방정부는 하반기 연방총선을 앞두고 허위정보 유포 감시 및 대응을 위해 외무부 신속대응프로토콜과 더불어 5명의 비정치인이 지휘하는 '선거사안 대응 프로토콜' 그룹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결정 연방정부는 IT기업의 투명한 허위정보 방지 및 광고정책을 다루는 법률 C-76을 근거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에게 선거철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 연방정부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한 자국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7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 2019년 5월, '캐나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온라인 위협과 허위정보로부터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디지털 현장을 발표했고 16개 정부기관과 8개 기관이 현장에 서명함. 트뤼도 총리는 가짜뉴스와 헤이트스피치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제재가 있을 것을 암시함(2020년 디지털 현장 시행법 법안을 발의함).
호 주	정부 테스크포스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와 미디어 리터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7월, 외부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 당국의 지속적인 경고 끝에 국내 선거에 사이버공격 탐지를 위해 내무부가 지휘하는 4개 부처 합동 테스크포스를 신설 2019년 2월, Twitter와 Facebook에 불법광고 고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함 (호주의 정치 광고는 광고주와 자금출처를 공개해야함). 2019년 4월, 연방선거에 대비하여 유권자들이 정보출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장하는 "Stop and Consider" 캠페인을 시작함.
벨기에	정부 전문가 그룹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	허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6월, 허위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연구할 전문가 그룹을 신설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안전을 누구나 평가할 수 있도록 www.stopfakenews.be를 개설
칠레	법안	허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2월, 상원에서 '가짜뉴스 유포, 홍보 또는 자금지원'과 관련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안을 발의함.
덴마크	테스크포스, 미디어 리터러시, 정부 조치계획	허위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과 허위정보 대응에 있어 공조 2017년, 정부는 오보 및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대응을 위해 외무부 산하에 테스크포스를 신설 정부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스웨덴에서 제작한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함양을 위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 중 2019 총선에 대한 외부개입 방지를 위한 정책에 경찰, 군 정보당국 역량강화를 비롯해 각 언론사 및 정당과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
아일랜드	법률	미디어봇과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미디어 봇을 사용하여 다수의 허위계정을 생성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범죄로 만드는 법안을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이상의 허위 계정을 생성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유로의 벌금 - 미국의 「정직한광고법(Honest Ads Legislation)」을 차용하여 허위정보에 대응하고자 함.
이스라엘	대법원 판결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3월, 4월 총선을 앞두고 무기명 인터넷광고 차단 플랫폼들에 국내의 무기명 광고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선전, 메시지 또는 설문조사를 위해 사용된 허위계정을 식별할 것을 요구함.

국가명	구분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이탈리아		온라인 신고포털, 보고서 발표	허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3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 • 11월 말, AGCOM(통신산업규제기관)은 허위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멕시코		정부 팩트체크 사이트	허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6월 대통령 소속 직원이 운영하는 Notimex는 “Verificado Notimex.”라는 팩트 체크 사이트를 개설함. (Notimex는 내무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기 2020년부터 파업중) - 소셜미디어 상의 가짜 뉴스를 공개하고 기존 미디어 게시물 중 의심스러운 콘텐츠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할 것이라고 주장
네덜란드		대중인식 캠페인	미디어 리터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2월,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는 허위정보가 많이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대중인식 캠페인을 시작함.
튀르키예		연구조사	허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상황을 조작하는 가짜뉴스 조사에 착수함. • 자본시장위원회 은행, 회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잘못된 보도 및 낱조된 뉴스와 진술을 게시하는 개인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함. • 내무부는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346개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해 조사를 착수

출처: Poynter. ‘A guide to anti-misinformation actions around the world.’
<https://www.poynter.org/ifcn/anti-misinformation-actions> (검색일 2022.3.31.)

〈표 7-7〉 OECD국가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관련 규정

국가명	구분	금지 내용	근거규정
한 국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의 사실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제110,250조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비방 금지	공직선거법 제110,251조
영 국		후보자에 관한 허위진술 금지	1983년 국민대표법 제106조
미 국		사실관계의 위조 및 거짓 진술 금지	연방선거운동법 제1001조
프랑스		새로운 위조물, 비방 또는 그 외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선거인	선거법 제97조
독 일		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 금지	형법 제188조
일 본		허위사실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제235조
스페인		후보자 비방금지	선거법 제148조
스위스		후보자 비방 금지, 허위사실 공표 금지	형법 제280조
캐나다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91,92조
호 주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금지	연방선거법 제329조
오스트리아		허위사실 공표 금지	형법 제264조
체 코		정당, 연합 또는 개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16조제5항
덴마크		선거법상 관련 규정 없음. ※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인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66b,267,268조
그리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 유포 금지	의회선거법 제112조제2항
아일랜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부패방지법 제11조
리투아니아		허위사실 공표 금지 - 언론매체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공개한 경우 선거위원회는 반대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줘야 함.	선거법 제100조
멕시코		정당, 연합, 후보자는 타인을 중상하는 표현을 삼가야 함.	선거법 제247조제2항
뉴질랜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118조
노르웨이		2020년 미디어책임법을 도입하여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	미디어책임법 제8조
폴란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111조

※ 스웨덴,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는 선거관련법에서 후보자 비방 금지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음.

〈표 7-8〉 OECD국가의 선거운동 규제방법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규제주의 • 선거운동기간, 주체 및 방법 제한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야간연설등의 제한, 행렬등의 금지, 호별방문제한, 서명·날인운동 금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 제7장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주의 원칙 하에 비용규제, 정당중심의 선거운동 •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의 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전이라도 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지지를 위한 지출은 엄격히 제한함. • 유료 정치방송은 금지되며, 정치적 증립을 유지해야 함. 	1983년 국민대표법 제92,93,110조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선거비용과 수입의 제한으로 선거운동 전체를 규제함. • 광고·문서·도화 배포 등에 책임자의 명의 및 자금출처 공개가 있어야 함. • 선거운동에 대해 연방법에서는 선거운동의 기부에 대한 제한, 선거에 관한 자금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각 주가 정하는 주 법에 의해 규제됨(자유주의). 	연방선거운동법 제30120조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은 법률상 규제는 없으나 정당 간 협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자유주의) • 투표시간 중 투표소 내부와 입구에서 음향, 문서, 화보 등을 통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행위 금지 	연방선거법 제32조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한 규제주의, 비용규제 • 선거실시 예정인 달의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신문, TV 등을 통한 상업광고 금지 • 선거실시 예정인 달의 3개월 전부터는 공식계시판이외의 장소에는 개인용포스터 게시를 금지하며, 법에 규정된 벽보·전단 홍보물외의 선거선전 출판물은 금지 	선거법 제52-1조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개별적 규제주의 • 호별방문금지, 서명운동 금지, 인기투표 공표금지, 연호행위금지, 자동차위에서 선거운동금지, 이사장 금지, 타연설회 금지, 야간가두연설 금지(오후 8시까지) 등 •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 등의 사용제한, 신문·잡자의 불법이용제한, 선거운동방송의 제한 등 	공직선거법 제3장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사회적 다원성의 보장 •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 인쇄물, 시설물 및 선거홍보광고 시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함. 	선거법 제60조 내지 제67조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정부의 송신망을 사용한 선거광고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제한, 선거광고의 방해 및 침해 금지, 선거결과 조기 전송금지, 캐나다 국외에서 방송금지, 외국인의 선거관련 금지, 외국인 기부금 사용 금지, 선거집회 방해 금지 등 	선거법 제330,480조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에서 무질서한 행위 금지 	연방선거법 제347조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공공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당국에 통보 • 「금지법(Verbotsgesetz: Prohibition act)」을 위반하는 공개 성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위를 할 수 없음. 	집회법 제2조제1항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선거비용의 제한과 통제 법률로 규제 됨. • 상업용 광고판 및 포스터 사용 금지 • 4m²를 초과하는 비상업용 포스터 사용금지 • 유료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라디오, TV 및 극장의 상업광고 이용 등) • 선물(인쇄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 포함)제공 금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비용제한법 제5조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선거광고 시간제한, 신문광고 및 라디오는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하나 선거별 광고비용 책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함. • 극장 등 시청각 선전물 방영금지장소 제한 • 선전물 크기 제한 •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여론조사결과 발표 가능기간 제한 	선거법 제31,32,35,36,37조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광고 미디어 활용 시 광고주체 표시의무, 기타 광고물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표시 • 타 정당 또는 후보자 비방 금지 • 여론조사결과 사용에 대한 제한 	선거법 제16조제4~8항 제16g조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 내부 광고물 게시 금지 이외에 규제가 많지 않음. • 선거기간 동안 텔레비전에서 정치적인 내용의 광고는 금지 • 법무부장관은 공공도로나 광장에서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음. 	선거법 제107조 라디오·텔레비전 운영법 제76조제4항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 없음. 	의회선거법 제5조
핀란드 ²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표현의 자유법, 집회법, 기금모금법, 도로교통법 등과 같은 일반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적영역에서의 선거운동은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집회시에는 5일 이전에 경찰에 알려야 하고, 도로광고는 도로안전법상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 방송기관은 모든 정당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 	집회법 제13,14조 도로교통법 제52조 정당법 제10조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은 옥외광고, 선전물 크기, 부착 장소, 집회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함. • TV 및 라디오 방송국의 중립의무, 배정된 무료방송을 제외한 추가적인 TV·라디오 광고 금지 • 후보자 개인적인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 유입물 배포, 미디어 홍보 금지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위치와 관계없이 3개소 이상 설치 불가 • 후보자의 TV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및 토론 횟수 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의회선거법 제44~48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유 및 건물, 관공서, 문화유산, 자연보호 지정 구역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자 하는 자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후보자 벽보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아야 함. • 집회법을 준수해야 하며 관공서에서 공공집회 금지 • 미디어를 통한 선거광고는 등록된 언론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감사원에 통보해야 함. 	선거절차법 제144,145,148조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 주변에서의 승인되지 않은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 없음. • 선거운동과 관련된 홍보물 출판 시 광고주 또는 책임자를 명시해야함. 	선거법 제81조 정치단체활동법 제2-d조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또는 후보자 홍보를 목적으로 한 공고, 벽보, 포스터, 각종 문서 등은 출력·배포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함. • 포스터와 서면광고의 경우 각각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과 선거법에 따른 지출비용 제한 세부규정에 따라야 함. • 선거벽보는 정해진 기한 동안 게시 • 투표 시작 30분 전부터 종료 30분 후까지 투표소 50m 이내 집회, 홍보물 게시 및 배포, 공개연설을 위한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법(1992) 제140조, 제147조제2항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 제19조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및 군인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정부 또는 공기업 소유 시설물, 정부나 공기업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동산 또는 부동산 사용 금지 • 선거운동 시 공연, 음악, 영화상영, 오락프로그램을 수반하거나 음식 및 주류 제공 금지 • 홍보물 규격 제한, 홍보물 게시 장소 지정 • 타 정당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 벽보 및 기타 자료 훼손 금지 • 아동의 선거운동 참여제한, 확성기 사용제한, 우편 및 미디어를 사용하는 기한의 제한 등 광범위하고 자세한 규제 	선거운동법 제2a~c,3,5, 6,8,10,15A조 선거법 제116,126, 130조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장소 외 벽보 및 선전물 게시 금지 • 의회의 미디어 감독위원회가 라디오, TV를 이용한 선거운동 감독 • 인구별 옥외광고물 게시장소 제한 • 선거일 전일 및 선거일 벽보, 선전물 게시, 집회 금지, 라디오·방송이용 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선전법 제1,2,3,9조 선거선전 등의 개정 제7조 상·하원의원 선거운동법 제1조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의 사용, 인터넷, 방송미디어, 인쇄매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가격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과, 선거운동비용금액에 대한 제한 • 출처가 공개되지 않은 선거운동은 금지 • 옥외광고물은 광고물게시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특정 장소에는 게시할 수 없음. 	선거운동법 제1,3장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 및 국가기관 관련 장소에서의 옥외 선거운동 금지 • 고속도로 및 도로주변에서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등 교통이용에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 조각품이나 기념비적 건축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투표소가 있는 건물 주변 50m 이내에서 홍보물 게시 금지 •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서 선거운동 금지 • 누구든지 주 또는 시 기관 및 언론매체에서 자신의 공식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계하는 행위 금지 • 선거위원회가 방송시간을 배정하고 토론을 위한 규칙과 방송사를 선택 	선거법 제98,99조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인 제한·금지규정 없음. • 선거전 정당들이 만나 선거기간, 미디어 유료광고의 제한 등 선거운동 규칙을 결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함. 	-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결과 발표시까지 선거, 교육, 보건, 기타 시민안전 및 비상관리 당국의 정보제공 활동을 제외한 연방 및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활동 중지 • 모든 선거운동관련 인쇄물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함. • 선거홍보물 자택배송 금지, 부착 및 설치 가능 장소 제한, 철거기간 준수 	연방선거법 제209,250조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함. • 연단을 사용하는 행사 진행시 혹은 스피커가 부착된 차량 사용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도로 안전 규정 등에 위반이 없어야 함. 	일반지방법 제4:6조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선거광고는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 제3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료 광고를 지원하거나 광고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규정을 준수해야 함. •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 후보자, 제3자의 선거비용을 상세히 규제하고 있음(비용규제주의). 	선거법 제204D조 ~제204F조 제205F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과 사전선거기간 동안 투표소 내부의 선거운동 및 설문조사 금지하는 규정 외에 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규정은 없음. • 방송매체에서의 유료 정치광고는 금지 	선거법 제8-5,9-4조 방송법 제3-1조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군부대 및 경찰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벽보는 정부건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첩부할 수 없으며 문화유산, 환경보호, 도로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복권, 경품 및 주류제공)금지 	선거법 제108,108a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이나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공건물의 소유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사용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장은 3일 전까지 모든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들과 협의해 공정한 사용 날짜와 시간을 고지해야 함. • 벽보, 사진,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기 위한 특별공간이 설치되며, 국가기념물, 종교건물, 도로표지판, 건물 내부에 첩부는 제한됨. 	의회선거법 제65,66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제한 • 모든 선거운동은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벽보를 게시하는 장소와 조건을 설정 •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대한 제한 등 	선거운동법 제10,12,15,16,17조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24시간 전부터는 후보자,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및 결과 공표 금지 •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선거포스터는 지정된 위치에만 게시 가능하며, 다른 후보자의 포스터 위에 덧붙이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내, 종교단체 구내에서 선거운동집회 금지 ※ 해당 지역 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건물이 없을 경우 예외 	의회선거법 제65조 선거운동법 제4,5,8,10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 실내 집회장소 제한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벽보 등 인쇄물 사용방법 및 가능 품목 제한, 사용 장소·배포에 대한 제한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규정(총리, 장관 등 고위공무원 및 군인 등) 	선거기본법 제50~55A, 56,60~66조

출처: OSCE 국가별 의회선거보고서 중 'ELECTION CAMPAIGN' 참조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8.10.)

24) VAALITVAL. 'Election advertising.'
<https://vaalit.fi/vaalimainonta> (검색일 2022.8.11.)

〈표 8-1〉 각국의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제한

구분	국가명
정당의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국가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러시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국가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프랑스, 조지아,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대만,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영국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39. Are there limits on the amount a political party can spend?'

'41. Are there limits on the amount a candidate can spend?'

<https://www.idea.int/data-tools/data/political-finance-database> (검색일 2022.4.7.)

〈표 8-2〉 각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구분	국가명
정당이 정기적으로 회계보고하는 국가	<p>한국,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리, 몰타, 모리타니,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튀르키예,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p>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고하는 국가	<p>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가봉,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몰도바, 몽고,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스페인, 수단, 수리남,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우간다(의회선거),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잠비아</p>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고하는 국가	<p>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투발루, 우간다(대통령선거),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p>

구분	국가명
보고서 공개 국가	<p>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잠비아</p> <p>※ 바베이도스, 벨기에, 베냉, 보츠와나, 이스라엘, 말라위,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필리핀, 산마리노는 비정기적으로 공개</p>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47. Do political parties have to report regularly on their finances?’

‘48. Do political parties have to report on their election campaign finances?’

‘49. Do candidates have to report on their election campaign finances?’

‘51. Is information in reports from political parties and/or candidates to be made public?’

<https://www.idea.int/data-tools/data/political-finance-database> (검색일 2022.4.7.)

〈표 8-3〉 OECD국가의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국가명	비용제한액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 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 가산 •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수×90원 	공직선거법 제121조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county)선거구: £8,700+선거권자 1명당 6펜스 - 구(borough)선거구: £8,700+선거권자 1명당 9펜스 ※ 보궐선거시는 선거구당 £100,000 • 정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당 £30,000 • 정당은 선거의 전·중·후를 불문하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한 다음날부터 선거가 끝난 기간 동안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1983년 국민대표법 제76조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제한액 없음. • 정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주에서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해당 주의 투표연령인구×2센트 또는 20,000달러 중 많은 금액 - 2명 이상 선출하는 경우 후보자당 10,000달러(한화 1,300만 원정도) 	연방선거운동법 제30116조 (d)(3)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000+선거구민 1명당 €0.15를 가산 	선거법 제52-11조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 규제는 없으나 정당 간 협정에 의해 선거비용 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 • 선거별 선거운동비용의 상한액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액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규정 	-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내의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 선거구 내 의원정수)×(선거권자 수×¥15)]+¥1,910만 • 참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내의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 선거구 내 의원정수)×(선거권자 수×¥13/20)]+¥2,370만(의원수가 2명인 선거구 ¥13/ 4명이상인 선거구 20) 	공직선거법 제194,196조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수에 €0.37를 곱한 금액 	선거법 제131,175조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자 최초 15,000명까지: 1명당 C\$2.1735 - 이후 10,000명: 1명당 C\$1.092 - 나머지 선거권자: 1명당 C\$0.546 •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자 수에 C\$0.735를 곱한 금액 	선거법 제430조, 제477조 의49~52

국가명	비용제한액	근거규정
호 주	•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후보자: €15,000 • 정 당: 각 정당 €7,000,000 - 둘 이상의 정당이 동일한 후보자명부를 제출한다면 각 정당 제한액의 합산 총액	정당법 제4조제1항
벨기에	• 후보자 - 지난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와 추가후보자 1명 당 - 지난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1명 당 : €8,700+(€0.035×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의 지난 선거 선거권자 수) - 이 외 후보자: €5,000 • 정 당: €1,000,000 ※ 정당선거비용 중 25%는 후보자 선거비용으로 배분가능. 각 후보자 당 해당 금액의 10%까지 배분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 제2조제1,2항
칠 레	• 후보자 - 상원의원: 1,500UF+(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최초 20만 명×0.02UF)+(다음 20만 명×0.015UF)+(나머지 선거권자×0.01UF) - 하원의원: 700UF+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수×0.015UF ※ 1UF ²⁵⁾ : 2022년 8월 24일 기준 1UF 당 33,715.33CLP(한화 약 49,295 원) ²⁶⁾ , UF값은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일을 기점으로 유효함. ※ 선거구별 선거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선거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선거구별로 산출하여 공시 ※ 2021년 선거구별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²⁷⁾ - 상원의원: 최대) 1,820,668,001CLP(한화 약 27억 원) 최소) 99,976,752CLP(한화 약 14억 원) - 하원의원: 최대) 475,806,889 CLP(한화 약 7억 원) 최소) 62,600,189CLP(한화 약 9,000만 원) • 정 당: 소속 후보자 각각의 비용제한액 총합의 1/3	선거비용제한 및 투명성법 제4,5조

25) UF(unidades de fomento, an amount fixed in UF) 물가상승률에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실질가치가 변하지 않는 칠레의 계정 단위 Banco central Chile. 'Unidad de Fomento(Unit of Account).'

https://si3.bcentral.cl/estadisticas/Principal1/metodologias/EC/IND_DIA/ficha_tecnica_UF_EN.pdf (검색일 2022.8.24.)

26) Banco central Chile. 'Daily Indicators.'

<https://si3.bcentral.cl/Indicadoresdiete/secure/IndicadoresDiarios.aspx?Idioma=en-US> (검색일 2022.8.24.)

27) Servicio Electoral de Chile. 'Resolución O N°0058 -Establece los máximos de Gastos Electorales permitidos para las precandidaturas Presidenciales; eventuales elecciones Primarias del 4 de julio de 2021 (18 de julio), próximas elecciones de Presidente de la Republica, Senadores, Diputados y Consejeros Regionales del 21 de noviembre de 2021 y eventual segunda votación del 19 de diciembre 2021.'

<https://www.servel.cl/eleccion-presidencial-parlamentarias-y-de-consejeros-as-regionales/>(검색일 2022.8.24.)

국가명	비용제한액	근거규정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선거만 참여시) 후보자 1명당 2,0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1억 1천만 원) · 1,2차 선거 모두 참여시) 후보자 1명당 2,5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1억 3천만 원) - 하원의원: 9,0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4억 8천만 원) 	선거법 제16c조제2항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150,000× 선거구별 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마하는 선거구의 의석수에 따라 선거구별 계수가 증가함. - 최초 의석수 1개의 기본계수는 1이며, 2~7석의 경우 의석수마다 0.5씩 증가, 8석 이상인 경우부터는 0.1씩 계수가 증가함. - 계수(coefficient)는 조정될 수 있음. - Cyclades, Dodecanese 지역의 선거구별 계수는 의석수마다 0.5씩 고정 증가함. 정 당: 정당에 제공된 국고보조금(regular funding) 마지막 지급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정치자금법 제13,14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5,000,000HUF을 기준으로(법 시행 이후 첫 총선 실시연도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매해 조정 정 당: 정당이 등록한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 	선거자금법 제7조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 2,000,000ISK+선거권자 1명당 140~320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주민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140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4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185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2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230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275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1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320ISK 증액 	정치조직 활동법 제7조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수 3석 선거구: €30,150(한화 약 4,000만 원) - 의원수 4석 선거구: €37,650(한화 약 5,000만 원) - 의원수 5석 선거구: €45,200(한화 약 6,000만 원) - 정당 또는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일부터 56일 이내에 지출내역 보고서를 선거비용 지출 회계검토를 담당하는 공직기준위원회(28)에 제출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는 본인에게 허용된 선거비용제한액 중 일부를 정당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개별 후보자들이 양도한 비용제한액의 합산으로 결정됨. 	선거법(1997) 제32조제1항 제a,b호, 제36조제1항제a호

28) 공직기준위원회(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SIPO)

<https://www.sipo.ie/en/> (검색일 2022.9.1.)

국가명	비용제한액	근거규정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당: 정당연합 또는 신진 정당연합의 경우 70FU를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 5명 미만 의석 정당: 10FU - 5명 이상 11명 미만 의석 정당: 2FU×의석 - 11명 이상 의석 정당: 10명까지 2FU, 그 이상은 1.5FU ※ FU, 자금조달 단위(מימון יחידה, financing unit): 공공기준위원회가 결정해 관보에 공표함[2022년 현재 ₩1,819,066(한화 약 7억 3천만 원)]²⁹⁾ 	정당자금법 제1b조 제7조제A~D항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선거구 당 고정비 €52,000)+(선거권자 수×€0.01) 정 당: 전국 상·하원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수×€1.00 	상·하원의원 선거운동법 제7.10조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월평균 근로소득×해당 선거구내 이전선거 선거권자 수×0.0004(계수) - 2022년 의회선거,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 €708,053³⁰⁾ ※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전년도 월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 	정치자금법 제8 ⁴ 조제1항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수×0.0001×VMDU ※ 결과값 가장 앞 유효숫자 2자리에서 반올림(맨 앞 세 번째 숫자 반올림) ※ 결과값이 10VMDU 보다 작은 경우 선거비용은 10VMDU로 고정 ※ VMDU: 국가 월평균 임금(2020년 €970) ※ 2020년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31,000~€43,000³¹⁾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선거권자 수×0.0005VMDU ※ 2020년 정당 선거비용제한액 €12,000,000 	선거운동자금법 제14조제2,3항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³²⁾ 	-

29) דוח ביקורת על חשבונות הסיעות ורשימות המועמדים לתקופת הבחירות לכנס' -23ה(Audit report on the accounts of the factions and the lists of candidates for the election period for the 23rd Knesset.)

<https://www.mevaker.gov.il/he/publication/Articles/Pages/2022.03.27-Mimun.aspx> (검색일 2022.8.24.)

30) Korupcijas novēršanas un apkarošanas birojs. 'KNAB aprēķinājis limitēto priekšvēlēšanu aģitācijas izdevumu apmēru, KNAB has calculated the limited amount of pre-election campaign expenses.'

<https://www.knab.gov.lv/lv/jaunums/knab-aprekinajis-limiteto-prieksvelesanu-agitacijas-izdevumu-apmeru> (검색일 2022.8.24.)

31) ODIHR Election Expert Team Report. 'Republic of Lithuania Parliamentary Elections, 11 and 25 October 2020.' p.13.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e/a/477730_0.pdf (검색일 2022.9.7.)

32)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Luxembourg, Parliamentary Elections, 14 October 2018.' p.7.

<https://www.osce.org/odihr/389582?download=true> (검색일 2022.9.7.)

국가명	비용제한액	근거규정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원의원(지역구선거):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300(지역구하원의원 총수) ※ 하원선거만 실시되는 해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 상원의원(지역구선거) 하원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출마하는 상원의원선거 선거구 수(단, 선거구 수는 최대 20개) ※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정당국고보조금 총액의 20% 	연방선거법 제243조 제4항제a,b호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NZ\$30,600 정 당: NZ\$1,301,000+(출마 선거구 수×NZ\$30,600) ※ 총독이 시행령으로 매년 조정 	선거법 제205C, 206C, 266A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의원: 전국 선거권자 수×0.18PLN(약 55원)×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한 선거구의 수/100(상원의원 총수) 하원의원: 전국 선거권자 수×0.82PLN(약 250원)×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한 모든 선거구에서선출된 의원의 수/460(하원의원 총수) - 재정담당장관은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인 경우 비용제한액을 조정해야 함 (2021년 선거권자 당 제한액기준 0.97PLN, 약 284원).³³⁾ ※ 방송광고비용은 선거운동비용제한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선거법 제136, 199, 200, 259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IAS×60에 해당하는 금액 ※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 사회지원단위지수), 2022년 €443.20 	정당 및 선거운동자금법 제20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당: 최대 €3,000,000(VAT 포함, 한화 약 402억 원) 	선거운동법 제3조제1항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및 후보자: 출마하는 선거구 선거권자 1명당 €0.4 	선거운동법 제23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없음. 	-

33) OpenLEX. ‘Podwyższenie kwoty limitu wydatków komitetów wyborczych w wyborach do Sejmu Rzeczypospolitej Polskiej(Increasing the amount of the spending limit of election committees in elections to the Sejm of the Republic of Poland).’

<https://sip.lex.pl/akty-prawne/dzu-dziennik-ustaw/podwyzszenie-kwoty-limitu-wydatkow-komitetow-w-wyborach-do-19180908> (검색일 2022.9.7.)

〈표 8-4〉 OECD국가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국가명	위반 시 제재내용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선거법 제258조 정치자금법 제46조제5호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행위(매수·향응제공, 선거비용 허위보고), 위법행위(위법고용, 교통시설 등 위법대차, 선거비용 규정 위반): 당선무효 및 공민권 제한 선거비용 관련 보고서 미제출 등: 벌금 부과 	1983년 국민대표법 제85조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로 연중 총액 2,000달러 이상을 기부 및 지출 위반 시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병과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운동법 제30109조(d)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자금모금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모금 또는 수수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 한 경우,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의 작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45,000의 벌금 및 3년의 징역에 처함.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 권리가 상실되며,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 납입해야 함. 회계보고서 기간내 미제출하거나 제한액 초과 지출시 후보자는 1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음. 	선거법 제52-15, 113-1, 118-3조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3년 이하 금고 또는 ¥50만 이하 벌금 출납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 위반으로 형에 처해진 때는 당선무효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정기간 정지(벌금형: 5년, 금고이상: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누범자는 10년)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251조의2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액 위반 시 벌금 부과 선거비용 관련 회계 위조 시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함 	선거법 제132,149조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즉결심판을 통해 C\$2,000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C\$50,000의 벌금이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병과 	선거법 제497조의4제1항, 제500조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내 회계보고서 미제출시 벌금 부과 	연방선거법 제309조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비용제한 규정 위반 시 초과액 구간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해 합산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이하 초과: 초과금액의 최대 15% 벌금 - 10%초과 25%이하: 초과금액의 최대 25% 벌금 - 25%초과 50%이하: 초과금액의 최대 100% 벌금 - 50%초과: 초과금액의 최대 150% 벌금 회계보고서 기록·보고의무 위반: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0,000 이하의 벌금 기부금의 기록·보고 의무 위반: 최대 €20,000 이하의 벌금 기부금 모집 규정 위반: 위법의 정도에 따라 최저 해당 기부액, 최고 해당 기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정당법 제10조제6~8항, 제12조

국가명	위반 시 제재내용	근거규정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제한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벌금(단, 최소 €25,000~최대 월별 보조금의 4배)부과 • 정당 선거비용 중 후보자 배분 비율 위반: €1,000 이상 €250,000 이하의 벌금 (재범의 경우 2배)부과 • 보고서 관련 위반: €1,000 이상 €30,000 이하의 벌금 부과 	정치자금법 제13,14조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UF를 기준으로 선거위원회에서 금액을 산출해 벌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미만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2 - 10% 이상 25% 미만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3 - 25% 이상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5 • 기부금제한액 초과, 불법기부금 모집 시 벌금 부과 	선거비용제한 및 투명성법 제6,29조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정당연합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0,000CZK(한화 약 53만 원)~최대 [선거비용제한초과액×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선거법 제16G조제2항제J호, 제4항제D호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의 모집 및 선거비용기록·보고 의무 위반: 최대 €15,000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된 기부금의 반환을 연체한 경우 납부액의 0.85%를 매 일일마다 가산 • 정당 회계 기록·보고 의무위반: 정당, 후보자가 위반한 경우 최대 300 벌금단위 (trahviühikut: 에스토니아의 벌금 기준 단위, 현재 €4), 법인이 위반한 경우 최대 €15,000 이하의 벌금 	정당법 제12 ¹² 조, 제12 ¹⁴ 조~제12 ¹⁶ 조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의 사용, 선거운동자금과 기부의 조달보고 및 운영계획에 관한 보고의무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처벌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당보조금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명령할 수 있음. 	정당법 제9e,11조 선거자금법 제10조 감사원법 제15조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초과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 정 당: 선거비용제한액 초과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초과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이상인 경우 벌금과 함께 다음 해 국고보조금(regular funding)지급을 하지 않음. 	정치자금법 제24조제6항, 제25조제5항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2배를 재무부에 반환 • 부적절한 보고로 감사원이 승인을 거부한 경우 해당 금액의 2배 반환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시 초과지출 금액의 2배를 정부에 반환 • 감사원이 정당 자금의 위법을 감사해 재무부에 보고. 위법에 따른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 부과 	선거자금법 제8조제3항 제8A조제3항 제9조제4항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내 회계보고 미제출시 벌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지출액이 550,000ISK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고의무 면제 • 기부금 모집 한도 위반 시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정치자금법 제10,13조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삭감 • 승인되지 않은 선거비용을 제출, 위법한 기부금 모집, 기부내역서, 금전기부증명서,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2,500의 벌금 • 기부내역서 제출기한 초과 1일마다 최대 €500의 벌금 부과 •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기부내역서, 법정신고서, 금전기부증명서, 입출금내역서를 고의로 공직기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병과 	선거법(1997) 제25,40조, 제43조제2항제d호, 제3항제c호, 제5항 벌금형법 제6,8조

국가명	위반 시 제재내용	근거규정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지출을 명령한 자 또는 정당연합이나 후보자로부터 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징역 1년 또는 형법 제61조제a항제3호에 따라 75,300NIS(한화 약 3,000만 원)의 벌금 부과(한도액 초과에 대한 벌금은 초과액의 4배 또는 결정된 벌금 중 높은 벌금을 부과) 선거결과 발표 후 16주 이내 선거기간 동안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감액 위법한 기부금을 받거나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 또는 선거자금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또는 대출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26,000NIS 이하의 벌금 	정당자금법 제9A조제c항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금액 이상: 3배 이하의 행정벌금 초과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 2배 이상인 경우 ①의 벌금과 함께 후보자 자격 박탈 정 당: 선거비용제한액 초과금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행정벌금 선거비용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000~€500,000 의 행정벌금 	상·하원의원 선거운동법 제15조제9,16항 정당 및 선거운동에 공공기부감소와 보고서의 투명성에 관한 법 제13조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국(KNAB)은 정당 또는 연합의 선거비용지출제한액 초과금액을 30일 이내로 국고로 귀속시킴. 해당 정당 또는 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패방지국은 초과금액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 제10조제2'항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자금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제한액을 10% 이상 초과할 경우 - 미신고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 이상을 차지한 경우 - 서류미비, 분실, 보고서 불일치인 경우 ※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앙선거위원회가 2년간 선거비용 직접지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³⁴⁾ 	정치자금법 제23,24조 정당법 제20조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연방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정 당: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10,000일에 해당하는 벌금(재범 시 2배 징수), 국고보조금 최대 50% 삭감 후보자: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5,000일에 해당하는 벌금, 후보자등록 취소 무소속후보자: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5,000일에 해당하는 벌금, 후보자등록 취소, 선거비용 미신고 또는 미반납시 연속 2회 선거출마 금지 	연방선거법 제443조제d,f항 제456조제1항 제a,c,d호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의 회계보고서·보고 의무 위반시: 최대 €25,000 이하의 벌금 정당이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일정 기간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5 미만의 벌금: 1년/ €2,250 미만의 벌금: 2년/ €3,375 미만의 벌금: 3년/ 그 이상의 경우 4년간 보조금 지급 중단 	정당자금법 제37,39조

34) ODIHR Election Expert Team Report. 'Republic of Lithuania Parliamentary Elections, 11 and 25 October 2020.' p.15.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e/a/477730_0.pdf (2022.9.8.)

국가명	위반 시 제재내용	근거규정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문서, 계정을 선거일 이후 3년까지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NZ\$40,000 이하의 벌금 • 선거비용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NZ\$40,000 이하의 벌금 • 선거비용보고서가 허위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illegal)위법 의도가 없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과정을 거쳤을 경우 재정담당관이나 당대표는 NZ\$40,000 이하의 벌금, 그 외 당사자의 경우 NZ\$10,000 이하의 벌금 - (부패, corrupt)위법 사실을 인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 	선거법 제204E,205F,205N, 205O,206D조 선거자금법 제106,143,144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 시 국고보조금 삭감 • 회계보고 시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정당법 제28,30조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작성의무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 선거자금이 아닌 정당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선거자금의 목적 외 사용 1,000PLN 이상 100,000PLN 이하의 벌금 • 규정에 초과된 기부를 수락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 	정당법 제34c조, 제49c~49h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자금조달, 선거비용제한액 위반: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 정치자금 관련 위반: 기부금, 경상보조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최소 IAS의 10배 최대 IAS 400배 미만에 해당하는 벌금 - 정당대표: 최소 IAS의 5배 최대 IAS 200배 미만에 해당하는 벌금 • 수입과 지출 비용에 대한 차별,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정당, 법인이사, 개인별로 벌금을 규정 ※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 사회지원단위지수), 2022년 €443.20 	정당과 선거운동자금법 제28,29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보고서 미제출, 선거운동특별계좌 사용규정 위반 시 €10,000~100,000 (한화 약 1,400만~1억4,000만 원)의 벌금 부과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초과액 2배에 해당하는 벌금 	선거운동법 제19조제3,8항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7,000 이상 €20,000 이하의 벌금 부과 	선거운동법 제39조제1항

※ 독일,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튀르키예는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표 8-5〉 각국의 선거비용 직접 지원 현황

구분	국가명
정기적 경상보조금 지원 국가	앙골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덴마크, 지부티,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몰도바, 몽골, 나미비아, 북마케도니아, 니제르,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대만,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우크라이나, 영국, 예멘, 짐바브웨
선거보조금 지원 국가	호주, 부탄,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엘살바도르, 뉴질랜드, 니카라과,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미국(대통령)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모두 지원하는 국가	한국,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아르헨티나, 베냉, 볼리비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가봉, 독일,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리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파나마,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르완다,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토고, 튀르키예,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Are there provisions for direct public funding to political parties?'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Political%20Finance%20Database®ion=&question=®ion=&question=> (검색일 2022.4.7.)

〈표 8-6〉 각국의 정당 활동 관련 간접비용 지원 현황

구분	국가명
미디어* (free or subsidized access to media)	<p>O</p>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인도,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루시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튀르키예,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영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p>X</p> 오스트리아, 바하마, 벨리즈, 보츠와나, 코모로,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피지, 그레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란, 키리바시,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셜제도, 모리타니,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나우루, 네팔, 노르웨이,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웨덴, 시리아, 탄자니아, 동티모르,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바누아투
기타** (indirect public funding)	<p>O</p>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부룬디, 카보베르데, 캐나다,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노르웨이,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p>X</p> 알제리, 안도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방글라데시, 벨리즈, 불가리아,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조지아,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마셜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나코, 몽골,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팔라우,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리남,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 정당들이 미디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 미디어에 대한 지원 외에 정당, 후보자,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 등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32. Are there provisions for free or subsidized access to media for political parties?’

‘35. Are there provisions for any other form of indirect public funding?’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Political%20Finance%20Database®ion=&question=®ion=&question=> (검색일 2022.4.7.)

〈표 8-7〉 OECD국가의 선거비용 직접 지원 현황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한 국	국고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균등배분 • 그 외 정당으로 5석 이상의 원내정당에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 2%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 	정치자금법 제25,27조
	선거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추천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후보자를 30%이상 추천한 정당에 총액의 50% 지급 - 20~30%미만 추천한 정당에 30% 지급 - 10~20%미만 추천한 정당에 2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 	제26,26조의2, 26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추천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후보자를 5%이상 추천한 정당에 총액의 50% 지급 - 3~5%미만 추천한 정당에 30% 지급 - 1~3%미만 추천한 정당에 2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추천보조금(39세이하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후보자를 20%이상 추천한 정당에 총액의 50% 지급 - 15~20%미만 추천한 정당에 30% 지급 - 10~15%미만 추천한 정당에 2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 	
영 국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개발보조금(PD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의회에서 2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배분 • 하원의회 야당에 대한 보조금 (short money) • 상원의회 야당에 대한 보조금 (cranborne mon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총액 £20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는 자격을 갖춘 정당에 동등배분 - 나머지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 • (의석수 × £18,297.43)와 득표수 (득표한 매 200표 당 × £36.54) • 2019~2020년에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에 각각 £640,300와 £319,696 지급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2조
미 국	선거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선거, 정당에 대한 지원 없음. • 대통령선거(지출한도 존재)에 대한 보조금만 있음. 	-	연방법 제26편 제9003, 9033조
프랑스	국고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하원의회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정치단체 중 최소 50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별로 1%이상 득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별 1차 투표 득표수의 €1.59를 곱한 금액 	정치자금 투명법 제8,9조
	선거비용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한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제한액의 47.5% 	선거법 제52-11-1조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독 일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의원선거·연방하원의원 선거 정당명부 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0.5% • 주의회의원선거 정당명부 투표에서 1% 이상 득표 또는 정당명부 없는 당이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득표수 기준) 연방의회, 유럽의회, 주의 회의 경우 유효득표수 1표 당 €0.83(최초 400만 표 득표 시 1표당 €1) • 정당 수입 기준) 당비 또는 기부금 €1당 €0.45 	정당법 제18조
일 본	경상보조금 (정당교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5명 이상이 있는 정당이나 최근 실시된 중의원지역구선거 또는 비례대표선거, 참의원지역구선거 또는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2%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정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수비율(참의원, 중의원 수)과 득표비율(참의원, 중의원선거) 각각의 2분의 1 비율로 계산한 합계액 	정당조성법 제2,8조
스페인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원의회, 유럽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원의회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라 배분 	정당자금법 제3조
	선거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원의원 각 의석마다 €21,167.64 • 하원의석을 1석 이상 얻은 경우 1표당 €0.81 • 상원의석을 1석 이상 얻은 경우 1표당 €0.32 	선거법 제175조
스웨덴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지원금 - 최근 2회의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 324,704SEK를 정당별 의원수에 비례해 산정 	정당지원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지원금 - 의회선거에서 4%이상 득표한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원금 - 총액 5,803,200SEK을 1년 차에 755,2년차에 50%, 2~4년차에 25% 지급 - 4%를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게 총 지원금의 1/12를 매달 지급 - 기본지원금 외 여당에 의석당 16,350 SEK, 야당에 의석당 24,300SEK를 추가로 지급 	제5~8조
스위스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섭단체별로 기본금액 144,500CHF 지급, 소속의원 1명당 26,800CHF추가 지급 	연방의원의 소득과 인프라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에 관한 연방법 제12조
캐나다	선거비용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 유효투표총수의 2%를 득표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의 50%, 선거관련 경상비용(최대 C\$250,000) 90%를 보전 	선거법 제4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 당선,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비용제한액의 30%를 보전 	제477조의 73,74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호 주	선거비용 보전	• 정당·후보자 - 제1순위투표에서 4% 이상 득표 한 경우	• 자동지급액 A\$11,029 • 제1순위 득표 1표당 A\$3.016를 곱한 금액 ※ 2022.7.1.~12.31.기준	연방선거법 제293, 296조
오스트리아	경상보조금	• 5석 이상을 얻은 정당	• 연간 €218,000를 1,3분기에 나누어 지 급	정당지원법 제1조
		• 의석을 얻은 정당	• 나머지 금액*을 득표수에 비례하여 1,3분 기에 나누어 지급 *연간연방기금(선거권자 총수×€4.8) - 5석 이상 정당지원금	
		• 의석을 얻지 못했으나 의회선거에 서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 표한 정당	• 획득한 득표당 €2.5를 의회선거 실시 후 6개월 내에 지급	
벨기에	경상보조금	• 선거운동과 관련한 보조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당에 대한 연간보조금이 있음.	• €125,000(정당에 소속된 상원의원 1인 당 €50,000 증가) • 지난 총선에서 득표한 유효투표 1표당 €1.25씩 추가 지급(상원의원이 있는 정 당은 득표당 €1 추가)	정치자금법 제16조
칠 레	경상보조금		• 지난 선거 득표수×0.04 UF - 기준 UF에 등록된 선거권자 총수의 40%를 곱한 금액 이상 60%를 곱한 금 액 이하	정당법 제40조
	선거보조금	• 상·하원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자	• 지난 선거 득표수×0.02UF • 지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는 지난 선거 최저 득표 정 당이 받은 금액을 지급 • 선거 후 기부금 등으로 지원되지 못한 특정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보전제도도 있음.	선거비용 제한 및 투명성법 제15,17조
체 코	경상보조금 35)	• 하원의원선거에서 최소 3% 이상 득표	※ 고정보조금 • 연간보조금 6,000,000CZK (한화 약 3억 원) • 3% 이상 득표 시 0.1%마다 200,000CZK(한화 약 1,000만 원) 를 추가하되 최대 5%까지만 추가 지급	정당법 제20조 제3,4,6,7항
		• 의석획득	※ 위임보조금 • 연간보조금 1석 당 900,000CZK (한화 약 4,500만 원)	
	선거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정당	• 유효투표 1표 당 100CZK	선거법 제85조

35) Ministerstvo financí ČR. 'Příspěvky vyplacené politickým stranám, politickým hnutím a koalicím v roce 2021(Contributions paid to political parties, political movements and coalitions in 2021).'
www.mfcr.cz/cs/verejny-sektor/podpora-z-narodnich-zdroju/politicke-strany-a-hnuti/prispevky-vy-
placene-politickym-stranam-p-46509 (검색일 2022.8.26.)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덴마크	경상보조금	• 최근 선거에 참가하고 총 유효투표 총수 1,000표 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자	• 1표당 22.30DKK 기준으로 함. - 매년 비율조정법에 따른 급여 변동비율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함. - 2021년 34.75DKK(한화 약6500원) ³⁶⁾	정당지원법 제2,12a조	
에스토니아	경상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 의석수에 비례해 매월 5일 배분	정당법 제12 ⁷ 조 제1,2항	
		• 유효투표총수 중 득표수가	2%~3%인 정당		• €30,000 연간 지급
			3%~4%인 정당		• €60,000 연간 지급
4%~5%인 정당	• €100,000 연간 지급				
핀란드	정당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 유효투표총수 2% 이상을 받은 정당	• 의석수에 따라 배분 • 의석을 얻은 정당이 받은 의석당 보조금의 1/3	정당법 제9조	
그리스	경상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및 연합	• 경상보조금 총액(해당연도 국가예산수입의 0.5%)의 80%를 유효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	정치자금법 제1조제5항, 제2조제1항, 제3,4조	
		• 유럽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및 연합	• 경상보조금 총액의 10%를 동일하게 배분		
		• 최소 70%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받은 정당	• 경상보조금 총액의 10%를 동일하게 배분		
		※ 연구훈련보조금: 지급 요건은 경상보조금과 동일	• 국가예산의 0.1%를 배분하며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		
	선거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또는 연합	• 선거보조금 총액(선거 실시연도 국가예산수입의 0.08%)의 50%를 이전 선거의 유효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	제1조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	
		• 유럽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및 연합	• 선거보조금 총액의 10%를 이전 선거의 유효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		
		• 최소 70%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받은 정당	• 선거보조금 총액의 40%를 해당 선거의 유효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		
		※ 의석요건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의회의 총선거결과를 기준으로 선거전에 지급함(출마 선거구와 득표율에 따른 지급 대상은 해당 선거 실시 후 결정되며 선거일 2개월 후 배분).	• 2019년 총 선거보조금 €1.2백만 (SYRIZA €471,000, New Democracy €412,000)		

36) Retsinformation.dk. 「Bekendtgørelse om regulering af beløb i partiregnskabsloven og partistøtteloven i 2022(Order on regulation of amounts in the Party Accounts Act and the Party Support Act in 2022)」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1/1787> (검색일 2022.8.26.)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헝가리	경상보조금	• 비례대표의석을 얻은 정당	• 보조금의 25%를 동등하게 배분	정당법 제5조
		•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얻은 정당	• 보조금의 75%를 득표수에 비례해 배분	
	선거보조금	• 지역구 선거 후보자(개인) ※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반환	• 1,000,000HUF에 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정	선거자금법 제1~3A조 제5,8,8A조
		• 비례대표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을 등록한 정당 ※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반환	• 5,000,000HUF에 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정한 기준금액의	
후보자를 등록한 지역구 선거구 수				
	71개 이상	40%		
	80개 이상	50%		
	모든 선거구	60%		
아이슬란드	경상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거나 2.5% 이상 득표한 정당	• 매년 12,000,000ISK • 득표율에 따라 매년 배분	정치자금법 제3조
	선거비용 보전	• 3개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선거구당 최대 750,000ISK까지 특별보조금을 신청하여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 가능	
아일랜드	경상보조금	• 선거 참여를 위해 등록된 정당 및 선거에서(1차 선거) 2% 이상 득표한 정당	• 공직기준위원회의 중앙기금(Central Fund)을 정당별로 배분 - 연간보조금의 상한은 £1,000,000를 기준으로 1956년 공무원 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금 상승율에 따라 증가함. • 정당의 1차 선호투표 득표율로 배분 ※ 공직기준위원회 2021년 보조금 총 €5,849,389 (한화 약 79억 1,600만 원) ³⁷⁾	선거법 제16,17조
이스라엘	경상보조금		• $\{(0.06FU \times \text{의석 수}) + 0.06FU\}$ 매월 지급	정당자금법 제2,3,3a조
	선거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 득표 • 의회 내 의석이 있는 정당	• 처음 의석을 확보한 정당 : $(\text{의석 수} \times 1FU^{38}) + 1FU$ • 의회 내 기존 의석이 있는 정당 : $\{(\text{이전 의회의 기존 의석 수} + \text{새로 획득한 의석 수}) / 2 \times 1FU\} + 1FU$ ※ 후보자명부 제출이 확인된 정당에 선거비용 선지급(후보자명부 발표일 당시 정당소속 의원 수 $\times 0.7FU$)	

37) 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Exchequer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in 2021.' www.sipo.ie/reports-and-publications/state-financing/expenditure-of-exchequer/Exchequer-Funding-of-Political-Parties-2021.pdf (검색일 2022.9.2.)

38) 이스라엘 공공위원회가 정당자금법의 목적을 위해 결정하여 공시하는 회계단위(Financing Unit). 2022년 현재 ₩1,819,066(한화 약 7억 3천만 원) <https://www.mevaker.gov.il/he/publication/Articles/Pages/2022.03.27-Mimun.aspx> (검색일 2022.8.24)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이탈리아	규정 없음. ³⁹⁾			
라트비아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 1표당 €4.5 지급 (5%이상 득표 시 €10만 추가지급) • 총선 이듬해부터 4년간 매년 1월15일, 7월15일, 2회에 걸쳐 지급	정치자금법 제7조
리투아니아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한 정당	•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6개월마다 지급)	정당법 제20,21조
룩셈부르크	경상보조금	• 의회선거에서 4개 선거구(전국 선거구)에 후보자명부를 제출하고, 2% 이상 득표한 정당 ※ 후보자명부 성비에 따라 총액을 감액함.	• 일시불로 7,500지수포인트 지급, 득표율 2% 이상인 정당에게는 추가 득표율 1% 당 800 지수포인트 추가 지급 ※ 지수포인트: 생활비 지수에 맞게 조정되는 공무원 급여계산 기준 포인트, 2022년 현재 지수 포인트(pi)의 월별 가치는 약 €21 ⁴⁰⁾	정당자금 조달법 제2,4조
	선거보조금	• 1석 이상 의석을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	• 1명 이상 4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50,000 • 5명 이상 7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100,000 • 8명 이상 11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150,000 • 12명 이상 의원 선출 정당: 12명까지 €200,000 • 의원 1명당 €10,000 추가금액 지급	선거법 제91,93조
멕시코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	• 보조금 총액: 등록된 선거인 수×연방 일일 최저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 총액의 30%는 정당별로 동일하게 지급 - 총액의 70%는 직전선거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헌법 제41조 제2항 제a,b호 정당법 제51조
	선거보조금		• 상·하원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각 정당별 경상보조금의 50% • 하원의원선거만 실시하는 경우 각 정당별 경상보조금의 30%	

39) 2014년 2월 21일 법 제13호에 따라 직접지원 폐지. Normattiva.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8 dicembre 2013, n. 149, recante abolizione del finanziamento pubblico diretto, disposizioni per la trasparenza e la democraticita' dei partiti e disciplina della contribuzione volontaria e della contribuzione indiretta in loro favore」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2014-02-26&atto.codiceRedazionale=14G00024> (검색일 2022.9.6.)

40) La fonction publique. 'Le calcul de la rémunération(The calculation of the remuneration).'
<https://fonction-publique.public.lu/fr/carriere/parcours-remuneration/fonctionnaire/traitement.html> (검색일 2022.9.8.)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네덜란드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을 얻은 정당 •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연간 €12 이상의 당비를 지불하는 정당 ※ 당원은 의결권이 있는 등록 당원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기본보조금 €194,012 • 의석당 보조금 €56,273 • 정당의 당원당 보조금: €2,124,322/보조금을 받는 모든 정당의 당원 수 • 금액은 매년 1월 새로 정함. 	정당자금법 제7,8조
뉴질랜드	선거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를 위한 보조금을 등록된 정당과 후보자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 정당간의 관계 여론조사결과와 지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 방송광고를 위한 보조금은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지 않음 	방송법 제74,78,79, 80D조
노르웨이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참여한 정당 • 유효투표총수의 2.5% 이상 또는 1석 이상을 얻은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득표수에 따른 보조금: 최근 의회선거에서 정당의 득표당 1kr를 지급 ※ 보조금 총액의 90% • 기본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정당들에게 동일하게 지급 ※ 보조금 총액의 10% 	정당법 제11,12조
폴란드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독립 정당 또는 6% 이상을 득표한 정당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5% 이하 득표수×5.77PLN +5%~10% 득표수×4.61PLN +10%~20% 득표수×4.4PLN +20%~30% 득표수×2.31PLN +30% 이상 득표수×0.81PLN ※ 5% 이상 득표 시 구간별 가산 	정당법 제28,29조
포르투갈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석을 얻은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선거 득표수× IAS의 1/135 ※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 사회지원단위지수), 2022년 €443.20 	정당과선거 운동자금법 제4,5조
	선거보조금	선거 실시 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총액=IAS×20,000 (2021년 €14,000,000) 	제17조 제2,4항, 제1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선거에서 51% 이상의 의석수가 배정된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하고 최소 5% 이상 득표한 정당 •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의 20%를 균등 분배 • 총액의 80%를 득표율에 따라 배분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슬로바키아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득표당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표당 월평균임금의 1% (2021년 월평균임금 €1,211)⁴¹⁾ • 활동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보조금 산출식과 동일하나 선거일 시년도와 다음선거 실시년도에 회차를 나누어 지급 - 선거가 실시되는 달부터 다음 선거 실시 이전 달까지 권리가 유효 • 의석당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20석까지는 의석당 월평균 급여의 30배를 지급하고, 21석부터는 의석당 월평균급여의 20배를 지급 	정당법 제25~28조
슬로베니아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 득표한 정당 • 두 정당이 연합한 경우 1.2% 이상 득표 • 3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한 경우 1.5% 이상 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총액의 10%를 동일하게 배분 • 90%는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정당들 간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정당지원금은 전년도 국민총생산의 0.017%를 초과해서는 안 됨. 	정당법 제24조
튀르키예	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총선에서 유효투표총수 7% 이상 득표한 정당 •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투표총수에 비례해 배분 • 유효투표총수에 비례해 배분하며 최소 1,000,000TRY(한화 약 2억 원)이상이어야 함. ※ 재무부가 산정해 지급, 의회선거가 있는 해에는 3배 지급 	의회선거법 제33조 정당법 제61조 부칙1

41) Štatistický úrad Slovenskej republiky. 'Priemerná mesačná mzda v hospodárstve SR(Average monthly salary in the Slovak economy).'

[http://statdat.statistics.sk/cognosext/cgi-bin/cognos.cgi?b_action=cognosViewer&ui.action=run&ui.object=storeID\(%22i94C7052B240A492FB3BE8C7A487D337B%22\)&ui.name=Priemern%C3%A1%20mesa%C4%8Dn%C3%A1%20mzda%20v%20hospod%C3%A1rstve%20SR%20%5Bpr0204qs%5D&run.outputFormat=&run.prompt=true&cv.header=false&ui.backURL=%2Fcognosext%2Fcps4%2Fportlets%2Fcommon%2Fclose.html&run.outputLocale=sk](http://statdat.statistics.sk/cognosext/cgi-bin/cognos.cgi?b_action=cognosViewer&ui.action=run&ui.object=storeID(%22i94C7052B240A492FB3BE8C7A487D337B%22)&ui.name=Priemern%C3%A1%20mesa%C4%8Dn%C3%A1%20mzda%20v%20hospod%C3%A1rstve%20SR%20%5Bpr0204qs%5D&run.outputFormat=&run.prompt=true&cv.header=false&ui.backURL=%2Fcognosext%2Fcps4%2Fportlets%2Fcommon%2Fclose.html&run.outputLocale=sk) (검색일 2022.9.8.)

〈표 8-8〉 OECD국가의 선거비용 간접 지원 현황

국가명	교통	출판 (인쇄, 우편, 게시)	라디오 & TV	세금 혜택	근거규정
한 국	○	○	○	○	공직선거법 제64,65,83,72,73,74조 정치자금법 제59조
영 국	×	○	○	×	1983년 국민대표법 제91,93조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1조
프랑스	×	○	○	○	선거법 제51,150,151,167,167-1조 조세법 제200조
독 일	×	×	○	○	정당법 제5조 소득세법 제10b,34g조 주간 방송협정 제42조
일 본	○	○	○	○	공직선거법 제141조제7항, 제142조제5항, 제144조, 제149조제6항, 제150,151,176조 정치자금규정법 제32조의3
스페인	×	○	○	○	선거법 제61,64,65,67조, 제175 조제3항 정당자금법 제12조제1항
캐나다	×	×	○	○	선거법 제338조 소득세법 제127조
호 주	×	×	○	○	공영방송법 제79A조 소득세법 30DA-243(3)
오스트리아	×	×	×	×	-
벨기에	×	×	○	×	선거비용제한법 제4조제3항
칠 레	×	×	○	○	선거법 제32,179조 정당법 제36조
체 코	×	×	○	×	선거법 제16조제8항
덴마크	×	×	×	○	정당지원법 제13조
에스토니아	×	×	×	○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핀란드	×	○ ⁴²⁾	×	○	정당법 제10조

42) Kevin Casas-Zamora, Daniel Zovatto. 2016. 'The Cost of Democracy.' p.16.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he-cost-of-democracy-EN.pdf> (검색일 2022.8.30.)

국가명	교통	출판 (인쇄, 우편, 게시)	라디오 & TV	세금 혜택	근거규정
그리스	×	×	○	○	의회선거법 제45,46,130조 정치자금법 제1조제7항
헝가리	×	×	○	○	선거절차법 제147조
아이슬란드	×	×	○	×	공익을 위한 국영방송, 대중매체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아일랜드	×	○	×	×	우편방송서비스법 제74조
이스라엘	×	×	○	×	선거운동법 제15조
이탈리아	×	×	○	○	미디어접근법제2,3조 정치자금투명성법 제11조 상·하원의원 선거운동법 제18조
라트비아	×	×	○	×	선거운동법 제6~9조
리투아니아	×	×	○	×	의회선거법 제51조 선거운동자금법 제16조제9항
룩셈부르크	×	○	×	×	선거법 제92조
멕시코	×	○	○	○	연방선거법 제159조 정당법 제66,69조
네덜란드	×	×	○	○	미디어법 제39g조 소득세법 제6.32조, 제6.33조
뉴질랜드	×	×	○	×	방송법 제74조
노르웨이	×	×	×	○	소득세법 제2-32조
폴란드	×	○	○	×	선거법 제114,252조
포르투갈	×	×	○	○	정당및선거운동자금법 제10조, 선거법 제69조
슬로바키아	×	×	×	×	-
슬로베니아	×	○	○	×	선거운동법 제6,8조
튀르키예	×	○	×	×	선거기본법 제60조

※ 미국, 스웨덴, 스위스는 선거법상 간접지원 관련 규정 없음.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35. Are there provisions for any other form of indirect public funding?'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55> (검색일 2022.8.30.)

〈표 9-1〉 각국의 투표요일

요일	국가명	
월요일	노르웨이(공휴일), 캐나다(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에 실시), 필리핀	
화요일	이스라엘, 미국, 덴마크*	
수요일	한국(공휴일), 인도네시아(공휴일), 네덜란드	
목요일	영국	
금요일	아일랜드*	
토요일	호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키프로스, 라트비아, 몰타, 싱가포르, 대만, 슬로바키아	
일요일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레바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북마케도니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기타	체코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 토요일 오후에 마칩.
	인도	여러 날에 걸쳐 선거가 진행됨.

* 선거가 실시되는 요일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일로 분류함.

※ 미국은 주별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함.

-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몬태나,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2020년 11월 3일 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함.

※ 이스라엘은 법규상 화요일이지만 다른 요일에 열리는 경우도 많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왔으나 2019년 4월 9일 실시한 조기총선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음.

출처: IPU Parline. 'Parliamentary elections.'

<https://data.ipu.org/elections> (검색일 2022.4.7.)

Wikipedia. 'Election day.'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_day (검색일 2022.4.7.)

Timeanddate.com. 'Is Election Day a Public Holiday?'

<https://www.timeanddate.com/holidays/us/election-day> (검색일 2022.4.7.)

〈표 9-2〉 OECD국가의 투표요일, 선거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국가명	투표요일	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관련규정
한 국	수요일	1일	6시~18시(12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공직선거법 제34,155조
영 국	목요일	1일	7시~22시(15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호
미 국	화요일	1일	6시(8시)~18시(21시) 사이 (보통 12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주별로 다름
프랑스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시행령 제41조
독 일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 단, 주선거위원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표시간 을 앞당길 수 있음.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연방선거법시행령 제47조
일 본	일요일	1일	7시~20시(13시간) ※ 단,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 회의 승낙을 얻어 투표소 여는 시각을 2시간 이내에서 앞당 기거나 늦추거나 또는 닫는 시 각을 4시간 범위 내에서 앞당 길 수 있음.	주간 또는 야간개표	공직선거법 제40조
스페인	일요일	1일	9시~20시(11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84,88조
스웨덴	일요일	1일	8시~20시(12시간) ※ 단, 투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간 단축 가능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4절 제21조
스위스	일요일	1일	제네바) 12시~24시 (주별로 다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9조
캐나다	월요일	1일	8시30분~20시30분 (뉴펀들랜드, 대서양, 중앙지역) 9시30분~21시30분 (동부지역) 7시30분~19시30분 (산악지역) 7시~19시 (태평양지역)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28,129,130, 131조
호 주	토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20조
오스트리아	일요일 (또는 공휴일)	1일	지역별로 시작시간 상이 마감시간은 17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30일 전까지 투표시간 결정)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1,52,59,84조

국가명	투표요일	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관련규정
벨기에	일요일	1일	8시~13시(5시간) (다른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경우 연장가능)	투표완료 즉시 (오후 2시 이전까지 개표소 설비)	헌법 제65조 선거법 제142,152조
칠레	법정 공휴일 ※ 최근선거: 2021년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8시부터 투표 준비 후 투표개시 선언)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63,65,74,75,180조
체코	금,토요일	2일	금)14시~22시(8시간) 토)8시~14시(6시간)	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40조
덴마크	주택내무부 장관이 별도 공표 ※ 최근선거: 2019년 수요일	1일	평일)8시~20시(12시간) 주말)9시~20시(11시간) ※ 공휴일은 주말과 동일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1,46,68조
에스토니아	일요일	1일	9시~20시(11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2,38,57조
핀란드	일요일	1일	9시~20시(11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68,78,107조
그리스	일요일	1일	7시~19시(12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31,50,89,90조
헝가리	일요일	1일	6시~19시(13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절차법 제6,169,188조
아이슬란드	- ※ 최근선거: 2021년 토요일	1일	9시~17시(8시간) (마지막 투표 후 30분 동안 추가 투표가 없을 경우 종료 가능,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모든 선거권자가 투표한 경우 14시부터 종료 가능) ※ 시작시간은 9~12시 사이에 결정가능, 종료시간은 10시 이전까지 가능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80,91,97조
아일랜드	- ※ 최근선거: 2020년 토요일	1일	8시~22시30분 사이 담당 장관(주택계획자치부)이 결정(최소 12시간 이상)	주간개표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선거법(1992) 제96조제1항, 제114조제1항
이스라엘	화요일	1일	7시~22시(15시간) ※ 선거권자 수가 350명 미만인 선거구는 8시~20시(12시간), 모든 선거권자가 투표한 경우 조기 종료 가능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기본법(의회) 제9조 선거법 제72,79조
이탈리아	일요일	1일	8시~22시(14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하원선거법 제46,64,64bis,67,68조
라트비아	토요일	1일	7시~20시(13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7,29조

국가명	투표요일	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관련규정
리투아니아	일요일	1일	7시~20시(13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6,62,76조
룩셈부르크	일요일	1일	8시~14시(6시간)	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73,134,143,144조
멕시코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연방선거법 제208,285,287조
네덜란드	수요일	1일	7:30~21시(13시간30분) ※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작시간 을 조정하거나 종료시간을 앞당길 수 있음(최소 8시간 이상).	21시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F1,J1,N1조
뉴질랜드	토요일	1일	9시~19시(10시간)	· 예비집계-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공식집계-주간개표 (다음날 오전부터)	선거법 제139,161,174조
노르웨이	월요일 (선거구별로 일요일부터 실시 가능)	1일 (선거구 별로 2일)	- (선거위원회가 투표시간과 장 소를 발표, 최종 마감시각 21 시) ※ 최근선거 Luhr skole 지역 일요일)15:00~18:00 월요일)10:00~21:00 Bondi barneskole 지역 월요일)9:00~21:00	· 예비집계-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최종집계-예비집계 완료 후	선거법 제9-1,9-2,9-3,10-4, 10-5,10-6조
폴란드	일요일	1일	7시~21시(14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4,39,70,71조
포르투갈	일요일	1일	8시~19시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0,100,101조
슬로바키아	토요일	1일	7시~22시(15시간) (지역 상황에 따라 투표 시작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앞당길 수 있음.)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0조제3항, 제29조
슬로베니아	일요일	1일	7시~19시(12시간) (선거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4시~23시 이내에서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68,84조
튀르키예	일요일	1일	8시~17시(9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6조 선거기본법 제89,95,96조

※ 선거일에 관한 내용은 <표 4-1> 참고 p.61

〈표 9-3〉 OECD국가의 투표용지 내용 현황

국가명	구분	투표용지 수	기호	후보자 이름	후보자 사진	정당명 또는 상징	기타	근거규정
한 국		선거인별 2장 (지역구비례대표)	○	○	×	○	-	공직선거법 제150조
영 국		선거인별 1장	○	○	×	○	-	1983년 국민투표법 부록
미 국		선거인별 1장	×	○	×	○	자서식 으로도 가능 (후보자 이름)	주법
프랑스		후보자 별 1장	×	○	×	○	후보자 이름 밑에 대리후보 이름 기재	선거법 시행령 제103조
독 일		선거인별 2장 (지역구비례대표)	○	○	×	○	직업, 지위, 거주지 기재	연방선거법 제30조제2항
일 본		선거인별 2장 (지역구비례대표)	×	×	×	×	자서식 (후보자 이름)	공직선거법 제46조
스페인		정당별 1장	×	○	×	○	-	선거법 제172조
스웨덴		정당별 1장	×	○	×	○	-	선거법 제6절 제1조
스위스		정당별 1장	×	○	×	○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4,35조
캐나다		선거인별 1장	×	○	×	○	이름이 동일한 경우 직업·주소 기재	선거법 제117조
호 주		선거인별 1장	○	○	×	○	이름이 동일한 경우 추가사항 기재	연방선거법 제209조
오스트리아		선거인별 1장	○	○	×	○	후보자의 생년	의회선거법 제75조

국가명	구분	투표용지 수	기호	후보자 이름	후보자 사진	정당명 또는 상징	기타	근거규정
벨기에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128,143조
칠레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24,25,26조
체코		정당별 1장	○	○	×	○	직업, 나이	선거법 제38조
덴마크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43조
에스토니아		선거인별 1장	×	×	×	×	자서식 (후보자 등록번호)	의회선거법 제39조
핀란드		선거인별 1장	×	×	×	×	자서식 (후보자 기호)	선거법 제51조
그리스		후보자·정당별 1장	×	○	×	○	-	의회선거법 제72조
헝가리		선거인별 2장	○	○	×	○	후보자 이름이 동일한 경우 생년 기입	선거절차법 제156~160조
아이슬란드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문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⁴³⁾
아일랜드		선거인별 1장	×	○	○	○	거주지, 직업	선거법(1992) 제6688조
이스라엘		정당별 1장	×	×	×	○	백지투표 용지에 자서식으로도 가능	선거법 제76조
이탈리아		선거인별 1장	×	○	×	○	-	하원의원선거법 부록
라트비아		정당별 1장	○	○	×	○	-	선거법 제14조

43) Ísland.is. 'Reglugerð um kjörgögn, atkvæðakassa o.fl. við kosningar(Regulations on electoral documents, ballot boxes, etc. during elections).' <https://island.is/reglugerdir/nr/0388-2022> (검색일 2022.9.19.)

국가명	구분	투표용지 수	기호	후보자 이름	후보자 사진	정당명 또는 상징	기타	근거규정
리투아니아	선거인별 2장	비례대표	○	○	×	○	정당대표명	의회선거법 제58조
		지역구	×	○	×	○	-	
룩셈부르크	선거인별 1장	○	○	×	○	-	-	선거법 제1403조
멕시코	선거인별 1장	×	○	×	○	-	-	선거법 제266조
네덜란드	선거인별 1장	○	○	×	○	-	-	선거법 제J20조
뉴질랜드	선거인별 1장	×	○ (비례후보자 이름은 없음)	×	○	하나의 용지에 2번 기표 (지역구, 비례)	-	선거법 제150조
노르웨이	선거인별 1장	○	○	×	○ (상징·로고는 불가)	직업, 직위 출생연도, 거주지	-	규제규정 제19조
폴란드	선거인별 1장	○	○	×	○	-	-	선거법 제224조
포르투갈	선거인별 1장	×	×	×	○	정당명, 약칭, 상징 모두 표기	-	선거법 제95조
슬로바키아	정당별 1장	○	○	×	○	직업, 나이, 거주지	-	선거법 제55조제3항
슬로베니아	선거인별 1장	○	○	×	○	(소수민족커뮤니티의 소선거구용 투표용지는 상이함)	-	의회선거법 제73,74조
튀르키예	선거인별 1장	×	○	×	○	정당대표 이름	-	의회선거법 제26조

※ 투표용지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 선거인별 1장) 우리나라처럼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명이나 정당명이 모두 적혀있는 형태로 선거인별로 1장의 투표용지를 받음.
- 후보자·정당별 1장) 후보자나 정당별로 각각 투표용지가 작성되는 형태로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비치되어 있거나 투표용지 배부 시 받아 선거인이 선호하는 후보자나 정당의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함.
- 자서식) 일본(이름), 에스토니아(등록번호), 핀란드(기호)의 경우 백지투표용지에 적음.

〈표 9-4〉 OECD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국가명	실시 여부	신청일 및 실시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군인, 경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장애, 원거리 거주자, 격리자) • 선상투표(선원) • 공관투표(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선상투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신고 • 재외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선거인)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고 - 국외부재자)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고 	공직선거법 제38, 제158조의2, 158조의3, 제218조의16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 대리투표(군인, 장애, 업무, 학업, 재외선거인 선원 등) 	선거일 16일 전까지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사업, 여행 등 선거구에 부재중인 학생, 질병, 신체장애 등 주별로 다름)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 이내 (주별로 다름)	주 선거법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투표(장애, 외향선원, 군인, 환자, 학업, 수감자 등) 	-	선거법 제71~78조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직업,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없는 자, 선원)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양로원, 수용소, 요양원, 보호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 특별투표소 투표: 선거일 8일 전까지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8, 25, 27, 28, 61조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지정시설에서 부재자투표(요양, 장애, 보호시설) • 우편투표(질병, 신체장애 등) • 선상투표(외향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재자투표소 투표-선거일 전일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4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50, 55, 56, 58조, 제59조의3, 4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10일 전까지 신청	선거법 제72, 75조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우체국, 외향선, 양로원, 형사보호시설) • 방문투표(질병, 장애, 고령)• 대리투표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거법 제7절제3a, 4, 11~15조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주법으로 정함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8조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군인, 수감자 등) • 방문투표 	선거일 6일 전 18시까지	선거법 제183, 190, 232, 243조의1, 245조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업무, 여행, 환자, 재외선거인)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 방문투표(교도소)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연방선거법 제184A, 184, 224, 227조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 특별투표소 투표 • 방문투표(투표가 불가능한 병상의 환자, 수감자, 교통시설의 부재 등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신청: 선거일 4일 전까지 • 구두 신청: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선거법 제38, 39, 60, 72, 73조

국가명	실시 여부	신청일 및 실시	근거규정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투표(재외선거인, 여행, 공부 등으로 거주지 떠난 자, 질병 등) 우편투표(재외선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투표: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 까지 우편투표: 선거일 전 24일까지 투표용지 송부 	선거법 제147조의2 선거법 제180조의2,7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관투표(재외선거인) ※ 대통령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국민투표만 실시	-	헌법 제13조 선거법 제207조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투표 일반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기간 중 Drive-Through 투표, 특별 투표소투표(격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투표: 개표일 하루 전 20시까지 전화로 신청 부재자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신청: 선거일 2일 전 오후 4시까지 서면(전자)신청: 선거일 7일전 오후 4시까지 	선거법 제6,6(a),15,17조, 제19조제7항 2021 의회선거 특별법 제10,14조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구급시설) 선상투표(외항선 선원과 승객, 해상플랜트 근로자) 방문투표(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와 간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별도신청 없이 가능 재외투표: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시행 가능 특별투표소 투표: 선거일 3주 전부터 시행 가능 선상투표: 해외선박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시행 가능. 근해 해상시설 투표는 3주 전부터 가능 방문투표: 선거일 12일 전까지 	선거법 제54,56,57,58,59,60조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특별투표소 투표(구급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방문투표(건강상태, 고령, 교통수단 미비) 인터넷투표 우편투표(재외선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투표: 선거일 오후 2시까지 우편투표: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회선거법 제38조, 제40~45조, 제50조제5항.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재외선거인)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사회복지시설, 구급시설, 군인) 방문투표(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와 간병인) 선상투표(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투표: 선거일 12일 전까지 우편투표: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신청 	선거법 제46,48,55,66a,66c조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 40명 이상 신청 시 부재자 전용 투표소 설치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선거운동기간 3일이 지난 신청은 선거 이후에 반영됨)	의회선거법 제52,95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투표(건강상태, 장애, 구급) 우편투표(재외선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신청: 선거일 4일 전까지 직접신청: 선거일 2일 전까지 지역선거위원회에 신청 전자신청과 개표위원회에 신청: 선거일 12시까지 우편투표: 선거일 25일 전까지 	선거절차법 제103,266조

국가명	실시 여부	신청일 및 실시	근거규정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요양기관, 교도소) 방문투표(질병, 장애, 출산으로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우편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투표: 선거일 10일 전까지 	의회선거법 제75,76조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경찰, 군인, 질병, 장애, 교육, 직장, 구금 등을 이유로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방문투표(병원, 요양원) 	(임기 만료에 따른)의회 해산일로부터 2일 이후	선거법(1992) 제14,64,79,100조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관투표(재외선거인) 특별투표소 투표(군인, 경찰, 수감자, 병원, 요양원, 코로나격리자전용, 장애인, 피해여성쉼터) 선상투표(외항선) 	신청 없이 가능	선거법 제68a, 68b, 89, 96, 97, 99, 116b조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군인, 외항선 선원, 환자 등)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요양원) 우편투표(재외선거인) 방문투표(심각한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투표소 투표: 선거일 3일 전까지(병원 및 요양시설 환자) 우편투표: 선거일 32일 전까지 방문투표: 선거일 4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하원선거법 제49~53조 재외국민투표법 제4~2조 거소투표 등에 관한 긴급규정 제1조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관투표(재외선거인) 우편투표(재외선거인) 방문투표(건강상의 이유로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자와 간병인) 선상투표(외항선) 특별투표소 투표(재소자, 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 선거일 70일 전부터 3주 전까지 방문투표: 선거 당일 12시까지 신청가능(12시 이후에도 20시까지 방문 가능한 경우라면 접수) 특별투표소: 수감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도소장에게 신청 	의회선거법 제43조 제3,4,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51~3조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재외선거인-공관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사회복지기관, 요양기관, 군인, 구금시설) 선상투표(선원, 승객) 방문투표(장애인, 장애인 보호자, 질병, 7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투표: 선거일 전 목요일까지 	선거법 제67~73조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 	선거일 12주 전부터 25일 전까지	선거법 제168조 제171조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재외선거인) 	선거 전년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방선거법 제253조제5항, 제329,330,331조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우편투표(재외선거인) 대리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요청: 선거일 5일 전까지 구두요청: 선거 전날 12시까지 우편투표: 선거일 28일 전까지 대리투표: 선거일 5일 전까지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와 대리투표 신청은 선거일 6주 전까지) 	선거법 제D2,L7,L9, K1,K3,K7,M1, M3조

국가명	실시 여부	신청일 및 실시	근거규정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팩스투표(재외선거인, 섬지역, 선원, 중요한 자연재해 등) 방문투표(병원, 요양원, 수감 중인 자) 전화투표(장애인, 코로나격리자, 선원, 섬지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투표: 2011년부터 신청 없이 가능 우편투표: 방문투표: 후보자명부등록 및 선거인명부 등록 마감 이후부터 전화투표: 선거소집령 발령 후부터 (코로나 격리자-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법 제61조 선거규칙 제16조~제50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방문투표(병원, 요양기관) 우편투표(재외선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7월1일~8월9일 실시 우편투표: 7월1일~선거일 17시까지 도달 	선거법 제8~6조 선거규제규정 제24a, 26, 28조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사회복지, 구급시설) 우편투표(장애인, 60세 이상, 의무격리자) 공관투표(재외선거인) 선상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 선거일 15일 전까지(의무격리자의 경우 5일 전까지) 선상투표: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법 제12조제4항 제14, 15조 제53a, 53b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재외선거인)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교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투표: 선거일 14~10일 전까지 특별투표소 투표: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법 제79a~79e조, 제84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 일반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방문투표(의료기관, 교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 선거일 50일 전까지 부재자투표: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법 제24, 45, 46, 59, 60조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재외선거인, 요양시설, 병원, 구급시설, 장애인) 방문투표(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투표: 선거일 10일 전까지 재외선거: 선거일 30일 전까지 방문투표: 선거일 3일 전까지 	의회선거법 제69, 81, 82, 83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관투표(재외선거인) 	신청 없이 가능 선거일 4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실시	선거기본법 제33, 94C조

〈표 9-5〉 OECD국가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구분	국가명	우편투표 (Postal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방문투표 (Mobile voting)	근거규정
	한 국	○	○	×	○	×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제158,158조의2
	영 국	○	×	○	○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9호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미 국	○	○	×	○	×	투표권법 제2조, 주 선거법
	프랑스	×	×	○	○	×	선거법 제64,71조
	독 일	○	×	×	○	×	연방선거법 제8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57조
	일 본	○	○	×	○	×	공직선거법 제48조, 제48조의2
	스페인	○	×	×	○	×	선거법 제87조
	스웨덴	○	○	○	○	○	선거법 제7절 제3조 제10절 제2조
	스위스	○	○	×	○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조제6항, 제7,8조
	캐나다	○	○	×	○	○	선거법 제154,168,232조
	호 주	○	○	×	○	○	연방선거법 제184A,200AA,234조
	오스트리아	○	○	×	○	○	의회선거법 제38,60,66조
	벨기에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143조제3항, 제147-2,180-5, 180-7조

구분	국가명	우편투표 (Postal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방문투표 (Mobile voting)	근거규정
	칠레	×	×	×	○	×	선거법 제67조
	체코	×	○	×	○	○	선거법 제19조제1,6항
	덴마크	×	○	×	○	○	선거법 제49,53,54조
	에스토니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의회선거법 제38조, 제39조제7항 제40,52조
	핀란드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46,66a,73조
	그리스	×	×	×	○		의회선거법 제83조
	헝가리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절차법 제103,181,266조
	아이슬란드	○	○	×	○	○	선거법 제74,75,76,89조
	아일랜드	○	○ ※도서지역만 실시	×	○	○	선거법(1992) 제38,64,85,100,103조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	하원선거법 제55조 재외국민투표법 제12조제5항
	라트비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25,45조
	리투아니아	○	○	×	○	○	의회선거법 제66,67,67-1조
	룩셈부르크	○	×	×	○	×	선거법 제168조
	멕시코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연방선거법 제279,329조

구분	국가명	우편투표 (Postal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방문투표 (Mobile voting)	근거규정
	네덜란드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M1, L1, J28조
	뉴질랜드	○	○	×	○	○	선거법 제61, 170조 선거규칙 제24, 27조
	노르웨이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8-1, 8-2, 8-6조, 제9-5조 선거규제규정 제24a, 26, 28조
	폴란드	○ (장애인, 60세 이상, 의무격리자)	×	○ (장애인, 60세 이상)	○	×	선거법 제53, 53a, 54조
	포르투갈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79b, 79g, 97조
	슬로바키아	○	×	×	○	○	선거법 제24조제1, 6, 7항 제60조
	슬로베니아	○ (재외투표, 병원구급시설)	○	×	○	○	의회선거법 제9, 69, 79, 81조
	튀르키예	×	×	×	○	×	선거기본법 제93조

〈표 10-1〉 각국의 재외선거 실시 범위

구분	국가명
의회· 대통령선거 모두 실시	한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룬디, 카보베르데, 차드,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적도기니,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리투아니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몰도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카라과,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팔라우,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미국,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의회선거	안도라,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캐나다, 쿡제도, 덴마크, 에스토니아, 피지, 독일, 지브롤터, 건지, 가이아나, 헝가리,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코소보, 라오스, 콩고,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모나코, 모로코, 미얀마,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 바누아투
대통령선거	아제르바이잔, 베냉, 볼리비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구세주, 가봉,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란, 이슬람, 케냐, 멕시코, 몽골, 파나마, 파라과이,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지방선거	호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이란, 이슬람,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라우,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토고, 미국
국민투표	알제리,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라루스, 벨리즈, 부탄,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코모로, 코스타리카, 덴마크, 지부티, 이집트, 에스토니아, 프랑스, 가봉,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란, 아일랜드, 이탈리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몰도바, 미얀마, 나우루, 뉴질랜드, 니제르, 팔라우,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토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예멘
재외선거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캄보디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키프로스, 도미니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감비아,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키리바시, 북한,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타, 마셜 제도, 몬테네그로, नेपाल,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니우에, 카타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세이셸,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남수단,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수리남, 대만, 탄자니아,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발루, 우간다, 우루과이, 베트남, 영국, 잠비아

출처: IDEA. 'Voting from Abroad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world-view/52> (검색일 2022.6.9.)

〈표 10-2〉 OECD국가의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

국가명	기간	근거규정
■ 재외선거인 자격 유지 기간(기간 이후 자격 상실)		
영 국	15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41조
독 일	25년	연방선거법 제12조제2항
캐나다	5년	선거법 제222조제1항제a호
호 주	6년	연방선거법 제94조
뉴질랜드	3년	선거법 제80조제1항
■ 해외체류 최소 기한(최소 기한이 경과해야 재외선거인으로 인정)		
덴마크	최소 4년	의회선거법 제16조제2항
이탈리아	최소 3개월	재외국민선거법 제4조의2
■ 선거인명부 자동등록 기한(기간 이후 별도 신청으로 가능)		
아이슬란드	16년	선거법 제1조제a항
노르웨이	10년	선거법 제2-7조제3항

※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는 기간 제한 없음.

〈표 10-3〉 OECD국가의 재외선거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실시선거)	근거규정	비고
한 국	•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재외 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 재외공관 투표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제3조, 제218조의16	• 2012년 국회의원선거 최초 실시
영 국	• 자신의 국내 종전 거주지 선거구에 등록된 자 • 공무원로 국외에 거주하는 군인, 대사관, 영사관 직원 및 이들의 배우자	• 우편투표 • 대리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1983년 국민대표법 제1,2조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 1918년 최초 실시
미 국	• 외국에 거주하는 군복무선거인, 상선 근무자, 미합중국 시민으로서 18세 이상의 자 ※ 연방선거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일부 주선거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 우편투표 • 팩스, 이메일,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는 주도 있음.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군인 및 재외부재자 투표법 제20310조	• 1942년 최초 실시
프랑스	• 18세 이상 성년으로 국내 또는 재외공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프랑스 영사관 내 등록되어 있는 자, 군인, 해상생활을 하는 선원 및 그 가족	• 대리투표 • 우편투표 • 인터넷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172, 330-13조	• 1926년 최초 실시
독 일	• 18세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독일 시민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연방선거법 제12,66조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6~18조	• 1949년 최초 실시
일 본	• 18세 이상 일본 국민으로 주소지의 영사관 관할 구역 내에 주소소를 두고 있는 자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 귀국투표(의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제4장의2	• 2000년 중의원비례대표 선거 최초 실시
스페인	• 해외에 거주하는 스페인 시민으로서 국내외 인구조사(CER 및 CERA)에 가입한 자	• 우편투표 • 재외공관투표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36,75조	• 1985년 최초 실시
스웨덴	• 18세 이상 스웨덴 시민	• 재외공관 투표(대리투표 가능)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5절 제2,4조, 제10절 제2,5,6조 제7절 제6,11,12조	• 1968년 최초 실시
스위스	• 18세 이상 재외스위스인	• 우편투표 • 투표소 투표(선거일 현재 국내에 있는 경우)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재외스위스인법 제3,16,19조	• 1977년 최초 실시
캐나다	• 18세 이상 해외거주 캐나다 시민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220,227~229조	• 1945년 최초 실시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실시선거)	근거규정	비고
호 주	• 18세 이상 시민으로 국내 선거 구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연방선거법 제94,184A조	• 1949년 최초 실시
오스트리아	•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선거권자 •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 - 신청에 의한 등록은 10년간 유효 ⁴⁴⁾	• 우편투표 - 선거일 오후 5시까지 도달되어야 함.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헌법 제26조제6항 의회선거법 제60조	• 1990년 최초 실시
벨기에	• 외교관직이나 해외영사관이 보 관하고 있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벨기에 시민	• 재외공관 투표 • 대리투표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선거법 제180~180-3조	• 1998년 최초 실시
칠레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해외에 체류 중인 칠레 시민	• 재외공관 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헌법 제13조 선거법 제205,207, 216조	• 2015년부터 재외 투표 허용, 2017년 대선에서 처음 실시
체코	• 특별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해외에 체류 중인 체코 시민	• 재외공관 투표 (의회의원선거)	선거법 제6조제5항, 제3조제2항, 제27조	• 2002년부터 재외투표 허용
덴마크	•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근로자, 선원 등 • 국제기구, 구호단체, 교육,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위 사람들의 법적 배우자 또는 출국 전에 공동주소지 등록을 마친 동거인	• 재외공관 투표 • 선상투표- 외항선 선원과 승객, 해상 플랜트 근로자와 동반 배우자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헌법 제29조제1,2항 의회선거법 제1,2,16조, 제57조제1,2항, 제58조	• 1970년 외교관부터 시행, 1980년 공공기관, 국제조직, 2003년 투표권이 있는 덴마크인으로 점차 확대
에스토니아	•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자	• 인터넷투표 • 우편투표-신청은 30일 전까지 • 재외공관 투표 • 귀국투표 가능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의회선거법 제47,49,50, 52,54,55조	• 1992년 최초 실시
핀란드	•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핀란드 시민(1972년 모든 시민에게 부여)	• 재외공관 투표- 선거일 11일 전부터 8일 전까지 투표 • 우편투표- 선거일 31일 전부터 투표 가능 • 선상투표- 선거일 18일 전부터 8일 전까지 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선거법 제46,47,66a,66d조	• 우편투표는 2019년 의회선거에서 최초 실시

44) Bundesministerium für Inneres. 'Informationen für Auslandsösterreicherinnen und Auslandsösterreicher (Information for Austrians living abroad).'

https://www.bmi.gv.at/412/Informationen_fuer_Auslandsosterreicher_innen.aspx (검색일 2022.6.9.)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실시선거)	근거규정	비고
그리스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 시민	※ 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법상의 구체적인 법령 없음.	헌법 제51조	• 2014년 유럽의 회선거에서 최초 실시
헝가리	• 선거일에 해외에 체류 중인 자 (자동등록) • 선거일에 해외에 거주하고 선거일 9일 전까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을 신청한 자	• 재외공관투표- 선거일 당일 현지 시각 기준 6시~19시 • 우편투표(국내에 영구주소가 없는 경우) ⁴⁵⁾ - 비례대표선거에 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절차법 제84,259, 266,279, 293조	• 2004년 최초 실시
아이슬란드	• 18세에 아이슬란드에 거주한 시민은 해외이주 후 16년 동안 투표권을 가진. ※ 이후에는 선거인명부 등록을 신청해야 함.	• 재외공관 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선거법 제3.70조	• 1949년 최초 실시
아일랜드	•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과 그 배우자	• 우편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선거법(1992) 제12조제1항	• 1992년 최초 실시
이스라엘	•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군인, 유대기구 ⁴⁶⁾ 종사자, 이스라엘 국적의 선박에 승선 중인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자 - 위 사람들의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	• 재외공관 투표 - 외교부는 선거일 53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재외선거인명부 제출 - 선거일 12일 전에 실시 • 선상투표 - 내무부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53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선박 목록 송부 - 선거위원회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42일 전까지 선박 목록 확정(의회의원선거)	선거법 제96,97, 116조	-
이탈리아	• 업무, 학업, 치료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탈리아 시민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 우편투표 - 32일 전까지 신청 - 10일 전까지 발송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재외국민투표법 제4bis조 제12조	• 귀국투표만 가능했으나 2003년부터 우편투표 실시
라트비아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라트비아 시민 ※ 재외선거인명부는 수도 선거인명부에 통합됨.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 신청은 선거일 5개월 전부터 시작해 3주 전 마감 - 의회 해산으로 인한 우편투표 시 선거공표일 1주일 이후로부터 선거일 2주 전까지 • 선상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8조제1항 제43,44,45조	• 1992년 최초 실시

45) választasz. 'Szavazás külföldről(Voting from abroad).'

<https://valasztasz.tasz.hu/orszaggyulesi-valasztasok/gyakran-ismetelt-kerdesek/szavazas-kulfoldrol-1x1/>

46) 세계시온주의자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유대국가펀드(Jewish National Fund), 케렌 하예소드(Keren Hayesod)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실시선거)	근거규정	비고
리투아니아	•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선거권자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 선상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144~146조	• 1992년 최초 실시
룩셈부르크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시민 • 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우편투표 - 신청은 선거일 12주 전부터 시작해 40일 전 마감 - 투표지가 동봉된 봉투는 선거일 오후 2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함. ⁴⁷⁾ (의회의원선거)	선거법 제1,168,170, 171,177조	• 1984년 최초 실시
멕시코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 시민	• 우편투표 • 재외공관에 인편으로 전달 • 전자투표(완전한 정확성과 보안이 입증되는 경우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만 가능, 2023년 지방선거에서 실시 예정) (대통령, 지방선거, 국민투표)	연방선거법 제329조 제1,2,3항	• 2006년 최초 실시
네덜란드	•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자 • 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재외 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6주 전까지	• 우편투표 - 신청은 선거일 28일 전까지 • 대리투표 - 신청은 선거일 6주 전까지 • 귀국투표 가능 - 신청은 선거일 6주 전까지 (의회의원선거)	선거법 제D2,K7,L9, M1,M3조	• 1989년 최초 실시
뉴질랜드 ⁴⁸⁾	• 최근 3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체류한 시민권자 • 최근 12개월 이내에 뉴질랜드에 체류한 영주권자 • 해외거주 중인 공무원, 외교관, 무역대표, 군인과 해당 가족	• 재외공관 투표 • 선거일 17일 이전부터 투표용지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직접 전달,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80조 선거규칙 제43~52조	-
노르웨이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노르웨이 시민 ※ 지난 10년 이내에 노르웨이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는 선거인명부에 자동등록 됨. 거주한 적 없는 자는 신청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헌법 제50조 선거법 제2-4,2-7, 8-3조	• 1921년 최초 실시

47) Elections.public.lu. 'Postal voting, Legislative elections.'
<https://elections.public.lu/en/systeme-electoral/legislatives-mode-emploi/vote-correspondance.html>
(검색일 2022.6.9.)

48) New Zealand Electoral Commission. 'Vote from overseas.'
<https://vote.nz/how-to-vote/voting-from-overseas/>
(검색일 2022.6.9.)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실시선거)	근거규정	비고
폴란드	• 선거일 3일 전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을 신청한 선거권자	• 재외투표소 투표 - 선거일 현지시각 7시~21시 사이에 실시 • 우편투표 -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입 ⁴⁹⁾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14,35,39조	-
포르투갈	• 공적 또는 사적 목적의 해외주재원 • 국가대표로 선발된 운동선수 • 고등교육기관 또는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학생, 연구원, 교수 등 • 해외에서 치료 중인 환자 - 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동반하는 자	• 재외공관 투표 - 투표는 선거일 12일에서 10일 전까지 실시 • 우편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의회선거법 제79b,79e, 79f,79g조	• 1975년 최초 실시
슬로바키아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시민 ※ 국내 거주자가 없는 국민은 내무부 특별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야 함.	• 우편투표 - 신청서는 투표 50일 전까지 내무부에 송부되어야 함. - 투표지는 선거일 전 마지막 근무일까지 내무부에 도착해야 함.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45조, 제59조제1.8항	-
슬로베니아	• 국내에 거주자가 없는 선거권이 있는 시민 •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선거권자 -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신고 시 가능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의회선거법 제82조	• 1992년 최초 실시
튀르키예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민	• 재외공관 투표 - 선거일 45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 17시까지 • 세관(국경)투표 • 우편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헌법 제67조 선거기본법 제94A,94B, 94C,94E조	• 1987년부터 실시(국경투표만 가능했음.)

출처: 최초도입연도, 실시선거. IDEA. 'Voting from Abroad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world-view/52> (검색일 2022.6.9.)

49) ISAP. 「Ustawa z dnia 2 czerwca 2020 r. o szczególnych zasadach organizacji wyborów powszechnych na Prezydenta Rzeczypospolitej Polskiej zarządzonych w 2020 r. z możliwością głosowania korespondencyjnego (The Act of 2 June 2020 on the special rules for the organization of general elections fo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rdered in 2020 with the possibility of voting by correspondence)」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00000979> (검색일 2022.6.13.)

〈표 10-4〉 해외선거구 도입 국가

국가명	해외의석수	내용
알제리	8	총의석 407석 중 8석 배정(대부분 프랑스에 거주)
앙골라	3	(하원의회) 총의석 220석 중 3석을 배정하기로 입법했으나 아직 재외선거 미실시
카보베르데	6	총의석 72석 중 6석 배정 - 아메리카·아프리카 2석, 유럽 2석, 그 외 지역 2석
콜롬비아	1	총의석 187석 중 1석 배정
크로아티아	3	총의석 151석 중 3석 배정
도미니카공화국	7	(하원의회) 총의석 190석 중 7석 배정 - 캐리비안·남미 2석, 유럽 2석, 캐나다·미국 3석
에콰도르	6	총의석 137석 중 6석 배정 - 남미·아프리카 2석, 미국·캐나다 2석,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2석
프랑스	11	총의석 577석 중 11개 선거구에 11석 배정 - 1구역(캐나다, 미국) 2구역(남미) 3·4·5·6·7·8구역(유럽), 9·10구역(아프리카), 11구역(아시아, 오세아니아)
기니비사우	2	총의석 102석 중 2석 배정 - 아프리카(세네갈, 감비아, 기니, 카보베르데, 모리타니)1석, 유럽(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영국)1석
이탈리아	12	(상원의회) 총의석 200석 중 4석 배정 (하원의회) 총의석 400석 중 8석 배정 - 유럽, 남미, 북중미, 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남극, 네 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수에 비례하도록 해외의석을 배분
레바논	6	총의석 128석 중 6석 배정
리투아니아	1	총의석 141석 중 1석 배정
모잠비크	2	총의석 250석 중 2석 배정 - 아프리카 1석, 그 외 지역 1석
몰도바	14	총의석 101석 중 1석 배정
니제르	5	총의석 171석 중 5석 배정 - 대륙별로 1석
북마케도니아	3	총의석 123석 중 3석 배정 - 유럽·아프리카 1석, 아메리카 1석, 아시아·오세아니아에 1석 (해외유권자 수 부족으로 현재 공석)
페루	2	총의석 130석 중 2석 배정
포르투갈	4	총의석 230석 중 4석 배정 - 유럽 2석, 그 외 지역 2석
루마니아	6	(상원의회) 총의석 136석 중 2석 배정 (하원의회) 총의석 329석 중 4석 배정
세네갈	15	총의석 165석 중 15석 배정 - 유럽에 2석, 미주오세아니아 1석, 아시아중동 1석, 아프리카에 4석을 배정
튀니지	18	총의석 217석 중 18석 배정

※ 해외선거구는 재외선거권자가 해외에 지정된 선거구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IDEA. 'Voting from abroad.'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ing-abroad> (검색일 2022.4.8.)

Wikipedia. 'Overseas constituency.'

http://en.wikipedia.org/wiki/Overseas_constituency (검색일 2022.4.8.)

IPU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 (검색일 2022.4.8.)

EU Global Diaspora Facility. 'Voting matters: diaspora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https://diasporaforddevelopment.eu/wp-content/uploads/2021/06/Voting-matters-diaspora-parliamentary-representation-EN-1.pdf> (검색일 2022.4.12.)

〈표 11-1〉 전자투표 실시 국가 현황

- ※ DREs(Direct recording electronic systems, 직접기록전자시스템): 터치스크린 또는 기계식 버튼을 이용해 선거권자가 선택한 투표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 VVPAT (voter-verified paper audit trail, 투표확인지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표기
- ※ EBPs(Electronic ballot printers): 개별 투표용지를 프린터에 넣고 전자입력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면 선택지가 출력되고 이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
- ※ OMR(Optical Mark Recognition),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수기로 작성한 투표지를 광학스캔방식으로 데이터를 인식

국가명	적용선거범위	전자투표방식	선거권자 범위	비 고
미 국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OMR or OCR 인터넷투표	각 주 별로 상이	• 몇몇 주들은 해외선거권자와 군 복무자에게 전자적(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등)으로 투표용지 전송
프랑스	전국선거 기타선거	DREs 인터넷투표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7년 총선에서 주민 3,500명 이상의 코뮌에서 전자투표 실시가 가능했으며 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2020년 재외선거에서 인터넷투표 실시
캐나다	지방선거	인터넷투표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알버타,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등 6개의 주에서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
호 주	지방선거	인터넷투표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군인선거권자	• 2015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시각장애인, 부재자,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 ⁵⁰⁾
알바니아	전국선거	DRE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1년 의회선거에서 티라나 시 중 1개의 선거관리구역(32개 투표소)에서만 시범 실시
아르헨티나	전국선거 지방선거	EBP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5년 살타, 코르토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선거에서 실시 • 2021년 총선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차코, 네우켄, 코리엔테스, 살타 지역이 참여 ⁵¹⁾

50) Parliament of Australia. 'Electronic voting at federal elections.'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5p/ElectronicVoting (검색일 2022.4.14.)

51) Padrón Electoral. 'Voto electrónico - Boleta Unica Electrónica.'
<https://padronelectoral.org/voto-electronico-boleta-unica-electronica/> (검색일 2022.4.14.)

국가명	적용선거범위	전자투표방식	선거권자 범위	비 고
아르메니아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재외선거권자 군인선거권자	• 선거법 제62조
방글라데시	전국선거	DREs/EBP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8년 총선 6개 선거구에서 실시 • 국민대표명령 제26B조
벨기에	전국선거 지방선거	EBP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일부 코뮌(157개 플란더즈지역, 19개 브뤼셀 지역, 9개 독일어권 지역)에서 실시 ⁵²⁾ • 자동투표에 관한 법률2014
부 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선거법 제330조
브라질	전국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선거법 제59조
불가리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선거법 제265~268조
콩고민주공화국	전국선거	EBPs	모든 선거권자	• 2018년 총선에서 처음 실시
도미니카공화국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 개표 과정에서 전자투표
에콰도르	전국선거 지방선거	인터넷투표 EBPs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1년 총선 해외선거구(아르헨티나 전자투표, 미국 피닉스지역-인터넷투표)에서 실시 • 국내에서는 일부 지방선거에서 실시 • 기본선거법 제113조
에스토니아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모든 선거권자	• 의회선거법 제113조
피 지	기타선거	DREs EBPs	기타선거 해당 선거권자	• 노동조합이나, 학생협회의 선거에서 실시, 피지간호사 협회 선거에서 최초 실시
인 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군복무자를 위한 부재자 선거에 전자우편투표 (ETPBS, Electronically transmitted Postal Ballot System)를 도입
이 란	지방선거	DRE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7년 시와 마을의회선거(145개 시)에서 실시
이라크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 2018년 첫 실시,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판독과 지문 채취를 함께 함.
키르기스스탄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 2017 대통령선거에서 실시 • 선거법 제31조

52) Service public fédéral Intérieur, Direction des Elections. 'Le vote électronique.'
<https://elections.fgov.be/electeurs-comment-voter/le-vote-electronique> (검색일 2022.4.14.)

국가명	적용선거범위	전자투표방식	선거권자 범위	비 고
멕시코	지방선거	인터넷투표 DREs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1년 지방선거에서 실시 - Coahuila와 Jalisco지역에 전자투표기를 설치 - 해외거주자를 위해 인터넷투표 시행
몽 골	전국선거 지방선거	OMR or OCR SMS문자투표	모든 선거권자	• 2015년 국민투표에서 문자투표를 처음 실시
나미비아	전국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2019년 대통령과 의회선거에서 사용됨. - 정당이나 후보자의 색깔로 버튼을 구분
뉴질랜드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재외선거권자	• 투표용지를 다운 받아 다시 업로딩 함.
오 만	전국선거	DREs 인터넷투표 (Mobile apps)	모든 선거권자	• 2019년 총선에서 도입 - 터치스크린과 투표발급기를 갖춘 시스템 - 재외 선거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투표 가능
파키스탄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재외선거권자	• 재외선거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가능
파나마	전국선거 지방선거 기타선거	DREs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9년 총선에서 실시 - 39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대통령·부통령· 지자체 장·의회 71석 중 5석 선출)에서 실시
페 루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0년 의회선거(39개 선거구)에서 실시
필리핀	전국선거 지방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 공화국 법 No.8436
러시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OMR or OCR 인터넷투표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1년 연방선거에서 실시 - 7개 지역의 선거권자가 종이투표와 전자투표 중 선택 할 수 있었음. - GAS "Vybory" 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 • 선거권 보장 및 국민 투표의 연방 시민 참여에 관한 연방법 제2,61,64조
아랍에미리트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Online voting Kiosk)	모든 선거권자	• 2019년 의회선거에서 실시 - 국내에서는 전자투표, 재외선거는 종이투표 방식 - 전자신분증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 과정에 전자투표 방식 활용
베네수엘라	전국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선거과정 기본법의 일반규칙 제310조

※ 기타선거-선거관리기관이 지원하거나 관할하는 비공직선거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Is e-voting currently used in any elections with EMB participation?'

'If e-voting is currently being used, what type(s) of technology used?'

'If e-voting is currently being used, is it available for all voters or only some groups of voters?'

<https://www.idea.int/data-tools/data/icts-elections> (검색일 2022.4.14.)

〈표 11-2〉 전자투표 비실시 국가 현황

구분	국가명	현황
전자투표 시행 이후 중단한 국가	독 일	2005년까지 전자투표 사용 연방선거법 제35조에서 전자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시행령 위헌결정 이후 사실상 폐지
	핀란드 ⁵³⁾	2008년 지방선거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으나 대법원은 결과를 무효로 선언하고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재실시 하였음. 시범실시 실패 이후 전자투표 추진계획을 유보함.
	일 본	2002년부터 지방선거에서 사용되었지만 2018년 폐지
	카자흐스탄	2004년·2005년·2007년 선거에서 사용되었으나 계속된 공공의 신뢰문제와 시스템 갱신의 이유로 2011년 대통령 선거와 2012년 의회선거에서는 전자투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네 팔	2008년 제1대 의회의원 선거와 2014년·2015년의 제2대 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용되었으나, 2017년·2018년의 선거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네덜란드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 캠페인의 결과로 20년 넘게 시행되었던 전자투표를 2007년에 폐지
	노르웨이	2011년 지방선거 10개 시도에서, 2013년 총선 12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되었지만 투표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보안에 대한 불신으로 2014년 중단을 결정
	파라과이	2001년 지방선거 7개의 시도에서 첫 테스트가 있었음. 2번째 테스트는 2003년 대통령선거에서 33개의 선거구에서 시행되었음.
	루마니아	2003년 국민투표에서 해외주둔 군인에 한해 시행되었음.
타당성 조사 및 테스트를 시행 중인 국가	스위스	전자투표는 보류 되어 2019년 선거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사용되지 않음.
	영 국	현재 총선에서는 전자투표가 금지되어있으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서 17개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되었음.
	스페인	사이버보안의 우려 때문에 전자투표 실시를 보류하고 있음.
	알제리	2022년 의회선거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준비 중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외무부 등의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과학 및 연구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실무그룹을 구성함. 실무그룹은 해외전자투표사례 연구와 유럽 평의회 권고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전자투표를 구현할 경우 필요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요구사항을 검토함.
바레인	자동투표기 사용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뉴스는 없음.	

53) Wikipedia. ‘Electronic voting.’
https://en.wikipedia.org/wiki/Electronic_voting#Finland (검색일 2022.4.15.)

구분	국가명	현황
	볼리비아	TSE(최고선거재판소)는 비공직선거(Comteco, 통신협동조합선거)에서 전자투표와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하고자 함. 최근 부정선거 등으로 전자투표에 대하여 유보적임(2021년 선거에서 라틴아메리카 투명성 위원회가 코로나 위험방지를 위해 재외선거에서는 전자투표 실시를 권유했으나 시행하지 않음).
	콜롬비아	2020년 12월 혼합형 전자투표방식(투표용지 발행과 집계 과정에서 기술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승인함. 비공직선거, 지방청년의회 등에서 시행을 거쳐 2023년부터는 일반 선거에 적용할 예정
	코스타리카	2018년에 전자투표를 고려하였으나 높은 도입 비용 문제로 시행되지 않음. 2002년부터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왔으나 널리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
	과테말라	2017년 정부는 사이버 보안상의 문제로 전자투표의 지속적인 추진은 위험하다고 판단
	온두라스	2017년 예비선거에서 2개 지역(Francisco Morazán, Cortés)에서 실시
	인도네시아	선거위원회에서 투표, 개표, 재개표 과정에서의 전자통신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중
	아일랜드	2002년 총선 3개의 선거구에서 전자투표기를 시범사용 했으나 이후 도입비용과 보안에 대한 논쟁이 많아 기존의 전자투표기는 처분했음. 다만, 느린 개표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
	이탈리아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3000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하기도 함.
	쿠웨이트	2016년 의회선거에서 도입을 논의한 적이 있음.
	리히텐슈타인	선거법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제한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시민정치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제8b조).
	리투아니아	2021년 12월 선거위원회는 전자투표 타당성 조사를 시행 ⁵⁴⁾ 의회는 2024년까지 온라인 투표를 합법화 할 것이라고 발표 ⁵⁵⁾
	멕시코	2023년 지방선거 재외투표에서 실시예정

54) diena.lt. 2021.12.17. 'VRK AIŠKINSIS GALIMYBES LIETUVOJE ĮDIEGTI ELEKTRONINĮ BALSAVIMA (THE CEC WILL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ELECTRONIC VOTING IN LITHUANIA).'

<https://m.diena.lt/naujienos/lietuva/politika/vrm-aiskinsis-galimybes-lietuvoje-idiegti-elektronini-balsavima-1056067> (검색일 2022.4.15.)

55) Banga. 2021.10.21. 'Elektroninis balsavimas - iššūkiai ir galimybės(Electronic voting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ttps://gargzdai.lt/elektroninis-balsavimas-issukiai-ir-galimybes/> (검색일 2022.4.15.)

구분	국가명	현황
	몰도바	선거위원회 차원에서 인터넷투표의 타당성 조사가 보고되고 예비 로드맵이 작성되어있음.
	나이지리아	전자투표 사용에 대한 토론은 있지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없음.
	포르투갈	2001년 지방선거, 2004년 유럽선거에서 시범 실시함. 2005년 의회선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해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인터넷투표를 시범 실시함(이 결과는 공식선거결과에 포함되지 않음). ⁵⁶⁾
	시에라리온	2018년 선거기간 동안 향후 전자투표에서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일부 지역에서 실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거위원회는 전자투표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스페인	2003년 카탈루냐의회선거에서 인터넷투표를 테스트함.
	스리랑카	2019년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인도에 지원을 요청
	튀르키예	전자투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2018년 선거위원회는 전자투표에서 사용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실험 시행
	우루과이	이전의 전자투표 계획은 폐기되었으나, 향후 실시 가능성을 가지고 필요 예산을 추정 중임.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If e-voting is NOT currently being used,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e-voting in general?'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ICTs%20in%20Elections%20Database®ion=&question=> (검색일 2022.4.14.)

56) Portal do Leitor. 'Posso votar na Internet?'

<https://www.portaldoeleitor.pt/paginas/possovotarnainternet.aspx> (검색일 2022.4.15.)

제12장

개표

〈표 12-1〉 OECD국가의 개표장소 및 개표참관인

구분 국가명	개표장소	정당 및 후보자	시민·기관	국제기관	근거규정	비고
한 국	개표소	○	○	-	공직선거법 제173조	
영 국	개표소	○	○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1 제44호 정당선거 및 국민대표법 제6C, 6D조	
미 국	투표소	○	○	○	주 선거법	
프랑스	투표소	○	○	○	선거법 제65, 67조	
독 일	투표소	○	○	○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4, 67조	투개표과정 공개
일 본	개표소	○	-	-	공직선거법 제62, 63조	
스페인	투표소	○	×	○	선거법 제95조	
스웨덴	투표소	○	○	○	선거법 제11절 제13조	공개개표 명시
스위스	투표소	○	-	○	정치적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9조	
캐나다	투표소	○	○	-	선거법 제283조	
호 주	개표소	○	-	-	연방선거법 제264, 265조	
오스트리아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15, 20a, 84조	
벨기에	개표소	○	×	○	선거법 제95, 150, 151조	
칠 레	투표소	○	○	-	선거법 제75조	공개선거
체 코	투표소	○	-	○	선거법 제14e, 40조	
덴마크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29, 68조	공개개표 명시
에스토니아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57, 19-4조	공개선거 명시

국가명	구분 개표장소	정당 및 후보자	시민·기관	국제기관	근거규정	비고
핀란드	투표소	○	○	○	선거법 제78,184조	
그리스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24,90조	
헝가리	투표소	○ (우편투표만)	×	○	선거절차법 제4,5,187,188조	
아이슬란드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97,98,100조	공개개표 명시
아일랜드	개표소	○	-	○	선거법 제112,113조	
이스라엘	투표소	○	-	-	선거법 제24,79조	
이탈리아	투표소	○	-	○	하원선거법 제67,68조	
라트비아	투표소	○ (정당별 2명 이내)	○	○	선거법 제29조제1,2항	공개개표 명시
리투아니아	투표소	○ (정당·후보자별 2명 이내)	○ (기관별 2명 이내)	○	선거법 제92,153조	
룩셈부르크	투표소	○	-	○	선거법 제63,66,138조	
멕시코	투표소	○	○	-	선거법 제217,287조 정당법 제23조제1항제a호	
네덜란드	투표소	○	○	○	선거법 제E4,J35,J39조	공개선거 명시
뉴질랜드	투표소	○	-	-	선거법 제160,174,174E, 183조	
노르웨이	투표소	○	○	○	선거법 제10-5,15-10조	
폴란드	투표소	○	○	○	선거법 제70,71,103a, 103b조	
포르투갈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50,101,102조	
슬로바키아	투표소	○	○	○	선거법 제27조, 제47조제1항	
슬로베니아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30,84조	
튀르키예	투표소	○	○	○	선거기본법 제72,95,98조	공개개표 명시

※ 국제기관 참관은 선거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실제 참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으로 표시함.

출처: OSCE 국가별 선거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10.7.)

〈표 13-1〉 OECD국가의 의회의원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국가명	구분	임기개시/권한획득	근거규정	임기만료	근거규정
한 국	단원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14조제2항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42조
영 국	상원	국왕에 의해 임명장 수여 시 공직 선서 시	의회선서법 제1조	사망, 은퇴(70세, 시력감퇴 등)	상원의회개혁법 2014 제1조
	하원	선거결과 공표 시	-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
미 국	상원	공직 선서 시 선거일 이후 1월 3일	상원운영규정III 의회법 제1조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규정 없음)	수정헌법 제20조
	하원	공직 선서 시	의회법 제25조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규정 없음)	수정헌법 제20조
프랑스	상원	간선)전임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날 선거를 실시한 후 일반 회기가 개최되는 날 (상원의원선거는 임기만료 일 전 60일 안에 실시)	헌법 제28조제1항 선거법 제277,278조	법정임기만료 시	선거법 제275조
	하원	선거결과 공표 시	선거법 제121조	법정임기만료 시 (5년째 세 번째 화요일) 의회조기해산 시	선거법 제121조 헌법 제12조
독 일	상원	해당 각 주의회에서 지명됐을 때	기본법 제51조	해당 각 주의회 결정시	기본법 제51조
	하원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당선인을 확정 한 후 당선인이 1주일 이내 서면으로 당선수락선언을 해당 선거위원장에게 보냈을 때	선거법 제45조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기본법 제39조제1항 기본법 제68조제1항
일 본	참의원	당선인 결정시 단, 의원임기 만료 전이라면 임기만료일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102,257조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해산 규정 없음)	헌법 제46조
	중의원	당선인 결정시 단, 의원임기 만료 전이라면 임기만료일 이후	공직선거법 제102,256조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45조 헌법 제54조

국가명	구분	임기개시/권한획득	근거규정	임기만료	근거규정
스페인	상원	당선 선서 시	상원의회규정 11,12	법정임기만료 시	상원의회규정 18(e) 헌법 제69조제6항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99조제5항, 제115조
	하원	당선 선언시	하원의회규정 20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68조제4항 하원의회규정 22(3)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99조제5항, 제15조
스웨덴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소집시	헌법 제153조제1항 정부기관법 제3장제5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소집일	헌법 제153조제1항 정부기관법 제3장제5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133조제e항, 제171조제2항, 제172조 선거법 제1장제4조 제2항
스위스	상원	공직 선서 시	의회이사규칙 제4조제1항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하원	공직 선서 시	의회 이사규칙 제4조제2항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캐나다	상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헌법 제19조제3항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25조제b항
	하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25조제e항
호 주	상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선거법 제42조	다음 총선거의 선거일 전날 만료	헌법 제13조
	하원	당선 후 첫 회의 개시일	헌법 제57조	법정임기만료시	헌법 제5,28조
오스트리아	상원	당선인 결정 시 ※ 주의회 인구비례로 간선	헌법 제35조제1항 상원의원 운영규정에 관한 법 제1조제1항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35조제3항
				의회조기해산 시	상원의원운영 규정에 관한 법 제3조제1,2항

국가명	구분	임기개시/권한획득	근거규정	임기만료	근거규정
	하원	당선 후 첫 회의 개시일 ※ 선거 이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함.	헌법 제27조제1항하원의원 운영규정에 관한 연방법 제9조	새로운 의회의 첫 회의 개시일 의회조기해산 시 ※ 이 경우 연방대통령이 조기 해산에 따른 임기만료일을 정함.	헌법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헌법 제29조제2,3항
	상원	공직 선서 시	헌법 제70조	(언어권별 선출의원)지명한 지방 의회의 첫 회의 개시일 (상원선출 의원)하원의회의 첫 회의 개시일 - 상원선출 의석은 하원의원 득표율에 비례해 언어권별 정당에 배분	헌법 제70조 선거법 제239조
벨기에	하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46조
	상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헌법 제19조제3항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25조제b,e항
체코	하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헌법 제19조제3항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25조제b,e항
	상원	공직 선서 시	상원의사규칙 제4조제4항	법정임기만료시 (종신상원의원 제외)	-
칠레	하원	공직 선서 시	하원의사규칙 제32조제2항	법정임기만료 시	-
	단원제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32조제7항	새로운 선거일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32조제4항 헌법 제32조제2,3항
에스토니아	단원제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61조제1항	새로운 의회의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61조제1항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89조제6항, 제97조제4항, 제105조제4항
핀란드	단원제	선거결과 확정 및 공표 시	헌법 제24조 선거법 제94조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헌법 제24조
그리스	단원제	선거결과 공표 시	헌법 제53조제1항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53조제1항
				의회조기해산 시	

국가명	구분	임기개시/권한획득	근거규정	임기만료	근거규정
헝가리	단원제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STATE) 제3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STATE) 제3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STATE) 제3조
아이슬란드	단원제	공직 선서 시	헌법 제46,47조 의회상설규정 제1,2조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헌법 제24조
				의회조기해산 시	
아일랜드	상원	-	-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헌법 제18조제9항
	하원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선거법(1992) 제33조	법정임기만료 시 시의회해산 시	선거법 제34조
이스라엘	단원제	공직 선서 시	기본법(의회) 제14,16조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기본법(의회) 제37조
				의회조기해산 시 ※ 기존 의원의 임기는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까지	기본법(의회) 제36조
이탈리아	상원	당선 또는 임명 결정시	상원규칙 제1조제1항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종신상원의원 제외)	헌법 제59,61조
	하원	선거결과 공표 시	하원규칙 제1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88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 제61조	
	단원제	의원 자격의 승인 시 공직 선서 시 (11월 첫 번째 화요일)	헌법 제12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88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 제12,13,48,49조
리투아니아	단원제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공직 선서 시	헌법 제59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 제59,63조
룩셈부르크	단원제	공직 선서 시	헌법 제57조제2,3항 의회규정 제3조제6항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
멕시코	상원	공직 선서 시	헌법 제128조 의회기본법 제62조제1,2항 의회내부규칙 제8,9,193조	법정임기만료 시	-
네덜란드	상원	공직 선서 시	헌법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	선거법

국가명	구분	임기개시/권한획득	근거규정	임기만료	근거규정
			제60조	6월 7~13일 사이 화요일에 동시 사임(상원의원은 주의회에서 선출됨)	제Q2조
	하원	공직 선서 시	헌법 제60조	3월 23~29일 사이 목요일에 동시 사임 의회 해산 시	헌법 제64조 선거법 제C1조
뉴질랜드	단원제	소집령 반환 지정일의 다음날	선거법 제54조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선거법 제54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18조
노르웨이	단원제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의회의사규칙 제1조제1항	법정임기만료 시	-
폴란드	상원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전날	헌법 제98조제1항
	하원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98조제3항, 제155조제2항, 제225조
포르투갈	단원제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 제153조제1항 의회의사규칙 제1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 제153조제1항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133,171, 172조
슬로바키아	단원제	공직 선서 시	헌법 제75조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81a,89조
슬로베니아	상원 하원	선거 결과 공표 시 의원자격 승인 시	의회의원법 제6,7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
튀르키예	단원제	공직선서 시	헌법 제81조	새로운 의원들의 임기 개시 시	-

출처: IPU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Start of the parliamentary mandate for newly elected members.'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andate_new_start_event&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7.12.)

'End of the parliamentary mandate.'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andate_end_event&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7.12.)

〈표 14-1〉 OECD국가의 의회의원 결원 시 보충방법

국가명	결원 시 보충방법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선거: 후보자가 없는 때, 선거무효 판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 당선 무효 된 경우 보궐선거: 결원 또는 결위가 생긴 경우 비례대표의원: 소속 정당의 후보자명부 차순위자로 충원 	공직선거법 제195,200조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선거: 후보자의 사망, 선거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 보궐선거: 의원의 사망, 사퇴, 겸직금지 위반, 소환된 경우, 파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당선무효 판결 등 결원이 발생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보궐선거 발의, 의회의장이 보궐선거에 관한 선거소집령 발부(통상적으로 공석발생 3개월 이내) 	1983년 국민대표법 제144조, 부칙 제64호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지사가 다음 선거시까지 임시후임자를 임명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결원을 충원(주마다 다름)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지사가 공고하는 보궐선거로 충원(주마다 다름) 	연방헌법 제1장 제3,5,6조 연방법 제2편 제8조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상원의원이 사망하거나 행정부 또는 헌법평의회 구성 원직 승낙, 정부의 잠정임무 6개월 이상 연장 수행 시 동시에 선출된 대리후보로 충원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은 해당 명부상의 다음 순위자로 충원 하원의원의 경우 다음 총선거까지 대리후보자로 교체 선거무효와 대리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 	선거법 제176조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소속 주명부 차순위자로 충원 보궐선거: 선거구의 무소속후보자거나 해당 주에서 정당명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실시(60일 이내 실시) 재선거: 선거무효 결정 확정 후 60일 이내 실시 추가선거: 하나의 선거구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본선거일로 3주 이내 실시), 선거구 후보자 중 한 명이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전에 사망한 경우(본선거일로부터 6주 이내 실시) 	연방선거법 제43,44,48조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선거: 당선인수 미달, 선거일 후 당선인 사망, 당선무효의 경우 보궐선거: 의원의 사망·사직·퇴직으로 중의원의원 결원발생, 참의원의원정수 1/4 초과 결원 발생, 비례대표선거구에서 해당 선거구 정수의 1/4 초과 결원 발생 시 실시 실시시기: 중의원·참의원 재선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 보궐선거는 9.16~3.15 사이는 4월의 네 번째 일요일, 3.15~9.15 사이는 10월의 네 번째 일요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재선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임기만료일 6개월 전부터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33조의2, 제109,110, 113조

국가명	결원 시 보충방법	근거규정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164,166조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퇴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리후보자로 충원 재선거: 선거무효시 실시 임시선거: 내각불신임 선언 시, 총리 임명 부결 시 실시 	선거법 제14절 제18조, 제15절 13,14조 정부구성법 제13절 제4조, 제6절 제9조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원 발생 시 후보자명부에 있는 차순위자(후보자 추천)로 충원 보궐선거: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실시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5,56조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의원: 총독이 임명 하원의원: 결직, 사직, 사망, 선거무효 등 판결이 나온 경우 보궐선거 실시 	선거법 제57,318,524, 531조 의회법 제22~28조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의원: 총독이 소집한 상·하원의원합동회의(또는 주의회)에서 선출 하원의원: 사직, 무단 회의 불참, 1년 이상 징역의 중범죄, 파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 실시 	헌법 제15,33,45조 연방선거법 제44조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의원: 의원 선출 시 동시에 선출된 대리후보자로 충원 하원의원: 후보자명부 중 차순위자로 14일 이내에 충원 	헌법 제34조제2항 의회선거법 제98조제5항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 선출 시 동시에 선출된 대리후보자로 충원 대리후보자로 충원 불가 시 4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보궐선거일은 법령으로 결정하며 본선거 실시 3개월 전에 공식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 결정) 	선거법 제106,117조
칠 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지명 정당명부에 함께 등록하지 않은 무소속의원의 결원 발생 시 공석으로 둬. 	헌법 제51조
체 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둬. 의원이 속한 정당이 해산되어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둬. 	선거법 제54조제1~3항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대리후보자로 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무부는 의석 배분 결정시에 지역별, 정당별 대리후보자 명부를 의석배정순위와 보상의석 유무에 따라 작성함. 해당 선거구내에 정당의 대리후보자가 없는 경우 지역내 가장 의석이 많은 선거구로 의석을 이전함. 지역 전체에 정당의 대리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른 두 지역 중 가장 대규모의 (정당이 보상의석을 획득하지 않은)선거구에 의석을 이전 위 방법으로 충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 실시 	의회선거법 제92조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사직, 제명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등록된 대리후보자로 교체 -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소속된 후보들 중, 득표수가 많은 후보, 동일 득표의 경우 후보자명부의 순서에 따라 대리후보자를 등록 	헌법 제64조 의회선거법 제75조

국가명	결원 시 보충방법	근거규정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결과 결정시 같은 명부상의 차순위자를 대리후보자로 임명하고 결원 발생 시 의원직을 승계 	선거법 제92조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궐선거 실시 	의회선거법 제104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의원 결원 시 보궐선거 실시 • 비례대표의원의 결원 시 소속 정당이나 연합명부의 후보 중에서 충원하고 명부에 후보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는 공석으로 둬. 	의회선거법 제19,20조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111조 의회절차법 제65조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궐선거 실시 	선거법(1992) 제39조제2항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기본법(의회) 제43조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의석배분방식에 따라 동일 지역내 차순위 중대선거구로 의석을 이전 • 소선거구의 의석이 공석이 된 경우 보궐선거 실시 	하원선거법 제84,86조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41조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의석의 경우 해당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소선거구 의석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다음 선거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함. 	선거법 제177,178조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정당명부에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공석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자는 내무부 장관이 결정 	선거법 제167,259조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일 경우 선거절차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보궐선거 실시 • 하원지역의원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 실시 • 하원비례대표의원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상원비례대표의원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연방선거법 제23조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사직, 재명, 공직 임명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14일 이내에 정당명부에 있는 차순위자로 충원 	헌법 제57조 선거법 제X1~X3, W1조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의원 결원 시 보궐선거 실시. 단, 의회 임기가 6개월 내에 만료되거나, 의원 75%의 찬성으로 충원하지 않을 것이 의결된 경우 공석으로 유지 • 비례대표의원의 결원 시 같은 정당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승계 	선거법 제129,131, 137조

국가명	결원 시 보충방법	근거규정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14-1조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의원: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 하원의원: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251,283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의회선거법 제18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선호투표로 3% 이상 득표한 차순위 후보자가 있는 경우 정당에 관계없이 해당 후보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또는 정당이 해산되어 차순위자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둬. 	선거법 제71조제1~3항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명부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의회임기만료 6개월 이내의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의회선거법 제17,18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원 발생 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선거는 임기 중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 총선 30개월 이전에는 중간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나 결원이 의원 총수의 5% 이상이 될 경우 의회는 3개월 이내로 실시를 결정해야 함. - 총선 1년 전에는 중간선거를 실시할 수 없음. 	의회선거법 제7조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표 15-1〉 OECD국가의 선거에 관한 쟁송 제기방법

국가명	소송/이의제기	관할기관	관련규정
한 국	선거·당선소송	대법원	공직선거법 제222,223조
영 국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선거법원	1983년 국민대표법 제121~123조
미 국 (캘리포니아 주)	당선, 뇌물관련범죄 투·개표 문제	고등법원(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100,16400조
프랑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헌법위원회	선거법 제118-1,118-3, 180조
독 일	선거효력에 관한 심사	연방하원의회→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 제41조
일 본	선거·당선소송	고등재판소	공직선거법 제204,208조
스페인	당선인 공고 및 공표	대법원 행정소송 합의부	선거법 제109~112조
스웨덴	선거법에 따른 결정 및 조치	선거감독위원회	헌법 제3절 제12조 선거법 제15절 제1조
스위스	선거준비·실시에 대한 이의제기	주정부→연방최고법원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77~80조
캐나다	당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주 대법원 또는 최고법원 (연방대법원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524,525조
호 주	선거 또는 선거 결과의 효력	고등법원(연방법원에 항소 가능)	연방선거법 제353,354조
오스트리아	의석배분에 관한 이의제기	연방선거위원회	의회선거법 제110조
	선거절차·당선무효 소송	헌법재판소	헌법 제10,141조 헌법재판소법 제67조
벨기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지방자치단체(항소법원에 항소가능)	선거법 제19,20,27조
	후보자등록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항소법원에 항소가능)	선거법 제125조~125-4조
칠 레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지방선거법원	선거법 제105,106조

국가명	소송/이의제기	관할기관	관련규정
체코	후보자명부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지방법원	선거법 제86,87,88조
	선거의 효력, 결과·당선에 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최고행정법원	
덴마크	선거관련 이의제기	의회	의회선거법 제88,89조
에스토니아	선거과정의 위법, 절차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투표결과 무효	선거위원회(대법원에 항소 가능)	헌법재판소절차법 제37조 의회선거법 제68~73조
핀란드	선거결과에 관한 소송 (대통령선거는 불가)	관할 행정법원 최고행정법원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100,102,105조
그리스	당선인의 피선거권 결격, 선거절차 및 법규의 위반, 개표오류 관련 이의제기	대법원	헌법 제58,100조 의회선거법 제125,126조
헝가리	선거절차 및 법규의 위법에 대한 이의제기	관할 선거위원회(대법원에 항소가능)	선거절차법 제208,209,221, 222,229조
아이슬란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결과와 의석배분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정리하여 의회에 송부, 의회에서 결정	선거법 제114,115,127, 132조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	선거법 제3조
	후보자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항소위원회	선거법 제45조
아일랜드	입후보자격,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고등법원	선거법 제132조제1,5항
이스라엘	의석배분·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행정법원(선거무효 결정은 대법원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86조제A,B항
이탈리아 ⁵⁷⁾	선거결과 관련 이의제기 후보자 적법성 여부	의회	헌법 제66조
	선거권자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후보자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관할 선거위원회	
라트비아	후보자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지방행정법원	선거법 제13 ¹ ,35 ¹ , 51,52 ¹ ,54조
	개표문제,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법적 판결에 따른 의석 배분 문제	대법원	

57) 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 'The Italian Republic Early Parliamentary Elections, 25 September 2022.' p.14.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b/8/524559.pdf> (검색일 2022.10.3.)

국가명	소송/이의제기	관할기관	관련규정
리투아니아	선거운동, 선거인명부, 투표소 투표절차 등에 관한 분쟁	최고선거위원회, 지방선거위원회, 지역구 선거위원회가 활동과 권한에 따라 담당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182조
	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	선거법 제188조
	선거 과정에 관한 이의제기	헌법재판소에 제기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의회에서 최종결정	선거법 제191조
룩셈부르크	선거인명부 오류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행정법원	선거법 제21,22조 제276~279조
멕시코	선거관련 이의제기	선거법원	헌법 제99조
	선거인명부 관련 정당 내부 후보자 추천에 대한 소제기 (당내 이의제기 절차 완료 후)	선거법원	선거법 제151,228조
네덜란드	선거인명부와 후보자 등록에 관한 이의제기	국왕최고자문위원회 행정관할부 (Bestuursrechtspraak-Raad van State)	선거법 제4,17,18조
뉴질랜드	선거 결과에 관한 소송	고등법원	선거법 제229,230,258조
	의석배분 관련 소송	항소법원	
노르웨이	투표권 및 투표권 행사	의회	선거법 제13-1조
	이 외 선거 관련 이의제기	중앙선거위원회	
폴란드	선거인명부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지방법원	선거법 제20조제4항
	선거효력, 당선효력	대법원	선거법 제241조
포르투갈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과정, 투표결과	헌법재판소	의회선거법 제32,34,117,118조
	투·개표 과정에 이의제기	선거위원회 (헌법재판소에 항소 가능)	
슬로바키아	선거효력	헌법재판소	헌법 제129조제1,2항
	선거인명부 등록	행정법원	선거법 제10,250z조
	후보자명부 등록	대법원	선거법 제250za조
슬로베니아	후보자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행정법원에 항소 가능)	의회선거법 제105조
튀르키예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선거인명부·후보자명부 등록에 관한 이의제기	최고선거위원회	헌법 제79조 선거기본법 제110조~115조

〈표 16-1〉 OECD국가의 주요 선거범죄 비교

1. 매수죄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거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30조
영 국	• 부패행위, 금전에 의한 입후보 취소, 권유, 알선	•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국민대표법 제60,168조
미 국 (연방)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금품을 요구하거나 승낙하거나 받는 자	\$1,000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운동법 제597조
	• 투표권 행사에 간섭 또는 강요할 목적으로 정부 특별 지출금을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한 자		제598조
	• 후보자가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공직의 임명할 것을 약속하거나 보증한 자		제599조
	•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가로 고용, 지위, 보수, 계약, 임명, 기타의 이익 또는 이익을 획득하는데 있어 특별 배려를 직간접적으로 약속하는 자		제600조
캘리포니아 주	• 투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	선거법 제18310조
	•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행위		제18311조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공직, 고용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알선하겠다는 행위		제18520조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프랑스	• 투표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품의 약속, 특혜,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	2년의 징역 또는 €15,000의 벌금	선거법 제106조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조직 및 단체에 기부금 또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2배 가중처벌		제108,109조
독일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금품이나 이익을 제안·약속 또는 제공한 자 •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제공 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형법 제108조의b
일본	•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무를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또는 특수한 직접 이해관계를 이용해 유도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
	• 수수 또는 교부 받은 이익을 몰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		제224조
스위스	• 특정인에게 투표하거나 국민투표, 국민발안의 대가로 금품·선물제공 수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81조
스웨덴	•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을 수락하는 행위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장 제8절
스페인	• 보상, 선물, 금품에 대한 약속을 통해 어느 특정 선거인의 표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하거나 기권을 유도하는 자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의 벌금형, 공직 관련 특별 자격정지형에 처함.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46조제1항제1호
캐나다	• (부패행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뇌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7년 간 하원의원 피선거권 및 공무원임권 제한	선거법 제502조
호주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수령 또는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2년의 징역이나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법 제326조
오스트리아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 공여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20일 수입 이하의 벌금 ⁵⁸⁾	형법 제265조
	• 특정 방식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제공을 승낙하는 행위		

58) Österreichs digitales Amt. Geldstrafe(criminal fine).

Tagessatz(오스트리아 일일 벌금기준 단위: 월별 또는 연간 수입을 통해 계산된 일평균 수입)×법정일수
https://www.oesterreich.gv.at/themen/dokumente_und_recht/strafrecht/8/2/Seite.2460702.html (검색일 2022.10.11.)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 선거권자에게 여행, 숙박비용 등 재산상 가치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음식,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8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 직간접적으로 투표, 기권, 위임장, 선거 결과에 따른 이득에 대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 거래상의 우위나 안전을 제공, 제안, 약속하는 행위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 누구든 공사의 직을 제공, 제안, 약속, 수락하는 행위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제181,1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두 가지 매수죄와 관련한 금원을 제공한 경우 		제18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이 매수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최고형 선고, 2배 가중처벌	제186조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경범죄형 중간등급 ⁵⁹⁾ 의 징역형 또는 10~50개월의 TU ⁶⁰⁾ 에 해당하는 벌금, 공무원입권 영구박탈	선거법 제150조 형법 제25,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받고 특정인에게 투표하는 행위 	경범죄형 최소등급의 징역형 또는 1~3개월의TU에 해당하는 벌금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자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투표하도록 금품,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기권하도록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기권하도록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7조 제4,5항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품이나 혜택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62조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방식으로 투표를 유도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 또는 혜택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투표 또는 기권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을 요구하는 행위 	벌금 또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형법 제14장 제2조

59) 칠레의 징역형은 경범죄형(61일~5년), 중범죄형(5년~20년)으로 구분되며 경범죄형은 최소등급 61일~540일/ 중간등급 541일~3년/ 최고등급 3년1일~5년으로 분류됨.

60) TU(Tax Unit): 60,310.000 CLP(한화 약 92,274원) 2022년 10월 기준

<https://www.ceicdata.com/en/chile/monthly-tax-unit/monthly-tax-unit> (검색일 2022.10.11.)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선거권자에게 금품, 혜택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한 자 금품, 혜택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수락해 투표권을 특정 방식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자 	€2.93 이상 €29.35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의회선거법 제114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추천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제1항 제a,h,i호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돈이나 기타 이익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약속, 요구, 수용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 여부 또는 투표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 	벌금	선거법 제136조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품을 대가로 선거권자가 특정인에 대한 투표를 유도, 알선, 기권 또는 입후보 포기를 요구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식재판: £1,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식재판: £2,500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1992) 제135,157조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0,000NIS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	선거법 제122,123조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유리하게 입후보 추천을 위한 서명을 받거나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현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과 3,000ITL 20,000ITL 이하의 벌금	하원선거법 제96조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로 폭력, 뇌물, 매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일시적인 자유박탈,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벌금형	형법 제90조제2항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를 하거나 기권하도록 선물이나 그 밖의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봉사,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 선거무효에 이르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2조 의회선거법 제5조제1항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 또는 기권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금품, 보조금, 이익 또는 식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자와 이를 수락하는 행위 	€500~5,000의 벌금	선거법 제95,96조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 기권, 특정 후보자나 정당 및 연합에 투표하는 것을 대가로 금품 또는 기타 혜택을 주거나 받는 행위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7항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를 대리하기 위해 뇌물이나 약속을 주고받는 행위 후보자명부 추천서명서를 위해 뇌물이나 약속을 주고받는 행위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물이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초과 €9,0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Z4조제1,2항, 형법 제23조제4항, 제126조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 선물, 장소, 고용,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한 행위 투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동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16,224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선거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1조제b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 또는 기권을 대가로 혜택을 제공받거나 동의하는 행위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제152조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적 이익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0a조 제1,2항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를 매수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일수의 벌금 ⁶¹⁾	형법 제3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 등의 혜택을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여행, 숙식경비, 선거운동 비용 등을 위장해 보상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상 \$5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9)	의회선거법 제155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주거나 약속해 당사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최대 3년의 징역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형법 제332조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 수락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7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명 이상의 선거권자에게 이익, 금품, 공직의 임명 또는 취업, 혜택을 대가로 투표를 요구하는 행위 수령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폭력, 강요, 위협 등을 사용했을 경우 2배 가중처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기본법 제152조

2. 선거의 자유방해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37조

61) JUSTICA.GOV.PT. 'Justiça criminal.'

Pena de Multa(포르투갈 일일 벌금기준 단위: €1~€500 범위에서 해당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법정일수
<https://justica.gov.pt/Justica-criminal> (검색일 2022.10.12.)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미 국 (연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협박을 시도한 행위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 운동법 제594조
캘리포니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박 또는 폭력으로 선거인이 정치모임에 나가는 것을 막거나 방해한 행위 	경범죄로 \$1,000 미만의 벌금	선거법 제183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폭력 또는 위협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 징역	제18540조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란 또는 위협적인 시위행위로 선거인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행위 	2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선거법 제9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인단에게 폭력을 사용했거나 폭력을 사용할 행위 	5년의 징역과 €22,500의 벌금	제9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투표를 침해한 행위 	10년의 징역	제10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범죄가 공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1개 또는 수개의 도 또는 구 규모로 행해진 경우 	20년의 징역	제10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에 대해 폭행, 협박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제107조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이나 협박, 직업상 또는 기타의 경제상 압력을 가해 투표를 강요 또는 방해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특히 중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	형법 제108조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 공직후보자,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이나 위력을 가하거나 유인한 행위 교통, 집회, 연설을 방해하거나 문서그림 등을 훼손한 행위 특수이해관계를 이용해 협박한 행위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이 집합하여 죄를 범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모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타인을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단순참가자: ¥2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2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선거관계사무원이 고의로 공직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행위 	4년 이하의 금고	제226조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에게 폭력·위협을 행사하여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행사하게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의 벌금형, 공직 관련 특별 자격정지 형에 처함.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6조 제1항제2호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를 방해하는 자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중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장 제8절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이나 협박으로 선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79,280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 방해할 공모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 유죄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20,000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기소 유죄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50,000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66조제1항 제3호, 제489조제3항 제4호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 		연방선거법 제3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 또는 그 직원인 자(병원 또는 요양소의 소유주인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 포함)가 그 병원 또는 요양소 환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제325A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된 타인의 정치적 권리 또는 의무 행사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제327조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협 또는 강요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20일 수입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요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60일 수입 이하의 벌금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해 선거권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권하게 하려는 행위 • 의도를 알면서 금전을 제공한 행위 • 공무원이 관여된 경우 최고형 선고, 두 배 가중처벌 가능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83, 185, 18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기관, 자선단체 직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빈곤층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지원을 약속, 제공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제18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기관 등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인을 위협하거나 소란을 피우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을 고용하거나 배치하는 행위(무기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15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6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제18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적으로 위의 폭력조직 등에 참여한 경우 	8일 이상 15일 이하 징역 또는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적인 집회, 협박, 폭력 등으로 선거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15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제18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8조에 의해 조직된 폭력조직이나 구성원 등을 고용해 위의 범죄를 행한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1,000의 벌금	제19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또는 기망으로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요하는 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칠레	• 투표 사무원이 선거권자의 투표권을 부정하는 행위	경범죄형 최소등급의 징역형	선거법 제144조제4항
체코	• 규정없음.	-	-
덴마크	• 불법적인 강압, 자유의 박탈 또는 우월한 지위의 남용으로 선거권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사기를 통해 선거권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기권하게 하거나 투표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7조 제2,3항
에스토니아	• 공적지위, 폭력, 기만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62조
핀란드	• 폭력 또는 위협을 행사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4장제1조
그리스	• 폭력 또는 위협으로 선거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자	3개월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의회선거법 제112조제1항
헝가리	• 폭력, 위협, 기만 등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제1항 제e호
아이슬란드	• 불법적인 수단으로 강요, 정치적 자유의 제한, 지휘권의 남용 등으로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3조
	• 투표 여부 또는 투표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용 또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벌금	선거법 제136조
	• 투표권 행사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강요, 폭력 또는 위협을 가하는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제137조
아일랜드	• 위협, 폭력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특정한 투표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입후보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선거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방해 또는 방해하려는 행위 • 투표용지에 투표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약식재판: £1,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식재판: £2,500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1992) 제136,137, 157조
이스라엘	• 선거권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	2년의 징역 또는 10,000NIS의 벌금	선거법 제119조제3항
이탈리아	• 위협, 폭력 등으로 선거절차,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투표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벌금과 3,000ITL 이상 20,000ITL 이하의 벌금	하원선거법 제100조제1항
라트비아	• 고의로 폭력, 뇌물, 매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선거권자가 총선, 국민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벌금	형법 제90조제1항
리투아니아	• 정신적 강요나 속임수를 써서 투표와 관련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 선거무효에 이르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2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이나 협박, 직업 상실 위협, 개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이나 기타 경제적 압력을 가해 기권 또는 무효투표를 강요하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p>€251 이상 €2,000 이하의 벌금 또는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금고</p> <p>※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p>	선거법 제97,99조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또는 위협 수단으로 선거권자가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16항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이나 위협으로 투표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500 초과 €9,0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조제4항 제1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투표를 하기 위해 개인적인 접근과 설득을 하는 행위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 초과 €9,0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Z8조 형법 제23조제4항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박, 강요, 폭력, 구속을 행사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인 상해, 피해, 손실을 가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 납치, 협박, 기만 등을 통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18조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협 또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선거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투표하거나 기권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1조 제a,c항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 위협 또는 종속적 관계 등을 이용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강요, 방해하는 행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0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위협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시도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고, 취업방해 또는 다른 위협을 통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상 \$2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9)	의회선거법 제154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이나 위협 또는 사기 등을 통해 타인이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인 선거 및 국민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 - 그 정도가 심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공개적으로 행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가중처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제1.3항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삭제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0,1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위협, 뇌물, 속임수 등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경우 가중처벌, 2년 이하의 징역 - 제공한 뇌물은 몰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선거인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을 갖춘 선거권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선거인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선거기본법 제145,1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감금하거나 지역 간 이동을 막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 2년 이상 -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를 한 이후에도 투표함 근처에 남아 있으려 하거나 다른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려는 자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제159조

3. 투표소 무기휴대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 다수인이 집합해 위의 행위를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부화하여 뇌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245,246조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소에 무기를 휴대하고 들어가는 행위 	3개월의 징역과 €7,500의 벌금	선거법 제96조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포, 도검, 곤봉, 기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에 들어간 행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31조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각종 투표 행위 또는 투표 장소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방해하는 자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7조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선거관리기관이 정한 투표소 반경 제한구역 내에서는 총기류 소지가 금지 	2주 이하의 징역 또는 €218의 벌금	선거법 제58조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소에서 선거인, 참관인 등에 대해 모욕, 폭력, 협박을 행사하거나 선거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무기를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가 침해된 경우 최고형이 선고되고, 2배 가중처벌 가능 	15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1,000의 벌금 ※ 무기소지 시 - 초범: 3개월~2년 징역 또는 €200~2,000의 벌금 - 재범: 징역 또는 €3,000~5,000의 벌금	선거법 제193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절차,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 방해 등 본 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집단이 무기를 동원해 저지른 경우 ※ 5명 이상의 군중이 무기를 이용하거나 그 일부만 이용한 경우 또는 10명 이상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0,000ITL의 벌금	하원의원선거법 제101조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또는 다중이 집합해 무기를 소지하고 선거권자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권 침해 시 2배 가중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 15,000 벌금 - 재범: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 15,000 벌금 • 단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 15,000 벌금 	선거법 제101,102조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자격 증명을 위한 물품을 압수, 훼손, 판매하는 행위, 투표소 설치 또는 폐쇄, 선거권자의 투표소 접근 방해 등의 행위를 다수의 무기를 소지한 집단이 행했을 경우 가중처벌 됨.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1/2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11,12,14,16항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를 소지한 자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 	-	선거법 제46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한 상태로 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일수 이하의 벌금	형법 제338조제2항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선거구 내에서 무기소지 금지 ※ '무기'는 형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가중처벌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25일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선거기본법 제79,133,1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기를 사용해 위원회의 소집 또는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4. 선거방해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사·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 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제242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미 국 캘리포니아 주	• 투표물품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경범죄로 \$1,000 미만의 벌금	선거법 제18380조
	• 선거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	제18502조
프랑스	• 투표소에서 폭력, 모욕 또는 협박으로 선거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	1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선거법 제102조
	• 실제 투표가 방해된 경우	5년의 징역과 €22,500의 벌금	
독 일	• 폭력 또는 협박으로 선거 또는 선거 결과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7조
일 본	• 투개표관리자, 선거사무원을 폭행, 협박해 소란스럽게 하거나 선거물품을 훼손, 탈취한 행위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공직선거법 제229조
	• 다중이 집합하여 죄를 범할 때 - 주모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타인을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단순참가자: ¥2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230조
스페인	• 선거 절차가 진행되는 곳에서 선거인, 후보자, 대리인, 참관인 및 공증인의 출입 또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자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의 벌금형, 공직 관련 특별 자격정지형에 처함.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6조 제1항제3호
스웨덴	•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투표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자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중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장 제8절
스위스	• 선거인명부를 조작·훼손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82조
	• 투표용지를 계획적으로 수집, 기표 또는 변경하거나 이러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행위	과태료	제282조의bis
캐나다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사위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약식 유죄판결 - C\$20,000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기소 유죄판결 - C\$50,000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482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호 주	•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을 현혹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인쇄, 공표 또는 배포하는 행위	• 일반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법인: 5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연방선거법 제329조
	• 선거일 선거인등록에 관해 허위 또는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제330조
	• 제3자가 투표용지에 기표 또는 기타 표시를 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제338조
	• 투표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후보자 등록서류 또는 투표용지를 파손·훼손하는 행위 • 권한 없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제339조제1항
	• 같은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 고의로 한 경우 6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이나 12개월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제339조 제1A,1C항
오스트리아	• 강제 또는 위협으로 투표나 선거 결과의 확정, 공표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67조
벨기에	•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선거인단 구성 방해, 폭력으로 선거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 투표가 침해된 경우 최고형이 선고되고, 2배 가중처벌 가능 - 무기소지 시 가중 처벌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200 이상 €2,000 이하의 벌금 ※ 무기소지 시 - 초범: 1년~3년 징역, €500~3,000의 벌금 - 재범: 징역과 €3,000~5,000의 벌금	선거법 제190조
	• 투표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제111조
	• 선거인명부 등재를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제195조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을 삭제, 대체, 추가 등 조작하는 경우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과 8일 이상 15일 이하 징역	제196조
	• 선거권자 확보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조작하는 경우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과 €50 이상 €500 이하 벌금	
	• 참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인명부 등재를 거부하거나,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을 등재, 삭제, 대체, 조작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제197조
	• 투표개표 중 투표용지를 오용, 변경, 추가하거나 투표 수를 조작하는 행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26 이상	제200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 선거위원회 직원 또는 참관인이 저지른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0 이상 €3,000 이하의 벌금	€1,000 이하의 벌금	제201조
	• 다른 선거권자의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는 행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 투표용지를 분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칠 레	• 선거위원회 또는 투표사무원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경범죄형의 중간등급 이하의 징역형	선거법 제143조
체 코	• 정당, 선거 관련 수치, 선거 관련 청원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 의회, 지자체 구성,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절차를 방해하는 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덴마크	• 선거절차를 방해하거나 결과를 조작 또는 개표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자	6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6조
	•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117조제1항
에스토니아	• 선거나 선거 결과의 확정, 공표를 방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61조
	- 위의 행위에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163조
	• 투표용지나 관련 문서를 훼손, 파기, 탈취, 위조하거나 개표를 잘못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핀란드	• 선거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두 번 이상 투표를 하거나 시도한 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4장 제3조
	• 투표용지를 파괴, 손상, 추가하거나 잘못 개표해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14장 제4조
그리스	• 고의로 선거를 방해하거나 소음, 무질서 등의 수단으로 선거를 방해하는 자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의회선거법 제115조
헝가리	• 승인 없는 투표 또는 서명을 하거나 선거 결과를 위조하는 행위나 시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 제c,d,g호
아이슬란드	•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무효화 하려는 행위	4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02조
	•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자신이 배달 또는 발송하도록 위임된 투표지의 배달·발송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거나, 적격자가 누락되거나, 선거구가 바뀌도록 하는 행위 • 잘못된 선거지침을 발행하는 행위 • (사전)투표 투표지 등의 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	벌금	선거법 제136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한 사람이 동일한 선거에 두 곳에서 투표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누락 또는 손상시켜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4년 이하의 징역	제137조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을 사용해 후보자추천이나 투표를 방해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식재판: £1,000 미만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식재판: £2,500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45,157조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포하는 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꺼내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10,000NIS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	선거법 제119조 제1,2,6항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단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적 선거운동집회를 방해하는 자 - 공무원이 방해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ITL 이상 15,000ITL 이하의 벌금	하원선거법 제9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용지나 기타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경하거나 대체 또는 파괴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 - 선거관리관의 경우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과 €1,000 이상 €2,000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제100조제2항
라트비아	규정 없음.	-	-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개표록, 투표용지 등을 위조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3,17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표를 부정확하게 기록하거나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선거무효에 이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소에서 개인 또는 다중이 집합해 선거권자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징역과 최대 €5,000의 벌금 단체: 8일 이상 15일 미만의 금고와 최대 €2,000의 벌금 	선거법 제9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지를 교체해 실제 개표수보다 더 많거나 낮은 투표수가 집계되도록 하는 행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0의 벌금	제1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마선언서, 후보자동의서, 증인임명서 등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하려고 한 자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000의 벌금	제110조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절차 또는 연방선거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치, 파괴하는 자 선거자격 증빙을 위한 물품을 위·변조하거나 파손, 판매, 불법제공하는 행위 	50일~100일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4,11,12항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네덜란드	• 선거가 진행 될 때 의도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0 초과 €22,5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29조
	• 투표용지나 선거권자카드 등의 모방, 위조 등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9,000 초과 €22,5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Z1조
뉴질랜드	• 선거인과 후보자명부 등 선거정보를 승인된 목적 외 사용을 위해 수신, 제공하는 행위	• 상업적 목적: N\$50,000 이하 벌금 • 그 외의 경우: N\$10,000 이하 벌금	선거법 제116,117조
	• 선거에 필요한 신청서나 증명서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N\$2,000 이하 벌금	제118조
	• 후보자명부나 선거인명부작성 시 고의로 가명이나 사망한 자의 이름을 기입하는 행위	N\$2,000 이하 벌금	제119조
	•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해 선거관리관에게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는 경우	N\$1,000 이하 벌금	제166조
	• 투표용지의 위조, 훼손, 파기, 유출, 승인된 투표용지가 아닌 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행위 - 선거관리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하의 징역	제201조 제1,2항 제a~d호
노르웨이	• 투표권 없이 투표하는 자, 타인의 명의로 투표하거나 한 번 이상 투표하는 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3조
	• 투표지를 조작, 제거, 부정투표지 투입 등으로 개표결과를 방해하는 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제154조
폴란드	• 후보자명부나 선거인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선거문서를 파손, 은폐, 위조, 개표 및 집계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48조
	• 위협과 폭력, 속임수 등으로 선거집회, 후보자 출마, 투표와 개표, 선거문서 작성을 방해하는 행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250조
포르투갈	• 폭력, 위협, 무질서의 방법으로 개표, 결과 발표 등을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338조제1항
	• 투표용지 투입 시 부정을 저지른 행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200,000의 벌금 (escudo \$1,000=€9)	선거법 제157조
	•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후보자나 대리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10,000의 벌금 (escudo \$1,000=€9)	제161조
슬로바키아	• 고의로 개표 오류를 범하는 자 - 그 정도가 심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공개적으로 행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가중처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제2항제a호, 제3항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슬로베니아	• 다른 사람을 대신해 투표하거나 한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52조
	• 공적 지위를 이용해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조작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제155조
튀르키예	• 법률에 언급된 최고선거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정당한 업무진행을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으로 방해하는 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선거기본법 제133조
	• 투표소에서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표 진행과정의 법적인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250TRY의 과태료	제158조
	• 선거권이 없는 자가 투표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160조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이중투표를 시도하는 자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공정하고 질서정연한 투표절차 진행, 선거위원회의 기능 수행, 개표과정 지연 등의 목적을 갖고 고의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	1,000~5,000TRY의 벌금	제166,167조	

5. 투표함 탈취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가·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 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243조
프랑스	• 개표되지 않은 투표함을 탈취한 행위 -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탈취한 경우 10년의 징역	5년의 징역과 €22,500의 벌금	선거법 제103조
	• 투표소 관리인 또는 투표용지 경비책임을 맡은 자가 투표함을 탈취한 경우	10년의 징역	제104조
호 주	• 투표함에 투표지 부정투입, 불법적으로 투표함 또는 투표용지를 파손·취득·개봉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연방선거법 제339조제1항
그리스	•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의회선거법 제116조
아일랜드	• 의도적으로 적법한 권한 없이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총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문서를 파괴, 은닉, 개봉 또는 훼손하는 행위, 공식 인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위조하는 행위, 적법한 권한 없이 투표용지를 유포하는 행위, 투표함에 투표지가 아닌 종이를 투입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재판: £1,000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정식재판: £2,500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38,157조
이스라엘	• 담당관의 인허가 없이 투표함을 다루거나 투표용지를 꺼내거나 개봉하는 행위, 개봉에 포함되기 이전에 투표함에서 투표봉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10,000NIS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	선거법 제119조 제4,5,8항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리투아니아	• 선거인명부, 투표지, 개표록 등을 훼손, 분실, 탈취, 은닉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5조
멕시코	•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장소, 시간에 투표함을 설치 또는 개합하거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50일 이상 2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8조제7항
뉴질랜드	• 투표함을 파손 또는 탈취하거나 개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행위 - 선거관리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하의 징역	선거법 제201조 제1,2항제e호
포르투갈	• 투표가 수집되었고 개표가 시작되지 않은 투표함을 탈취한 자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0 이상 \$20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9)	선거법 제157조
슬로베니아	• 투표·선거에 관한 문서 또는 선거나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증거물을 위조, 훼손, 은닉하는 행위 - 공무원이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4조
튀르키예	• 적법한 절차 또는 권한 없이 투표함을 옮기거나 이동 또는 개합하는 자, 투표함을 탈취 또는 파괴하는 자,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거나 꺼낸 후 탈취 또는 파괴하거나 다른 투표지로 교체하는 자 • 폭력, 강요, 위협 등을 사용했을 경우 2배 가중처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선거기본법 제161조

6. 투표의 비밀침해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41조
미 국 캘리포니아 주	• 투표지 위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	경범죄로 \$1,000 미만의 벌금	선거법 제18001, 18562조
프랑스	• 투표 전이나 진행 중, 종료 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한 행위, 투표 결과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위	€15,000 벌금이나 1년 징역,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13조
독 일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한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7조의c
일 본	• 선거관리공무원 또는 선거사무원이 선거인이 투표한 사항을 표시한 행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27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인에게 폭력·위협을 행사해 투표내용의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의 벌금형, 공직 관련 특별 자격정지형에 처함.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6조제1항 제2호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한 행위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17장 제9절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투표 비밀을 누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83조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C\$5,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81조의6 제2항 제491조의1 제a호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참관인이 권한 행사 중 취득한 선거인 투표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누설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법 제323조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에 내용을 알기 위해 비밀투표의 규정을 위반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60일 수입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비밀을 폭로하는 행위 	€500 이상 €3,0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99조
칠 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사무원이 투표에 선거인이 투표한 사항을 표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행위 	경범죄형 최소등급의 징역형	선거법 제144조제5항
체 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개표오류를 범하거나 투표의 비밀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100 이하의 벌금단위 또는 징역 법인의 경우 최대 €2,400의 벌금 (trahviühikut: 벌금 단위, 2022년 €4)	형법 제166조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선거권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거나 시도하는 자 	2년 이하의 징역	의회선거법 제113조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제1항 제f호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또는 투표와 관련해 권한 없는 자의 공표 또는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공표하는 행위 	벌금 또는 징역 6개월	형법 제1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투표내용 또는 투표 방법을 엿듣는 행위 	벌금	선거법 제136조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투표, 특별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의 경우 - 투표 종료 전 공식 마크 등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 투표용지 뒷면의 숫자 또는 투표용지에서 표를 받은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재판: £1,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선거법 제137,157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를 확인하려고 시도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 우편투표자의 투표용지 수령, 표시 또는 반환을 방해 또는 방해할 시도하거나 투표한 정보를 얻으려는 행위 • 투표가 종료되기 전 선거인 이름, 번호, 공식 마크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 개표 시 투표용지 뒷면의 숫자 집계를 확인하거나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또는 투표용지에 기표된 후보자 집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 투표하려고 하거나 투표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병과 • 정식재판: £2,500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비밀투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4년 이하의 징역, 일시적인 자유박탈, 보호관찰, 사회봉사, 벌금 또는 5년 동안 특정 지위 취임 권리 박탈	형법 제92조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사무원, 참관인 등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5,000이상 €15,0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08조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8항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 내에서 선거권자의 투표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대화, 기표된 투표지를 보여 달라고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03, 204, 224조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1조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알게 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일수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2조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자 -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공개적으로 행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가중처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제2항제a호, 제3항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인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또는 투표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 공무원이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경우 가중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제156조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자의 비밀투표를 방해하는 자 	경고 이후 투표소 강제퇴장	선거법 제82조

〈 집 필 진 〉

- 총괄
김광주(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장)
- 집필
문은영(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자료 정리 및 교정
임지은(외국어 전문인력)

[별책]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

인 쇄 | 2022. 12

발 행 | 2022. 12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 화 | (031) 296-8755

디자인 및 인쇄 | 마음이다(0505-342-1342)

(비매품)